

학생안전복지(학교보건)부 업무 추진 계획

IX 별도 첨부	학교보건	244-451		황정윤 김선영
	IX-1.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보건 연간 계획	244-341	_____	황정윤
	IX-2.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342-359	_____	
	IX-3.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계획	360-376	_____	김선영
	IX-4.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계획	377-430	_____	
	IX-5.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431-433	_____	
	IX-6. 대기오염 대응 계획	434-451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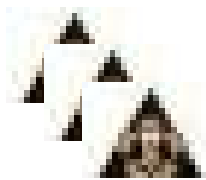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보건 연간 계획

담당 : 황정운

2026학년도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보건 연간 계획

수지초등학교

<https://suji-e.goeyi.kr/suji-e/main.do>



2026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기본방향

◇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통합적 학생 건강정책 지원

- 보건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 통합적 학생 건강증진 사업 강화
-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보건교육과정
편성·운영내실화

통합적 학생
건강증진 사업 강화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학생 건강 역량 중심 보건교육 체계적 실시 ■ 학생 중심 성장 단계별 성 교육과정 운영	■ 학교 기반 예방 중심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 생애 주기별 학생 건강 검사 체계적 실시 ■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 학생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내시한	■ 사전 예방 강화(평상시 예방 관리) ■ 발생 초기 대응 강화 (확산 방지 체계 정비) ■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	--

※ 학교교육과정 협의 과정에서 주제 통합으로 ‘건강’ 영역 포함 권장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은 최소 1개 학년에서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

* 범교과 학습 주제(건강·안전) 내 관련 세부 주제와 통합 운영하도록 학교 교육계획 수립 가능,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연간 16차시 이상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방안: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보건교육 운영 방안

- 5학년 17차시 보건수업 운영, 2026년.3.1기준 5학년 13개 반 편성·운영
정교사(5학년 7개 반 보건수업),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5학년 6개 반 보건수업)
- 1~4학년, 6학년은 담임교사가 보건교육 실시

- 보건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반영한 역량중심 보건교육과정 재구성 (교사교육과정) 수업 실시

- 삶과 연계한 건강 문제를 학생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협력 수업,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확대

- 보건수업 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5학년 보건수업으로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실 부책임자 지정하여 응급상황에 대비

* 정교사는 1, 3, 5 보건실을 운영하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2, 4, 6보건실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를 담당

* 5학년 보건수업은 보건교사가 2인이 교대로 운영하여 학교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건수업으로 인한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실에 상주 중인 보건교사가 교내 응급처치를 담당하되 보건교사 1인이 전교생 응급처치를 담당할 경우 보건실 내 대기시간 지연 및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를 위해 보건수업 반인 5학년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와 협조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운영

- 보건수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휴 교실을 활용한 체험형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및 기존 보건교육실 적극 활용

(본교는 유휴 교실 부족으로 보건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을 활용)

2) 학교 보건교육 전문적 지원시스템 구축

-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보건수업 연구와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용인보건교육연구회 및 수지 분과협의회 활동 등 활용)

- 보건교육거점학교, 건강증진학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와 수업사례 나눔 및 공유

※ (탑재위치) 경기교육모아(more.goego.kr) ‘학생중심교육과정-학생맞춤형수업(초/중)-보건교육’

- 학생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 플랫폼에서 학생건강체험교육, 교원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 등 지원

※ (탑재 위치) 학생건강증진센터(more.goego.kr/she) ‘건강증진사업-교육·홍보자료’

보건교육 참고자료(교육부)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3) 보건교육 내용 중 학생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내실화

- 초등학교 5, 6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보건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권장



-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 완료 후에는 교육 인원,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내부결재) 실시
- 교과(군)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이용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대상은 최소 1개 학년 이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과 통합 운영하되 세부적인 편성은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라. 추진 일정

순	내용	시기(월)	담당자	비고
1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2026.2.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2	학생 건강역량 중심 보건교육 실시	2026.3.~12.		

추진 협조 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보건교육과정 반영 및 수업 실시 ◦ 보건교육 실시(시수, 담당교사 NEIS에 등록·관리 등) 및 현황 보고 ◦ 보건수업 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교육실 설치 (근접 교실, 보건실 내) ◦ 보건 교과서 적기 확보	◦ 담임장학 시 보건교육 운영 포함 ◦ 현장지원단(수석교사, 교사 등) 구성·운영 ◦ 보건수업사례나눔방안지원 ◦ 보건교과서 지원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연수, 워크숍 등 지원 ◦ 보건교육 연구 교사동아리 (연구회) 운영 지원 및 수업사례 공유 ◦ 보건교육 평가 및 표창	◦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 보건수업 성찰과 사례 나눔 제공 ◦ 정책추진모니터링및피드백 ◦ 보건교육 콘텐츠,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 중앙지원단 운영 ◦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 ◦ 보건교사 역량 강화 지원 및 유공자(기관) 표창

마. 5학년 보건수업 세부 일정

5학년 보건수업 시간표(총 13학급)

■ 5학년 연간 17차시(1학기 10차시/2학기 7차시), **황****(7학급) / **김****(6학급)

구분	월	화	수	목	금
1교시			7	3	9
2교시	8	11	1	6	4
3교시	10	13	2	5	12
4교시					
5교시					
6교시					

<1학기>

4월 3,4,5주 (4/13,20,27일 주간)

5월 3주 (5/18일 주간)

6월 2,3,4,5주 (6/8,15,22,29일 주간)

7월 2,3주 (7/6,13일 주간)

1교시: 09:00~09:40/2교시: 09:50-10:30/3교시: 10:40-11:20

<2학기>

9월 2,3주 (9/7,14일 주간)

10월 3,4,5주 (10/12,19,26일 주간)

11월 1,2주(11/2,9일 주간)

1교시: 09:00~09:40/2교시: 09:50-10:30/3교시: 10:40-

2026년도 5학년

순	날짜	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1	4/13	보건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1	건강의 의미와 건강증진
2	4/20	보건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질병 예방	2	건강의 기본, 치아 건강
3	4/27	보건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질병 예방	3	소화기 건강과 식습관(비만예방 포함)
4	5/18	보건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질병 예방	4	에취! 훌쩍! 감기 예방(손씻기 포함)
5	6/8	보건	안전과 응급처치	응급처치	5	알아두면 좋은 응급처치 1
6	6/15	보건	안전과 응급처치	응급처치	6	알아두면 좋은 응급처치 2
7	6/22	보건	안전과 응급처치	응급처치	7	도와줘요, 기도폐쇄 1
8	6/29	보건	안전과 응급처치	응급처치	8	도와줘요, 기도폐쇄 2
9	7/6	보건	안전과 응급처치	응급처치	9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1
10	7/13	보건	안전과 응급처치	응급처치	10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2
11	9/7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 건강	11	우리 삶과 함께하는 성 1 사춘기 소녀
12	9/14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 건강	12	우리 삶과 함께하는 성 2 사춘기 소년
13	10/12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 건강	13	성폭력!함께 예방하기(디지털 성폭력 포함) 서로의 경계 존중하기
14	10/19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약물·담배·술	14	건강에 해로운 담배
15	10/26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약물·담배·술	15	올바른 약 사용하기
16	11/2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약물·담배·술	16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교육
17	11/9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정서·정신 건강	17	내마음알아보기 서로다름이모여만드는세상
17시간						

바. 기대되는 효과

-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한다.

2.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성 교육과정 운영(※별도 운영계획 수립)

가. 근거

- 1)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 2)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 3)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부분 수정안」 (2021년)
- 4)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2022.3.4. 개정)

나. 기본방침

- 1)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과 성 의식, 성태도 확립
- 2)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관련 교과 통합, 융합형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의 성 관련 위험 상황 대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전체 교사대상 성교육 전문성 제고 연수과정 개설·운영

다. 추진방향

- 1) 성교육계획 수립 · 추진(「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반드시 ‘학교 성교육계획’ 을 수립(학교 교육계획서에 포함)하되,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6대 영역(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행동, 성 건강, 사회와 문화)이 고루 포함되도록 체계적인 성교육과정을 학년별 연간 20시간 이상 계획 수립·추진
 - 성교육의 내용 및 체계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부분 수정안’ 활용
- 2 ‘2015 범교과학습주제와교과교육과정연결맵’참고(교육부학생건강정보센터누리집)
 - 학교 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7조)를 반영하고 관련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교육 실시(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고, 실제로 성교육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업무분장표에 ‘성교육’ 을 명시
 - 성교육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교육과정 편성 지양(성폭력예방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 표준안에 근거한 학생 성장단계별 교육자료(지도서, 학생용 워크북 등) 활용
 - 학교 급별(초저, 초고, 중, 고) 자료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

이용

-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연구회 등에서 연구 개발한 교수·학습자료 활용

2 (탑재위치) 경기교육모아(more.goe.go.kr) ‘학생중심교육과정-학생맞춤형수업(초/중)-성교육’

- 교육(지원)청의 성교육 담당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심화 연수 운영 지원
효과적인 성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법 함양 직무연수 개설 또는 위탁

※ (도교육청) 2025년 학교 성교육 담당 교원 대상 원격 직무연수(위탁) 실시 예정

- 학교 성교육 추진 실태조사 연 1회 실시·보고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의한 ‘학교별 실태조사’ 는 교육청 보고사항 (학교 성교육 실시현황 조사)으로 같음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 별도 조사도 가능

2) 학교 성교육 시 유의 사항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하고 양성평등 교육의 관점 유지
- 학교 내 성폭력 피해 학생이 있는 경우 성교육 시 수업 주제에 따라 피해 학생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 수업 기피 등을 허용하고, 수업 참여 시에도 수업내용으로 인해 간접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
- 각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담당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인권과 성인지교육 관점에서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지도
- 성교육 위탁단체 선정, 외부 강사 초빙 또는 학교 밖 지역사회 성교육 유관기관 체험학습 운영 시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안 사전 검토, 관련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 확인, 성교육 현장 입장지도 의무 준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청 위탁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양성 강사 활용

라. 추진 일정

순	내용	시기(월)	담당자	비고
1	학교 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2026.2.	담임교사 보건교사	
2	관련 교과 성 교육과정 편성 협의회	2026.2.	담임교사 보건교사	

마. 중점 추진 내용

대상	교육 내용 및 방법	시수	시기	담당자
학 생	- 연간 20차시 창체 및 관련 교과에서 실시 - 4차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 1,2,3,4,6학년은 담임교사가 실시 - 5학년은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실시 - 외부강사에 의한 협력 수업(성폭력 예방교육) * 3,4학년 집합교육(연 2회, 시청각실) * 5,6학년 반별 교육(연 2회, 각 학급)	20차시	연중	담임교사 보건교사
		2차시	연중	보건교사 보건교사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대면 통합교육 실시 - 대면교육 미참여자를 위한 온라인 연수 과정	각 1차시	4월 연중	보건교사
학부모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실시	수시	연중	보건교사

추진 협조 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학교교육과정 내 성교육 편성, 운영 ◦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성장시키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관련 교과 협의회 운영 ◦ 성교육 실시현황(시수, 담당 교사등지정·운영) 관리 ◦ 업무담당자 연수 참여 ◦ 학교 회계 기본운영비에 성교육 예산 반영	◦ 학교 담임장학 시 성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사항 포함 ◦ 성교육 평가 및 표창 ◦ 성교육 수업사례 나눔 지원 ◦ 성교육 담당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 개설, 운영	◦ 성교육 장학자료 활용 안내 ◦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연구회 개발자료 등 활용 안내 ◦ 성교육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외부 연수원 연계 위탁 운영) ◦ 정책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주요 추진 내용

1. 학교기반 예방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 생애주기별 학생건강검사 체계적 실시
3.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4. 학생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내실화

1. 학교기반 예방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가. 근거

- 1)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응급처치 등)
-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학교 의사, 학교 약사 및 보건교사)
- 3)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5)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 (2020.3.17. 일부개정)
- 6)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2021.5.20. 제정)
- 7)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2021.10.6. 제정)
- 8)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2024.10.14. 제정)

나. 기본방침

- 1)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체계를 확보,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2) 신학기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 개별 면담과 정기 건강상담을 통해 소아당뇨, 희귀 질환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한 요양호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다. 추진방향

- 1) 응급의료 관리체계 및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 숙지 후 업무추진
 - 학교 상황별 응급처치 및 대처요령 매뉴얼 참조(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2022.3월)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교육부, 2011.12월)

- 보건실 방문 학생 처치 및 상담 시 담임교사, 학부모와 유기적인 연계 유지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2022.3월)

2) 포괄적인 학교 응급환자 관리 계획 수립(※별도계획 수립)

- 당해 연도 학교 운영계획서에 응급환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응급의료 체계 구축 운영
학교 실정을 고려한 교직원 역할(보건수업 등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대행자 포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 보건교사 병가 등으로 1일 이상 부재시 시간강사 등 계약제교원 활용 가능(『공립 초·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참고)
- 모든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 지원
- 또한, 보건실에는 적정수준의 시설, 기구 및 의료용품 구입예산 편성·구비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별표] (2021.11.4.)

※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건실 환경개선은 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활용

3) 요양호 학생 등 건강 이상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보장

- 학년 초 전교생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건강 이상 학생을 파악하고 요양호 학생 기록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호 학생별 개인 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 실시
- 요양호 학생별 주의사항, 학부모 당부 사항, 유의 관찰 방법 등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건강 이상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 적극 보장

4) 학생 눈, 구강, 아토피·천식 등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 건강검사를 통한 시력 이상, 구강질환 예방 등 학생 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의료기관
또는 가정 연계 교정·치료
-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보건교육 강화 및 학생성장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청 개발 교수·학습자료(학생중심교육과정 누리집 탑재), 교육부 개발 교수·학습자료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 경기도교육청 개발 교수학습 자료(학생건강증진센터)
활용

- 지역사회전문기관과의 협력강화(학교교의위촉, 교육지원청-유관기관업무협약)
학생건강증진센터, 경기학생스포츠센터등과연계한학생맞춤형건강프로그램지원

5) 건강한 체중 관리역량을 기르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건강검사 실시 후 체중 이상 학생(저체중/경도/중등도/고도)을 선별하여 체중 이상 학생에 관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지속 관리 대책 마련
- 학생의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보건/체육/영양/상담 교사의 협업을 통한 건강한 체중 관리와 다양한 신체활동 강화 등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담임교사, 학부모와의 연계지도 및 지역사회 건강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외부 강사 또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6)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학교에서는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2026년 상반기)

2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 수집,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교육지원청) 학교별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 재학 현황을 제출받아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학교장은 제1형 당뇨 학생의 보호와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

<주요내용>

1.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슐린 주사방법 등 조력,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등 자가주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 시 보건교사 직접 주사 지원
2. 당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직원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보건교사 등 대상 연수과정 운영, 학생건강증진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추진
3. 혈당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평가(시험) 시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

건강증진부를 구성하여 학기당 1회 이상 회의 개최,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계획’ 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며 학교 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질환별 교육훈련 지원 등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과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건강증진부: 학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그 외 학생과 관련된 교직원, 학생과 보호자(원하는 경우)로 구성

- 학교장은 학부모의 사전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하며,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인슐린, 글루카곤 등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한 보관 장소 제공
- 당뇨병 및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학생 및 학교구성원 전체 대상,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지원 및 편견 등 부정적인 인식개선에 관한 필요 내용 교육
『당뇨병 학생지원 가이드라인』 (교육부, 2019.9.),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학생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 지원

7)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및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

- 의료인 자격 유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 * 학교 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교사는 교대로 출장 신청하여 이수
- 2022년 개정판 보건실무매뉴얼과 학교응급의료관리매뉴얼 안내 및 적극 활용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보건계획 수립, 의약품 관리 시 학교(한)의사 또는
학교약사 위촉 등 전문가 자문
- 학교장은 보건교사의 의료인 기본심폐소생술 과정(BLS provider)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유지
- * 1층 전관 승강기 앞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 * 매월 정기 점검 실시(담당자 정: 보건교사 황**, 부: 보건교사 김**)
- * 정기 점검을 위한 장부 비치하여 작성(배터리 및 전기패드 주기적으로 교체)
- 보건일지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한 의료행위
(환자의 증상과 처치내용)를 기록한 것으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22조
(진료기록부 등)에 부합하도록 관리
- * 보건교사는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실 방문현황 및 의료행위를 기록한 보건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결과 보고(내부결재)

라. 추진 일정

순	내용	시기(월)	담당자	비고
1	학교 응급환자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2026.3.~2027.2	보건교사	
2	건강조사 및 요양호 학생 건강관리	2026.3.~2027.2	보건교사, 담임교사	
3	당뇨병, 희귀질환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파악	2026.3.~	보건교사, 담임교사	
4	보건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연수 참석	2026.3.~2026.12	보건교사	
5	보건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참석	2026.3.~2026.12	보건교사	

추진 협조 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학교 응급환자 관리 계획 수립 •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 ◦ 응급환자후송계획 및 대책반 구성 ◦ 학생건강조사, 요양호학생 파악 ◦ 요양호 학생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및 학생 건강관리 ◦ 당뇨병, 희귀질환 학생 현황 파악 /보고 ◦ 당뇨병, 희귀질환 학생 개별지원계획 수립 ◦ 당뇨병 학생 지원 건강증진부 구성·운영 ◦ 보건교사응급처치능력강화	◦ 지역사회 보건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 구축 ◦ (필수)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황 보고, 보건의료업무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최신응급의료동향안내및보건교사 전문성함양연수실시 ◦ 지역단위 보건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연수 개설 운영 지원 ◦ 당뇨병, 희귀질환 학생 현황 자료집제 및 제출 ◦ 유관기관(단체)과 업무협약 등 협업체계 구축	◦ 학교 응급환자 및 요양호 학생 건강관리 계획 수립 안내 ◦ 중앙지원단 구성·운영 ◦ 학생건강증진센터 보건교사 의료전문성 역량강화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도교육청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활용 안내 ◦ 학교 응급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지원 ◦ 의료인보수교육연계보건교사 직무연수운영 ◦ 건강취약학생인식개선교육지원

마. 보건실 운영

1) 보건실 운영의 목적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보건(school health)의 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보건활동(school health activiting), 학교보건교육(school health education) 및 학교보건 환경 관리에 대한 잠재력을 높여 최고 수준의 건강관리 능력을 보유함

2) 보건실의 기능

- 건강상담실, 보건관리실, 보건교육실, 처치실, 안정실의 역할
- 영양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제공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며 보건교육의 핵심 장소
-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부의 비치 및 기록 관리

3) 보건실 운영 및 관리

보건실 운영 및 관리		
보건실	담당업무	관리
1,3,5보건실	보건실운영(1,3,5학년) 담당학년응급처치 및 요보호학생 건강관리 보건교육, 건강기록부 관리 학생 건강검사(건강검진, 구강검진),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및 관리(총괄/교육, 담당학년 관리 및 나이스 보고) 치과주치의사업, 흡연예방교육 안전공제회, AED관리(정)	정:황** 부:김**
2,4,6보건실	보건실운영(2,4,6학년) 담당학년응급처치 및 요보호학생 건강관리 보건교육, 건강기록부 관리 신체발달검사, 소변검사, 응급처치교육 성교육, 성고충상담 감염병 대응(물품/인력, 담당학년 관리 및 나이스 보고) 교직원결핵검진, 미세먼지 및 공기질 검사, 정수기수질 검사 실내방역, AED관리(부)	정:김** 부:황**

- 보건실의 필요성과 기능 인식 시도

- * 보건실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 보건실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

- 보건실 설비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

- * 효율적인 보건 활동을 위한 충분한 보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실 설비 및 시설을

갖추어 수요자 중심의 보건실을 운영

-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응급처치 물품의 유지·관리

*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구입 시 학생 및 교직원 처치의 적절성과 사용빈도,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 맞게 필요한 수량만 수량만 구매하여 불필요한 구입 및 사용을 자제하여 사용

*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기 전 의약품 구매 사이트 통해 교환 처리하여 폐기되는 의약품을 최소화하여 관리

* 시건 장치를 활용하여 적정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 약품사용 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투여하고, 학생들이 직접 약품을 다루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보건교사가 직접 투여

* 약물복용이 필요한 경우 학기 초 학생 건강상태 조사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하에 처치

- 보건실 이용 절차(개인별 건강관리카드를 요주의자 등의 기록관리 활용)

* 보건실을 자주 이용하는 요주의자는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처치 및 치료 내용을 기록

*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요양, 투약, 치료, 병원의뢰, 조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 사항을 보건일지에 기록(매월 결재)

* 상황을 누가 기록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도

* 응급환자 및 건강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수시로 정보 공유

(보건교사, 담임교사, 교과교사, 돌봄교사, 상담 교사, 놀봄담당 실무사등)

- 보건교육실의 기능을 위한 보건교육 지도

* 건강관련 자료 및 책자들을 보건실에 비치하여 건강정보 등을 제공

- 보건실 침상안정 시 유의점

* 담임교사의 허락하에 방문하고 보건교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실시

* 보건실 요양 시간은 1교시 이내로 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조치

* 학기 초 보건실 이용 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내
보건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e-알리미 발송

4) 보건교사 부재 시 직무대행 체제

- 보건교사 2인 체제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료 공백 최소화
- 보건교사 병가 등으로 1일 이상 부재 시 시간강사 등 계약제 교원 활용
- 보건교사의 공식적인 부재 시 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 직무 대행자를 학교장이 지명하여 대행
- * 출장, 보건수업, 조퇴, 급식 등으로 보건교사 1인이 부재 시 보건실에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응급처치 담당
- * 불가피한 사유로 교내 보건교사 부재 시 교무실에서 응급처치 담당
- 보건교사 부재 시 교내 메신저를 통해 교직원에게 안내하고 행선지 등 표시

보건교사 부재 시 직무대행 체제	
담당자	응급처치 대행
■ 행정실무사 : 안* *	- 보건교사가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시 응급처치 담당 * 교무실에 구급함을 비치하고 간단한 응급처치 실시 *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가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실시 * 내복약 등 의약품 사용 자제 *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및 진료 안내
■ 행정실무사 : 서* *	

* 5학년 보건수업 시 응급환자 발생 등으로 보건실 내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5학년 담임교사는 보건실에서 교내 응급환자 관리 및 대처를 위해 협조
단, 약물투여 등 의료인 업무는 배제하며 전문적인 응급처치는 보건교사가 담당

5) 학교보건 세부 추진계획(※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구분	사업 내용	세부추진 사항	추진시기	목 표	대 상	담 당
건강 증진	보건실 관리	약품 구입 및 관리	연중	수시	전교생 교직원	보건
		응급처치 및 상담지도	연중	수시	전교생 교직원	보건
		요보호자 관리	연중	수시	요보호자	보건, 담임
		NEIS 건강기록 관리	연중	수시	전교생	보건, 담임
	건강 검사	신체발달검사	5월	1회	2,3,5,6학년	담임, 보건
		건 강 검 진	6월	1회	1,4학년	보건
		구 강 검 진	4~12월	3회	2,3,5,6학년	담임, 보건
		소 변 검 사	4~5월	1회	2,3,5,6학년	담임, 보건
		시 력 검 사	5월	1회	2,3,5,6학년	담임, 보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연중	수시	전교생	보건, 담임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안내	연중	수시	전교생	보건
		환 자 관 리	연중	수시	해당자	보건
		방역	분기별 필요시	4회 수시	해당자 교사	행정실 보건
		정수기 수질검사	분기별	4회	학교 내 정수기	보건, 행정실
보건 교육	학생 보건 교육	보건교육	4월~12월	17차시	5학년	보건
		성교육	연중	20차시	전교생	담임, 보건
		구강보건교육	연중	1차시	전교생	담임, 보건
		응급처치교육	연중	2차시	전교생	담임, 보건
		생활습관병 예방교육	연중	2회	전교생	담임, 보건
		감염병 예방교육	연중	수시	전교생	보건, 담임
		약물오·남용(흡연, 음주)예방 교육 / (마약예방교육 2차시 포함)	연중	10차시	전교생	담임, 보건
		계절교육 및 행사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연중	수시	전교생	담임, 보건
	교직원 연수		연중	1회	교직원	보건
		감염병 발생 시 대응훈련 및 발생 다빈도 학생 감염병 관리	연중	1회	교직원	보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 연수/ 실패수생수교육 실시	연중/ 5월	수시 1회	교직원	보건

바. 학생 건강문제 관리 계획(요보호자 관리)

1) 목적

학교 아동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분포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관리는 물론 그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의 건강관리까지 함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의와 함께 질병 예방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해 중요

2) 기본방침

- 학기 초에 전교생 건강상태 조사서를 통해 실태 조사 실시

* 1차 담임교사, 2차 보건교사가 최종 선정하여 결과 보고(내부 결재)

-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는 학습활동 시에 참고하여 요보호, 요주의 아동의 질병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실시

- 보건교사는 요보호자를 선정하여 정기적 상담, 요보호자 관리카드 기록관리

- 개인신상, 병력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되 기록에는 치료병원, 투약 정보 등 의료 정보 및 기타 주의사항 등 포함하여 관리

- 업무 담당자 지정: 1,3,5학년(보건교사 황**), 2,4,6학년(보건교사 김**)

3) 세부 추진 계획

사업내명	세부추진사항	기간	비 고
요보호자 선발 및 활동계획	▶ 1~6학년 학생 건강상태조사서 조사 후 요보호 아동을 선정 ▶ 동일 증상으로 보건실 방문이 잦은 아동을 선정 ▶ 건강검진, 소변검사 등 학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후 이상자 발견 시 선정 ▶ 기타 이상자 발견 시 수시로 선정 ▶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에게 요보호 아동 및 유질환 아동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생활에 참고하도록 안내 ▶ 보건교사는 요보호 아동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관리 ▶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은 학생 개별지원을 위해 건강증진 부(학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 영양교사, 보호자 등)를 구성 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보호자가 원할 시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 투 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아나필락시스 및 당뇨로 인한 응급주사제 소지 등 세심히 확인하고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연수 실시	수시	요보호자 관리카드 활용

4) 요보호 아동 관리카드

구분	학년반	이름	질병명	상담내용 및 주의사항
1				
2				

사.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계획

1) 목적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및 후송 체계를 확보하여 응급환자의 원활한 처치 및 후송으로 생명을 구하고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

- 보건실에 응급처치용 장비를 상시 비치하여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상시 점검하여 응급상황에 대비
- 전문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응급처치에 임하도록 함
- 환자의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되도록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
- * 외상환자의 경우 자세 전환 시 2차적인 손상을 방
- 생명이 위급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즉시 후송 (119 활용)

3)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별도 운영계획 수립)

- 전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연간 3~4시간 실습2시간포함)
- 이수를 통하여 교직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 초 5, 6학년을 대상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교육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실시

4) 보건교사 부재 시 직무 대행 체제 구축

- 보건교사 2인 체제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료 공백 최소화
- 보건교사 병가 등으로 1일 이상 부재 시 시간강사 등 계약제 교원 활용
- 보건교사의 공식적인 부재 시 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 직무 대행자를 학교장이 지명하여 대행

* 출장, 보건수업, 조퇴, 급식 등으로 보건교사 1인이 부재 시 보건실에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응급처치 담당

* 불가피한 사유로 교내 보건교사 부재 시 교무실에서 응급처치 담당

- 보건교사 부재 시 교내 메신저를 통해 교직원에게 안내하고 행선지 등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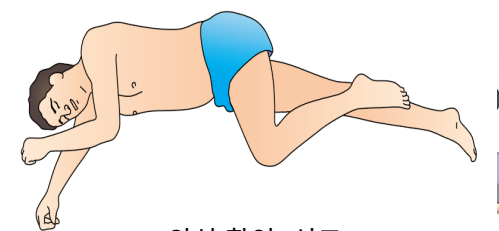
보건교사 부재 시 직무대행 체제	
담당자	응급처치 대행
■ 행정실무사 : 안*	- 보건교사가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시 응급처치 담당
*	* 교무실에 구급함을 비치하고 간단한 응급처치 실시
■ 행정실무사 : 서*	*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가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실시
*	* 내복약 등 의약품 사용 자제
	*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및 진료 안내

* 5학년 보건수업 시 응급환자 발생 등으로 보건실 내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5학년 담임교사는 보건실에서 교내 응급환자 관리 및 대처를 위해 협조
단, 약물투여 등 의료인 업무는 배제하며 전문적인 응급처치는 보건교사가 담당

5)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및 역할

구 분	역 할	
교 장	• 학교 안전사고 및 응급활동 체계의 최종 책임자, 응급환자 관리 인력체계구축 • 응급상황 발생 보고를 받고 상황을 총괄 감독, 지휘 • 소속 교직원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주치 필요한 지원	
교 감	• 응급상황 시 원활한 역할분담으로 대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정 •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 • 축장및화자호송 부견수업등으로인하부견교사또는담임교사부재시업무대행자지정	
교무부장 학년부장	• 후송교사에 대한 수업관련 조정 및 교사 배치를 통하여 수업 결손을 최소화 • 후송교사에 대한 복무처리(출장 명령) 기재를 지원 • 학교 안전사고 발생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제저 조이 가도 드 제바 역할을 다다	
담임교사	• 학생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나 후송에 최대한 협조 • 수업 중 사고내용 및 후송처리에 대해 구두로 관리자에게 보고 • 학부모에게 비상연락을 하고 필요 시 병원에 동행 • 병원의료 조경 후 사고에 대한 사경보고의 피오니 안전고제 시처	
행정실장	• 응급환자 관련 예상 반영 및 집행 등 행. 재정적 지원 • 학교 시설의 안전 점검 및 감독, 보수 • 안전고제 시처 서르 처리 및 하이크 지크 엄르	
구분	보건교사가 반드시 동행	학부모, 담임 및 수업담당교사가 동행
상 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심정지)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거나 혼미 • 개방골절일 경우,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 우 등	• 경미한 부상으로 3시간 정도 응급 처치, 이송을 기다릴 수 있는 경우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다려병원의료가 필요한 경우
후 송 절 차	· 환자 최초 발견자가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후 119 신고 및 보건교사에게 연락 · 보건교사 → 담임교사 → 학부모 연락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학부모의 선호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이송과정을 알림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인계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역할 대행 · 학생 진료 상황을 수시로 학교에 보고 · 교내 보고 체계(사고 경위, 후송병원 안내) : 보건, 담임교사 → 교감 → 교장	· 보건교사 → 담임교사 → 학부모 연락 ·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 ·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경우 담임, 부담임 동행 · 보건교사는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응급 환자를 위하여 교내 대기 - 단, 담임교사 부재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보건교사가 후송
행정사항	· 안전공제회 신청 시 담임교사 또는 해당교과 교사는 사고 발생 후 즉시 www.schoolsafe.or.kr에서 사고통지서 작성하여 내부결재 득한 후 보관(단, 가해 및 개 인 질병으로 발생한 경우는 안전공제회 신청에서 제외됨) · 병원 후송 시 응급처치 교사는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 병원 후송 차량은 상황에 따라 교직원 차량, 119 구급대, 병원 응급차량을 활용한다. · 환자 후송 시 환자 후송교사 및 후송 동행 교직원에게 대해서도 출장 처리 · 보건교사가 후송하는 경우 보건실 업무는 업무대행자가 담당(행정실무사: 안*진) · 응급환자 후송 관련 비용이 출장비를 초과할 경우는 학교회계예산에 편성	

6) 심폐소생술 방법과 흐름도



의식 확인, 신고



기도열기

회복기 자세

No

환자의 의식과 호흡상태 확인

Yes

119 신고와 제세동기 요청

회복기 자세

가슴압박 : 30회(**Circulation**)
5cm 깊이, 최소 100회/분

기도 열기(**Air way**)
(머리 젖히고-턱 들어올리기)

기도폐쇄

1회 인공호흡 시
가슴이 상승하지
않으면 재기도 열기 후
1회 더 인공호흡

보통호흡으로 인공호흡 : 2회
(**Breathing**) & 가슴 상승 유무

Yes

흉부압박 30 : 인공호흡 2
●119나 제세동기가 도착 할
때까지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실시해야 함

제세동기 도착

Yes

리듬확인, 제세동 필요 유무

제세동 1회 시도
즉시 심폐소생술 계속

심폐소생술 계속

심폐소생술 시작

가슴압박(30회)/
인공호흡(2회)

2회 인공호흡 전,
기도를 개방하고
이물질을 확인하고
이물질이 보이면 제거.

7)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기록

학년반		환자명	성별	보호자전화번호	담임교사
주 증상				인체모식도	
환자 상태	근골격계	☐ 부종 ☐ 통증 ☐ 열상 ☐ 자상 ☐ 멍 ☐ 기타:			
	순환기계	☐ 흉통 ☐ 부정맥 ☐ 심계항진 ☐ 기타:			
	호흡기계	☐ 호흡곤란 ☐ 청색증 ☐ 기타:			
	신경계	☐ 시력장애 () ☐ 청력장애 () ☐ 마비(부위:) ☐ 경련			
	소화기계	☐ 오심 ☐ 구토 ☐ 토혈 ☐ 복부통증 ☐ 기타:		신체 전면	신체 후면
	의식상태	☐ 정상(A) ☐ 언어반응(V) ☐ 통증반응(p) ☐ 반응 없음(U)		활력 징후	
발생장소 & 시간		발생장소		측정 시간	시 분
		최초 모겨자		혈 압	/ mmHg
		최초 박겨시간	(AM,PM) 시 분	맥 박	/ min
		보건교사 확인시간	(AM,PM) 시 분	호 흡	/ min
				체 온	°C
				paO2	%
				기 타	
사고 개요					
응급처치 내용					
이송시간 및 이송방법		이송시간	시 분		
		이송차량	☐ 구급차 ☐ 일반차량 ☐ 기타()		
		이송자	☐ 119대원 ☐ 보건교사 ☐ 담임 ☐ 학부모 ☐ 기타()		
		이송병원			
작성일 및 작성자		년 월 일 직: 성명: (인)			

※기록 :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 사고 현황, 응급처치 내용 및 이송 상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

2.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가. 근거

- 1)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 2)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3)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생 안전교육) (2023. 10. 일부개정)
- 4)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2023. 12. 전부개정)
-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 (2024. 1. 신설)

나. 기본방침

- 1) 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내용 체계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최소 시간 확보
 - ※ 초등학교 5차시 이상
- 2) 마약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

다. 추진방향

- 1)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 학생의 마약류 문제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 및 각종 일탈 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생활지도가 필요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 등과 융합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이행실적 조사 (12월)]
 -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 연계 (24. 1. 2.)
- 2)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마약청정 대한민국 (www.nodrugzone.mfds.go.kr)에 탑재되어 있는 마약류 폐해 영상, 카드뉴스, 학습만화, 홍보 리플렛 등을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3) 마약 예방 교육 체계적 지원과 담당교사 역량 강화

- 마약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운영
- 마약류와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 학생 마약류 관련 상담채널 ◆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신고, 수사	검찰	1301
	경찰	112
청소년 마약예방, 재활 상담	24시 용기한걸음센터	1342
마약중독치료	인천참사랑 병원	032-572-9410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게’ 접속 ▶ ① ‘다들어줄게’ 앱, ② 카카오톡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 (도교육청) 학교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전문강사 확대 지원
 - 연극·인형극 등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지원(마약 예방 교육 전문기관 위탁)
- 교직원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 과정(경기도교육연수원) 활용 안내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온라인예방교육(메타버스) 콘텐츠, 경기도교육청(보건교육 거점학교 등) 개발 교육자료 등 활용

라. 추진일정

순	내용	시기(월)	담당자
1	마약류 예방 교육계획 수립	2026.2.~	담임교사, 보건교사
2	마약류 대처 역량 강화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운영	2026.3 ~	담임교사, 보건교사
3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수시	담임교사, 보건교사
4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현황 결과 보고	2026.12.	보건교사

마. 추진 협조 사항

추진 협조 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마약류 예방 교육계획 수립, 추진 ◦ 마약류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등) 적극 추진 ◦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 전문강사 초빙, 연극·인형극 등을 통한 교육과정연계교육 실시	◦ 마약류 예방 교육계획 수립 ◦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업무협약 등) 구축 ◦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 (생활인성교육 등)와 협업 ◦ 교사 전문성 지원을 위한 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	◦ 마약류 예방 기본계획 수립 ◦ 교사 대상 원격연수·심화연수 안내 ◦ 전문기관 연계 마약예방 교육 전문강사, 맞춤형 마약예방 교육 지원 ◦ 마약 대처 역량 강화 유관기관 (부서) 협의체 구성 ◦ 마약 예방 교육 우수사례 공유

3. 학생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내실화

가. 근거

- 1)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 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 제9조의6항(금연을 위한 조치), 제25조 (기금의 사용)
- 3)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4)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2023. 12. 전부개

나. 목적

- 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음주·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용을 사전에 막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2) 흡연·음주 및 약물 사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흡연이나 음주 문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상 부작용과 더불어 또 다른 일탈 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

다. 운영 방침

- 1) 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흡연·음주·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
- 2) 학교 교내·외 전 구역을 절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한다.
- 3) 흡연의 저연령화를 고려하여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 4) 관련 단체와의 흡연·음주·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협조 체계 구축한다.

5)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지원 및 협업 체계 구축한다.

※(전문가 의견)선부른 마약류 예방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

라. 추진방향

1)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흡연·음주·약물 오·남용예방교육 강화

- 학생주도의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실천중심 교육 기회 제공

-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흡연예방교육과 생활지도 강화

2) 학교 중심의 건강한 금연공동체 문화 형성

- 학교장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학교의주변 30미터까지금연구역확대적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2024.8.17.)

- 학교 방문객과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와부정적영향을 끼치지 않도록금연안내와준수 지도(흡연부스설치금지, 학교종사자의 경우외부금연프로그램이수 권고등학생건강권 보호대책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청소년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제도개선(2020.12.7.) 참조

3)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교사 역량 강화와 체계적 지원

- 보건복지부 개발 초·중·고 흡연예방 표준교육프로그램(SENSE), 금연교육프로그램(END, Jr END) 및 흡연 학생 3관왕 라이프코칭 프로그램(CROWN) 활용 안내,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의 교육자료 활용

-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연구회 등에서 개발한 흡연예방·금연 교육자료 공유

마. 추진 일정(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순	내용	시기(월)	담당자
1	교육과정연계, 흡연·음주·약물오·남용예방교육계획수립	2026.2.~3.	담임교사, 보건교사
2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수시	담임교사, 보건교사

바.세부 추진계획

1)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흡연·음주·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10시간 이상 실시한다.(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 2차시 포함)

- 2)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이용하여 흡연·음주·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 자료를 수시로 탑재하여 흡연·음주·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린다.

4. 비만 및 생활습관병 예방

가. 목적

- 1) 학생 스스로 자기건강관리(Self health care)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성인비만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자 보건 . 체육 . 영양 영역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 체력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내하고자 한다.
- 2) 학생이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학교교육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나. 기본방침

- 1) 비만학생과 생활습관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지속적인 치유지도 및 건강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 2) 보건교육 및 식생활교육을 통해 건강과 영양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를 기른다.
- 3) 체육교사, 영양교사, 담임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유도한다.

다. 추진일정

구분	추진사항	추진 내용	대상	시기	비고
구강 건강 관리	구강검사	구강검진 실시	전학년	4~12월	검진치과
	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	5학년	연중	보건교사
		구강건강 자료 비치 및 전시	전교생	연중	
	가정과 연계	보건소식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구강건강 관리 교육 실시	학부모 전교생	연 1회	
	통계 및 관리	구강검사 후 이상자 개별 가정통신 및 추후관리 지도	대상자	5월~12월	검진기관 협력
		구강검사 관련 통계 작성, 관리	전교생	12월	
시력 관리	시력검사	학생 건강검사 실시	1,4학년	4월~12월	
		별도검사 실시	2,3,5,6학년	5월~6월	
	보건교육	보건소식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시력관리 교육 실시	학부모 전교생	연 1회	
	통계 및 관리	시력검사 관련 통계 작성, 관리	전교생	12월	

구분	추진사항	활동내용	시기	비고
관 리 활 동	1. 건강검진대상 학생 중 비만학생 혈액검사실시	- 비만도 - 고혈압 - 당뇨 고지혈증 검사치(AST/ALT)	연중	1,4학년 중 비만학생
	2. 비만, 생활습관병 유증상자 관리	- 건강상담 - 보건실 측정코너 설치 자동신장체중측정기 자동혈압기 혈당측정기	연중	희망자
	3. 통계 작성 및 보고	비만자 통계 작성 및 자료집계 보고	12월	
교 육	4. 학생 보건교육	비만 예방 관리	2회	
	5.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 지도	- 생활습관병의 종류와 예방법 - 식생활지도 - 우유 및 바나나 생화 습관	연중	보건, 영양

5. 생애주기별 학생 건강검사 체계적 실시

가. 근거

- 1)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및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2)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 4)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2024.10.14. 제정)

나. 기본방침

- 1)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2) 건강행태 개선, 건강 문제 및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한 교육,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다. 추진 방향

- 1) 학생 건강검사 계획 수립에 의거한 체계적 실시
 -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추진,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특수학교)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 검진 가능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④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 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 면, 동을 말한다)에 검진 기관이 없는 경우 ☞ 교육지원청 승인 불필요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지원청 승인 불필요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 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교육지원청 승인 절차 필요

- 건강검사 일정 추진 시 가급적 학생·학부모 희망일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
- 학교는 검진기관과의 계약체결 시 검진 의사와 검사 실시자가 「학교 건강검사 규칙」과 「학교 건강검진 실시 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상의 건강검진 항목과 방법을 준수하도록 ‘사전교육’ 이행을 계약내용에 포함하고, 검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초·중·고)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학교의 장과 검진기관의 장과의 직접 계약 및 대금 지급 규정 준수 여부
- 학교와 지역치과의사회의 단체계약에 의한 구강검진 실시 불가
- 관련 교과 또는 보건교육 시간 활용하여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내용(검진항목) 및 검진결과에 따른 추후 건강관리 등에 관한 학생 교육(검사 전·후) 실시

2) 건강검사 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시행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학교의 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 보호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학생건강기록부기록및관리철저(「학생건강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참조)

3) 구강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구강보건사업 추진

- 학교급별 구강검사 및 건강조사 결과에 따른 양치 실천율 향상방안 추진
- 경기도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과 연계한 구강검진 실시 및 관리
- *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2024.10.14. 제정)

4)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체계통합을 위한 교육부 학생건강검진제도개선 협조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 조정 등 추진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별도

라. 학생건강검사 종류 및 방법

항목	내용		대상	시기	담당자	비고
건강조사	학생 건강실태조사		전학년	3월	보건 담임	요보호자관리 및 조기발견
	조사결과처리		1~6학년	3월	담임 보건	요보호자관리카드 작성. 관리
별도검사	신체 발달 상황 검사	검사기구 점검	검사기구	4월	보건	비만도 측정기(신장, 체중 측정)
		키, 몸무게 비만도 측정	2,3,5,6 학년	5월~6월	보건 담임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자(측정자)에게 사전교육 철저 -보건실 앞 복도에서 담임측정 -1, 4학년은 건강검진 시 실시
		시력검사	2,3,5,6 학년	5월	보건 담임	-신체발달상황검사 시 실시 -1, 4학년은 건강검진 시 실시
		검사결과 처리	2,3,5,6 학년	5~6월	보건 담임	-검사결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비만아동 선별 -나이스 입력 및 통계처리
		소변검사	2,3,5,6 학년	0월 00일	보건	-한국학교보건협회 협조 -검진비 : 1인당 0000원
건강검진	건강검진		1,4학년	4월~6월	보건 (담임)	-검진기관 출장방문하여 검진(6월) -미검자 검진기관 방문 실시
구강검진	구강검진		1,2,3,5 학년	4~12월	보건 (담임)	-검진기관 출장방문하여 검진(4월) -2회 추가 출장검진 실시(7월, 12월) -4학년은 치과주치의사업 진행

마. 건강검진 세부 추진 일정(※**별도 운영계획 수립**)

순	내용	대상	시기(월)	담당자	비고
	학생 건강검진계획 수립	·	2026.2~	보건교사	-별도 계획 수립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	·	2026.4~	보건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진기관 선정
	학생 검진기관 계약	검진기관	4월~6월	행정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준수
	검진기관 선정 후 안내문 발송	1,4학년	5월~6월	보건교사 담임교사	- 검진절차 및 준수사항 학교 방문 출장검진 실시
	학생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실시	//	4월~12월	검진기관	-학교 방문 출장검진 실시 -출장 검진일 미검자는 해당 병원
	검사결과통보서 보관 및 관리	//	연중	보건교사 담임교사	-학생건강기록부 입력(담임)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
	검진결과 이상자 관리	//	수시	담임교사 보건교사	-정밀검진을 받도록 안내문 배부 (2차 검진비는 학부모가 부담) -요보호자관리카드 작성.관리
	검진실시현황파악	//	수시	보건	-현황파악 및 보고 -통계처리 및 보고 -미검자 독려(11월까지 완료토록 도려)
	검진비용 집행	//	익년 2 월까지	보건교사 행정실	-검진비용은 청구상의 각 항목 실시 인원과 명단을 확인한 후 접수.지급

바. 건강검진 후 결과처리

1) 검진기관

-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진 완료 후의 15일 이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 긴급히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통보하고 결과와 관련하여 철저히 개인의 비밀을 보장한다.

2) 학교장

-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에 입력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는 원본을 당해 연도까지 보건실에 보관한다.
- 검진결과 이상 아동의 경우는 정밀검진, 조기치료 등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 통보하고 결과를 받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이상에 대한 상담활동과 가정통신 등 특별 지도대책을 마련한다.

사. 검사 결과 이상자 관리

학년반	성별	이름	검사항목	검사결과	상 담

추진 협조 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학교보건계획 수립 ◦ 초1,4학생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별도의 검사, 건강조사 실시 ◦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른 보건교육과 상담 실시 ◦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검진기관 질 관리 ◦ 건강기록부 기재및관리(나이스)	◦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건강검사 지원 ◦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지원 및 보고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한 체중관리, 불균형 체형예방을 위한 학생 활동 및 학부모 참여 지원 ◦ 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및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 학생건강검사 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안내 ◦ 학생건강검진 항목별 수가확정 안내, 별도의 검사기관 선정 ◦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 학생건강검사 실시현황 조사 ◦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반영 ◦ 교육부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및 시범 운영 협조 ◦ 건강기록부 관리·보고(나이스)

주요 추진 내용

1. 사전 예방 강화(평상시 예방관리)
2. 발생 초기 대응 강화(확산 방지 체계 정비)
3.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가. 근거

- 1) 「학교보건법」 제8조 및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등
- 3) 「결핵예방법」 제11조, 제34조 등
- 4)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2020.7.15. 제정)
- 5) 교육부 『학생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초중고·특수학교용)』 (제3차개정판)
- 6)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 (2024.5.)

나. 기본방침

- 1)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 2) 학교 감염병 발생 상황별 대응체계 내실화
- 3)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제고

다. 추진방향



사전 예방 강화(평상시 예방관리)

- 1) 「학교보건법」 및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초중고·특수학교용)』 (제3차개정판) 준수
 -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방역체계 유지 “경기도교육청(2024년~2028년) 학교 감염병 예방 세부 종합대책” (2024. 2.) 참조
 -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학교안전 > 감염병정보 > 자료실 탑재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 세부 사항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 2 [참고자료]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초중고·특수학교용)』 (제3차

개정판) p.12~20

2 [참고자료]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 (2024. 5.)

- 학교는 모든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감염병관리조직’ 구성, 필요시 즉각 대응

2)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2 30초 이상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환기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중요성 강조: 손 세정제(알코올 60% 이상 함유된 제품)는 물과 비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음

학생 빈발 감염병(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유행성결막염 등)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 활용

감염병 예방교육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화(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학교보건법) 모든 학교는 최소 1개 학년 이상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학교안전 > 감염병정보 > 자료실 탑재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학교안전 > 감염병정보 > 자료실(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작한 주요 국가 번역본도 탑재)

- 교원 대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원격직무연수 의무 이수

경기도교육연수원 ‘감염병대응 길라잡이’ (교장, 교감 / 담임교사 / 보건교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감염병 대응 길라잡이’ (학교관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통해 미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예정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교육부]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해외 입·출국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외국에서 전입한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 시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미접종자 접종 안내
- 해외 출국 학생 및 교직원 대상(견학, 봉사활동, 여행 및 선교 등) 여행국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 사항 제공, 귀국 후 감염 여부 모니터링

5) 학생 안전을 위한 필수 방역물품 구비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강조 교육

-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손 씻는 시설/물품을 반드시 보완·확충
비누와 손 닦는 비품(종이 타월, 손 건조기 등) 비치, 온수 공급 시설 정비
- 위기 상황 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학교 방역물품 비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정 수량 확보·유지를 위한 학교 예산 편성

모든 방역물품은 제품에 표기된 기한까지 사용, 사용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폐기하고
재구매 및 비축

2 [참고자료]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초중고·특수학교용)』 (제3차 개정판)(p.19 ~ 20)

- 손 씻기 향상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반복 교육 및 홍보 방안 추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손 씻기 실천율 및 개인위생 교육 경험률이 낮으므로 보건수업 외
교과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교내 행사 등을 활용한 개선방안 추진

라. 단계별 대응체계



발생 초기 대응 강화(확산 방지 체계 정비)

1) 학교 내 감염병 환자 파악 및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정립

- 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의심)환자 관리 강화

감염병 의심 및 확진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교 내 확산을 방지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의심) 시 지체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보고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보고” 일일 보고 체계 유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학교보건법 [교육부]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자 발생 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초중고·특수학교용)』 (제3차 개정판)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에 따름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즉시 별도 유선·서면 보고(서식 참조)

2 (유선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서면보고)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K-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동시보고)

감염병 발생 보고 나이스 제출 및 환자상태 변화에 따른 수정 보고 필요

2)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 예방 관리사업 전개

* 누리집 주소: 결핵ZERO(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 게시물 37번

- 학교장은 교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건강 보호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

- 교내 결핵환자 발생 시 초기대응 강화를 통한 확산 방지

학교내 결핵발생시 방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협조

※ 필요시 관할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교육(지원)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등교중지, 의심 증상 확인, 보건교육, 환경 소독,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등

발생 정보, 역학조사 명단 등 제출 및 역학조사 실시 협조

결핵예방법 [질병관리청]

제11조(결핵검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경기도 학생 감염병 유행감시체계 운영으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지역 내 유행 발생 학교에 대한 전문 기술 자문 지원을 위한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

유행 발생 학교의 휴교 조치, 역학조사 등 전문가 자문 및 대응 정보 지원

마.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1) 학교 감염병 선제적 대처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학교장은 학교감염병관리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병 유행의심 상황 종결 시 까지 모든 교직원이 협력적 역할(업무) 수행

2 [참고자료] 교육부 『학교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초중고·특수학교용)』 (제3차 개정판)p.141 ~

보건당국의 학생·교직원·학부모 격리조치 정보 또는 학교 역학조사 결과 등 필요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2)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 연 1회 이상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
- 학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 구성원별 역할 숙지 및 대응 단계별 역할 수행 훈련 실시
 - 모의훈련 일지 작성(자체보관), 훈련실적 제출(서식 참조)
 - ※ 모의훈련 관련 자료(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교재, 워크북 등) 일체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학교안전 > 감염병정보 > 자료실 탑재
 - 평상시 감염병 유행 상황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구분한 훈련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역량 구비

바. 세부 추진 일정

순	내용	시기(월)	담당자	비고
1	학교감염병예방·관리계획수립안내	2026.2	보건교사	
2	학교감염병예방·관리계획수립및운영	2026.3~2027.2	보건교사	
3	감염병환자발생에따른조치및보고	발생즉시	담임교사 보건교사	NEIS
4	입학생예방접종력확인사업	2026.3~ 2026.5.30	담임교사 보건교사	NEIS
5	학교감염병위기대응교육	발생즉시	담임교사 보건교사	
6	학교감염병위기대응 모의훈련실시	2026.3.~12	보건교사	
7	전교직원감염병예방교육의무연수	2026.3~2026.12	보건교사	온라인 연수
8	감염병예방교육온라인연수실적보고	2026.12	보건교사	내부결재 자료집계

추진 협조 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교육부 『학교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초·중고·특수학교용)』 (제3차개정판) 숙지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교감염병관리조직(대책반) 구성 및 개별임무부여 - NEIS 감염병 발생 보고 철저 - 학생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 학부모용 교육자료 홍보 - 필수 방역물품 구비 - 초·중학교입학생예방접종력 확인 -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연1회이상), 실적보고 - 전공무원감염병교육의무화에 따른 실적 보고	- 교육부 『학교감염병 예방·위기·대응매뉴얼(초·중고·특수학교용)』 (제3차개정판) 준수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현황 모니터링, 감염병 보고 감시체계 강화 - 방역당국 및 유관기관 등 포함 모의훈련 추진 - 감염병대응현장지원단구성, 운영 - 전공무원감염병교육의무화에 따른 실적 보고 - 학교감염병관리평가 및 표창	- 학교감염병예방 및 관리 정책 안내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보건교사 감염병 예방 원격연수 운영 - 감염병통계분석 및 예방활동 지원 - 학교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감염병 관계자 연수 운영 - 학교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운영 - 학교 감염병 관리 유공자(기관) 표창

바. 학생감염병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교감	협력 기관
총괄: 학교장 지휘, 통제, 조정, 보고 및 신고	· 위기상황진단, 정책 판단 · 대 · 언론 보도에 대응 · 결과 학교 · 대화 협력/홍보 장 보고	- 경기도교육청 - 용인교육지원청 - 수지구 보건소
발생감시팀 학년부장(총괄)	예방관리팀 보건교사(총괄)	학사관리팀 교무부장(총괄)
-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 감염병(의심)환자 신속한 파악 / 보건교사에게 알림 - 유증상자 파악, 귀가 조치 - 등교중지 학생 관리 - 유증상자 및 감염병 관련 결석생 집계 파악하여 보건실로 통보 - 학생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생활지도 (손씻기 등)	- 담임교사 -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보건교육(예방 및 위생관리 등 교육) - 발생 현황 통계 취합 관리 및 보고 (의심)환자/접촉자관리 - 교육청 및 보건소 보고 - 보건소 등 외부기관에서 역학조사 시 협조 - 일시적 관찰실 운영	- 담임교사 (의심)환자 이동이나 일시적 격리로 인한 교사 담당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수업 조정, 교실 내 학생 관리 등) - 등교 중지 학생 출결 관리 - 휴업/휴교, 등교중지 시 학생들의 가정학습, 생활 관리 -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학부모 대상 상황 안내 - 직원 복무 관리
		행정지원팀 행정실장(총괄)/영양교사
		- 행정실, 급식실 직원 - 학교 위생시설 관리 - 교내 방역 소독 - 방역물품 구입, 관리 - 예산 및 행정 지원 -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환경관리 소독 관련 강화 - 감염병 발생 시 급식 배식에 관한 계획 수립 - 역학조사 지원 - 학교 방문객 관리

사. 국가의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학교의 대비 및 대응

- 위기 경보수준에 따른 학교의 대응 -

단 계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예방		• 평상시	없음	• 일반적 대비 • 대응체계 구축
국가 위기 단계	관심 (Blue)	•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WHO: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없음	•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 국내의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산발적	•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 징후 감시 활동(필요시)
	주의 (Yellow)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 (WHO: ‘감염병 주의보’ 발령)	해당지역	•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 • 환자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실시
		•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 (Orang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해당지역	• 대응체제 가동 • 유관기관 협조체계강화 •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강화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심각 (Red)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전국적	• 대응역량 총동원 • 범정부적 협조체계강화 • 전국적으로 감시 및 대응 강화 확대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복구		• 유행 종료	산발적	• 평가 및 보완·복구 • 감시활동 유지

아.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예방 단계	평상시	▶감염병 유행 여부 감시(수동 감시 체계 운영) ▶개인위생(손 씻기, 기침예절) 상시 교육 및 교실소독/ 환기 ▶마스크 착용(기침, 발열)																			
대응 1단계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진단 전)	담임교사 ■ 보호자연락(병원진료및등교중지) ■ 방역물품 수령(246보건실) →교실환기, 소독 ■ 마스크 착용(발열, 기침) ■ 감염병 예방 교육	→ 담임과 함께 일시적 관찰실 로 이동 (1층학부모실/246보건실)	보건교사 ■ 감염병환자발견, 관찰 (일시적관찰실) ■ 감염병증상여부확인 ■ 마스크 착용 확인 ■ 감염병예방 교육안내	※ 감염병대유행 시 일시적 관찰실은 보건실 외 별도로 운영																
대응 2단계	감염병 확진 환자 발생 (병원 진단)	교무부장 ■ 능동감시체계운영 : 감염병의심환자 적극적 파악 대응	담임교사 ■ 환자관리 ■ 유증상자 확인 ■ 교실환기, 소독 ■ 감염병 예방 교육	보건교사 ■ 감염병 보고 ■ 환자/유증상자관리 ■ 유행 여부감시 ■ 감염병 예방 교육																	
대응 3단계 (경계)	추가 환자 발생 (동일 질병 2명 이상)	▶ 학생 감염병 관리위원회 조직 운영(1페이지 참고) <table><tr><td> 발생감시팀 - 학년부장(총괄) -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 환자관리 ■ 유증상자 확인 ■ 밀접접촉자 파악 ■ 교실 환기, 소독 ■ 감염병 예방 교육 </td><td> 예방관리팀 - 보건교사(총괄) - 담임교사 ■ 환자, 접촉자관리 ■ 밀접접촉자 관리 ■ 감염병 예방 활동 ■ 고위험군 관리 ■ 발생현황 보고 ■ 역학조사협조 </td><td> 학사관리팀 - 교무부장(총괄) - 담임교사 ■ 학생 출결 관리 ■ 수업결손 대책수립 ■ 등교중지 학생의 가정학습과 생활관리 ■ 학부모 대상 교육 </td><td> 행정지원팀 - 행정실장(총괄) - 행정실 직원 ■ 교내방역 소독 ■ 위생시설관리 ■ 예산, 행정지원 </td></tr><tr><td colspan="2"></td><td colspan="4"> ▶ 교감: 대책 논의, 대외 홍보, 언론 및 민원 관리 ▶ 교장: 각종 행사 제한 및 휴업/휴교 검토(보건소/교육청과 협의) </td></tr><tr><td>대응 4단계 유행종료</td><td>기존환자 완치/ 추가 미발생</td><td colspan="4"> ▶ 보건교사: 감염병 종료 보고 ▶ 담임교사: 감염병 추가 발생 유무 지속 관리 ▶ 교감, 교장: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대응 활동 종료 </td></tr></table>				발생감시팀 - 학년부장(총괄) -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 환자관리 ■ 유증상자 확인 ■ 밀접접촉자 파악 ■ 교실 환기, 소독 ■ 감염병 예방 교육	예방관리팀 - 보건교사(총괄) - 담임교사 ■ 환자, 접촉자관리 ■ 밀접접촉자 관리 ■ 감염병 예방 활동 ■ 고위험군 관리 ■ 발생현황 보고 ■ 역학조사협조	학사관리팀 - 교무부장(총괄) - 담임교사 ■ 학생 출결 관리 ■ 수업결손 대책수립 ■ 등교중지 학생의 가정학습과 생활관리 ■ 학부모 대상 교육	행정지원팀 - 행정실장(총괄) - 행정실 직원 ■ 교내방역 소독 ■ 위생시설관리 ■ 예산, 행정지원			▶ 교감: 대책 논의, 대외 홍보, 언론 및 민원 관리 ▶ 교장: 각종 행사 제한 및 휴업/휴교 검토(보건소/교육청과 협의)				대응 4단계 유행종료	기존환자 완치/ 추가 미발생	▶ 보건교사: 감염병 종료 보고 ▶ 담임교사: 감염병 추가 발생 유무 지속 관리 ▶ 교감, 교장: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대응 활동 종료			
발생감시팀 - 학년부장(총괄) -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 환자관리 ■ 유증상자 확인 ■ 밀접접촉자 파악 ■ 교실 환기, 소독 ■ 감염병 예방 교육	예방관리팀 - 보건교사(총괄) - 담임교사 ■ 환자, 접촉자관리 ■ 밀접접촉자 관리 ■ 감염병 예방 활동 ■ 고위험군 관리 ■ 발생현황 보고 ■ 역학조사협조	학사관리팀 - 교무부장(총괄) - 담임교사 ■ 학생 출결 관리 ■ 수업결손 대책수립 ■ 등교중지 학생의 가정학습과 생활관리 ■ 학부모 대상 교육	행정지원팀 - 행정실장(총괄) - 행정실 직원 ■ 교내방역 소독 ■ 위생시설관리 ■ 예산, 행정지원																		
		▶ 교감: 대책 논의, 대외 홍보, 언론 및 민원 관리 ▶ 교장: 각종 행사 제한 및 휴업/휴교 검토(보건소/교육청과 협의)																			
대응 4단계 유행종료	기존환자 완치/ 추가 미발생	▶ 보건교사: 감염병 종료 보고 ▶ 담임교사: 감염병 추가 발생 유무 지속 관리 ▶ 교감, 교장: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대응 활동 종료																			

* 밀접접촉자란 : (의심)환자가 포함된 학급 전체

* 능동감시 : 유행 의심 시 증상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 환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

* 수동감시 :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 환자를 발견하는 것

사.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성질환의 특성

병명	병원체	감염경로	감염기간	완치 판단기간	잠복기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비. 인두분비물 객담 등으로→비말감염	발병 후 3~4일 후	해열 후 2일 경과까지	24~72시간
홍역	홍역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 출현 전 5일 ~출현 후 3~4일	해열 후 3일 경과까지	10~11일
풍진	풍진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 출현 전 7일 ~출현 후 7일	발진 소실일 까지	14~18일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멤프스 바이러스	타액 → 비말감염	타액선 종창 전 7일 ~종창 후 9일	이하선종창 소실일 까지	16~18일
수두	수두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 출현 전 1일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았을 때까지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았을 때까지	13~16일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눈곱, 분변	인두로부터 2주일, 분변으로부터 3~4주간 균 배출	주요증상 소실 후 2일 경과까지	2~3일
성홍열	A군. B군 용혈성 연쇄상구균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2~5일	치료 시작하고 낙설기가 지날 때까지	2~4일

아. 보고 방법

- 1)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및 보건소로 신고하여 신속한 방역 체계 구축
- 2) 교육지원청 보고 : NEIS를 통해 즉시 보고 및 통계 처리
- 3) 등교중지에 관한 행정처리 지침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
 - 진단명과 등교중지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가능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4)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출결처리 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전염성 질환임이 확인되면 등교중지 시킨 후, 완치후 등교 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
 - 보건교사는 [나이스>보건>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환자등록]에서 등록 관리

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결핵예방 관리(※ 별도 운영계획 수립)

2026학년도 응급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직원 연수

수지초등학교

응급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1. 응급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가. 응급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보고체계



나. 응급사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구 분	의료기관 명	전화번호	주소
종합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031-787-3036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	1688-611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성빈센트병원 응급의료센터	1577-8588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병원 응급의료센터	031-210-0118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병·의원	러스크병원	031-898-0007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미래산부인과	031-896-3333	수지구 포은대로

※ 심각한 상황인 경우 최초 목격자가 119 도움요청 후 보건실에 연락
 보건실에 환자 이송 후 119 도움요청 시 시간 지연으로 상황 악화될 가능성 있음

다. 응급상황 판단기준

구 분	환자 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		환자 상태가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상 황	기도폐쇄, 호흡곤란(숨을 쉬지 않거나 1분에 30번 이상 숨을 쉴 때,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개방골절인 경우,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 경미한 부상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 • 고열, 단순외상 등
	최초 발견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절 차	보건 교사	• 119 도움요청 및 응급처치 • 편안한 자세-기도유지 및 척추손상에 유의 • 보건교사→교감→교장 보고	•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 119 도움요청 또는 다른 이송방법 모색 (병원구급차량, 교직원차량 등)
	담임 교사	• 담임교사→학부모연락 (환자상태, 이송병원 안내)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안내 (의료기관 선택은 학부모 의사에 따른다.)
	이 송	•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가 함께 이송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보건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함) • 보건일지에 기록	• 학부모에게 인계 • 학부모가 연락되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가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 보건교사는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교내 대기.
	이송 차량	• 교직원 차량, 119, 병원응급차량(교직원 차량인 경우 이송도중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운전을 하지 않음)	
치료비	• 학부모와 연락이 되어 동행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지불하고 학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후불로 처리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 • 사고발생 후 담임(교과)교사는 사고현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상관련 공제회 학부모에게 안내 • 치료 후 담임(교과)교사는 공제회에 신청하거나, 신청 방법을 학부모에게 안내(교육행정 담당자는 행정적 처리 협조, 보건교사는 의료처리 상담 및 조언) • 지불 능력이 없는 등 지급이 불가능 경우 학교안전망확보 학교예산에서 지출		
이송 경비	•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응급 처치자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장 처리 • 병원 이송 교사는 사전 출장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두 보고 후 사후에 출장 처리 • 이송경비가 출장비를 초과할 경우 학생 복지비에서 지출		
기 타	• 보건교사가 출장 등 기타 사유로 부재 시 학교보건업무는 지정된 학교보건업무 대행자가 담당한다. •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기록은 이송 즉시 기록하도록 한다. (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사고 현황, 환자 상태, 응급처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 관리자는 출장 교직원(특히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 이송)에 대해서는 교문을 떠남과 동시에 출장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이송 도중 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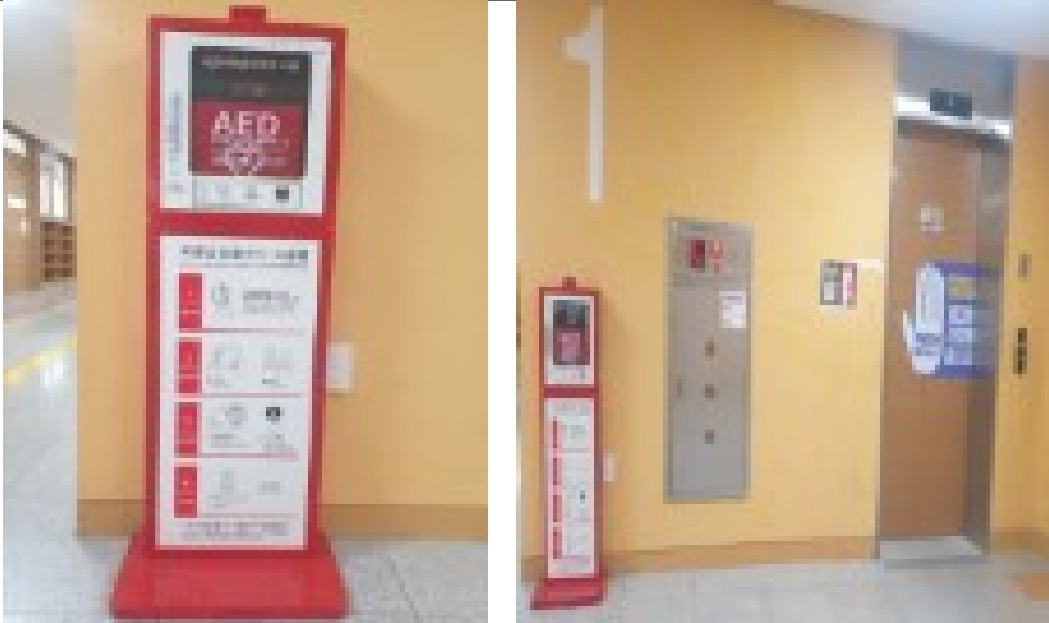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 현황

수지초등학교

□ 설치 위치: 본관 1층, 서편 엘리베이터 앞

- 문을 열면 열림
- 누구나 언제든지 응급상황에서 사용가능
-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관리책임자에게 연락을 주어야 부속품을 교체할 있음
- 보관함을 열 경우 비상벨이 울림
- 아이들에게도 설치 상황을 안내해주고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

																			
설치장소 안내 표지	보관함 외부 표시(좌·우)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표시사항 <table> <tr> <td>1. 제품명(모델명)</td><td>NT-381.C</td></tr> <tr> <td>2. 장비 구매일자</td><td>2020.03.18.</td></tr> <tr> <td>3. 본체 유효기간</td><td>2030.04.08.(교체)</td></tr> <tr> <td>4.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교체예정일)</td><td></td></tr> <tr> <td> 패드교체(2년마다)</td><td>2026.03.31.</td></tr> <tr> <td> батери교체(4년마다)</td><td>2030.03.31.</td></tr> <tr> <td>5. 관리책임자</td><td>(정) 135보건실</td></tr> <tr> <td></td><td>(부) 246보건실</td></tr> <tr> <td>6. 비상연락처</td><td>☎031-282-0055교무실</td></tr> </table>	1. 제품명(모델명)	NT-381.C	2. 장비 구매일자	2020.03.18.	3. 본체 유효기간	2030.04.08.(교체)	4.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교체예정일)		패드교체(2년마다)	2026.03.31.	батери교체(4년마다)	2030.03.31.	5. 관리책임자	(정) 135보건실		(부) 246보건실	6. 비상연락처	☎031-282-0055교무실
1. 제품명(모델명)	NT-381.C																		
2. 장비 구매일자	2020.03.18.																		
3. 본체 유효기간	2030.04.08.(교체)																		
4.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교체예정일)																			
패드교체(2년마다)	2026.03.31.																		
батери교체(4년마다)	2030.03.31.																		
5. 관리책임자	(정) 135보건실																		
	(부) 246보건실																		
6. 비상연락처	☎031-282-0055교무실																		

☐ 정상 작동 표시

정상	비정상
월1회 자체점검 실시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구 분	담당업무	담당자(연락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정)	135보건실	070-4249-1228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부)	246보건실	070-7774-5332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알기

뚜껑을 열면 ‘자동 on 모드’ 되므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성인/소아 모드만 변경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기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표준규격에 따라
붉은색은 화재/위험의 의미이므로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는 안전을 의미하는 ‘녹색’ 을
사용토록 권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알기



1

전원을 켜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자동심장충격기에
지시에 따라 패드를
붙이고 음성지시를
따른다.



3

자동심장충격기에
지시에 따라 "속"
버튼을 누른다.



우리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기억해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

※ 필요한 부분만 작성한다.					
학년반		환자명		성별	보호자전화번호
					담임교사
주 증상					인체모식도
환자 상태	근골격계	☐ 부종 ☐ 통증 ☐ 열상 ☐ 자상 ☐ 멍 ☐ 기타:			
	순환기계	☐ 홍통 ☐ 부정맥 ☐ 심계항진 ☐ 기타:			
	호흡기계	☐ 호흡곤란 ☐ 청색증 ☐ 기타:			
	신경계	☐ 시력장애 () ☐ 청력장애 () ☐ 마비(부위:) ☐ 경련			
	소화기계	☐ 오심 ☐ 구토 ☐ 토혈 ☐ 복부통증 ☐ 기타:			신체 전면
	의식상태	☐ 정상(A) ☐ 언어반응(V) ☐ 통증반응(p) ☐ 반응 없음(U)			신체 후면
					활력 징후
발생장소 & 시간	발생장소				측정 시간
	최초 모격자				혈압
	최초 발견시간	(AM,PM) 시 분			맥박
	보건교사 확인시간	(AM,PM) 시 분			호흡
					체온
					paO2
					기타
사고 개요					
응급처치 내용					
이송시간 및 이송방법	이송시간	시 분			
	이송차량	☐ 구급차 ☐ 일반차량 ☐ 기타()			
	이송자	☐ 119대원 ☐ 보건교사 ☐ 담임 ☐ 학부모 ☐ 기타()			
	이송병원				
작성일 및 작성자	년 월 일 직: 성명: (인)				

자동심장충격기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매월 1회)

자동심장충격기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장비정보		제조사 : 제품명 또는 모델명 : 제조번호 : 제조연월일 :	
장비유지기간		장비구매일자 : 년 월 일 본체유효사용가능기한 : 년 월 일 교체예정일자 : 년 월 일	
설치위치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있음	이상없음
1	본체 작동 상태 확인		
	① 전원 표시 상태등 점멸		
	②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패드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③ 건전지 충전 상태		
	●건전지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2	본체 및 부속물 청결 및 손상상태		
3	보관함 상태		
	①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② 보관함 각종 안내문구상태		
	③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④ 사용자 매뉴얼 및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책자 여부		
	⑤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표시 여부		
4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① 기관(건물) 입구 안내 표지		
	② 기관내 설치 위치 및 방향 표지		
5	지난 1개월간 사용실적 여부(있을 경우 추가 기재)	있음	없음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각 :)		
	●사용자 :		
	●사용내용 :		
6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7	관리자 변경사항	있음	없음
	① 관리자 이름 : 관리자 전화번호(비상연락처) : 010-0000-0000		
8	장비 사용 가능 시간		
	① 24시간 이용 가능	② 24시간 사용 불가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응급주사제(경구약 포함) 보관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아동명			성별	남 여	
해당년도	학년 반	담임교사	해당년도	학년 반	담임교사
학년도	학년 반		학년도	학년 반	
연락처	부		모		
질병상태 및 응급주사제	■ 진단명: ■ 약품명: ■ 투약용량 및 방법: ■ 현재상태: ■ 진단 & 처방의료기관명: ■ 약품보관 방법: ■ 약품보관 장소: ■ 처치내용: 약품 사용 및 투약(처치)방법: 담당의사의 처방(자문)에 따름				
응급약품 유효기간	* 약품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고 필요시 투약하며,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약을 준비하여 보냅니다. ■ 유효기간: 년 월 일				

[약품의 보관 및 반납] 1, 2, 3 방법 중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기 약품을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용 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실에 위탁 보관합니다. ☐
2. 상기 약품을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용 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가방에 항상 소지합니다. ☐
3. 상기 약품을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용 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실에 위탁 보관 및 학생 가방에 항상 소지합니다. ☐

[약품의 사용 및 처치]

학생의 보호자가 위탁한 약품은 학생에게 해당 질병으로 인한 응급 증상(저혈당 쇼크, 알레르기 쇼크, 기타)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담당의사의 자문(처방)에 따라 보건교사 및 교직원의 투약 및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 보건교사가 직접하지 못하거나 부재 상황(보건교육, 출장, 연수 등) 시 학교 응급환자 관리대책에 따라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이송토록 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교의 방침에 따라 약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약품의 사용 및 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관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함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라다음항목에대해개인정보수집동의여부를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발생시 정보제공 2. 정보항목: 아동명, 병명, 연락처 등
3. 보유·이용기간: 2025년 월 일 ~ 학교재학기간

** 응급환자 투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 학생과의 관계: ■ 이름: (서명)

학교 내 응급 투약(경구약, 주사) 의뢰서

학교 내 응급환자 투약에 대한 의뢰서

대상자 이름	학교 학년 반 이름
병 명	
약품 이름	
투약 용량	
투약 방법	
투약 위임자	① 보건교사 ② 교직원 : 보건교사 부재 시 119 구급대 지시에 의해 투약 가능
보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의 투약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따라다음 항목에대해개인정보수집동의여부를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정보제공
2. 개인정보항목: 병원명, 의사 성명, 병원소재, 연락처 등
3. 보유·이용기간: 20 년 3월 0일 - 학교 재학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병원명

(전화)

의사 성명:

(서명)

- 필요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의뢰서를 보건실 제출
- 학교에서는 사전에 학부모님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2018.5.29. 시행)

당뇨병의 이해 및 응급처치

1. 당뇨병

가. 정의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자라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나. 혈당 조절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액 내 포도당을 조절한다.

음식물의 섭취로 혈액 내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포도당이 체세포(근세포, 지방세포)로 이동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골격근과 간세포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여 혈중포도당을 감소시킨다.

반대로 혈액 내 포도당이 감소하게 되면 췌장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중 포도당을 증가시킨다.

라. 종류

종류	제1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형, 소아형)	제2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형, 성인형)
기전 및 원인	췌장의 베타세포의 파괴 로 인슐린 결핍 자가면역 원인불명	인슐린 분비저하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유전 환경적 요인(비만,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기타: 수술, 감염, 약물복용 등
치료 방법	인슐린 주사 반드시 필요 식사, 운동요법 동반	경구용 혈당강화제 또는 인슐린 주사 식이, 운동요법 중요
응급 상황	당뇨병성 케톤산증 저혈당 반응	고삼투성 고혈당성 비케톤성 혼수

마. 진단

다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공복 혈장 혈당 126mg/dL 이상인 경우(검사 전 8~12시간 금식 상태)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식사와 무관하게 측정된 혈장 혈당 200mg/dl 이상

75g 경구 당부하 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200mg/dl 이상(서로 다른 날 2회 검사하여 진단)

※ 정상 혈당은 공복 혈장 혈당 100mg/dl 미만이고, 75g 경구 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혈당 140mg/dl 미만이다.

흔히 사용하는 휴대용 혈당측정기의 경우 말초혈액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정맥혈의 혈장 포도당을 측정한 결과에 비해 혈당이 낮게 측정된다. 따라서 휴대용 혈당 측정기로 혈당이 110mg/dl 이상으로 측정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바. 당화혈색소

혈당이 높을 때 포도당의 일부가 적혈구내 혈색소와 결합하게 되고 이것을 당화 혈색소라고 한다.

적혈구가 포도당에 노출된 기간과 혈중 포도당 농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된 시간보다 과거 6주~10주 동안의 평균혈당 조절상태를 반영한다.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되었던 경우는 정상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적혈구의 생존기간이나 농도에 영향을 주는 빈혈증이나 적혈구의 수명이 통상 120일 보다 현저하게 짧아져 있으면 수치는 낮게 측정된다.

혈당 검사의 경우는 검사 당시의 혈당수치를 알 수 있으나, 당화혈색소 검사는 식사 시간과 관련한 혈당치의 단기 편차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아 최근 수 개월동안 혈당관리 정도를 알 수 있다.

<당화혈색소와 혈장 혈당값 비교(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

당화혈색소	평균 혈장 당수치
6 %	135 mg/dL
7 %	170 mg/dL
8 %	205 mg/dL
9 %	240 mg/dL
10 %	275 mg/dL
11 %	310 mg/dL
12 %	345 mg/dL

사. 인슐린 투약 학생 지도 시 유의사항

인슐린은 대부분 속효성인슐린이나 중간형인슐린을 투여하는데 하루 2회 이상 맞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소에 혈당이 2~3일 이상 높거나 낮아서 인슐린 용량을 증감하고자 할 때는 한 번에 1~2단위 이상 조절하지 않으며 한 번에 속효성이나 중간형 인슐린 하나만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슐린의 선택과 처방은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인슐린 주사방법, 인슐린 주사부위 등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용량을 조절한 후에는 일주일 정도 혈당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혈당수치의 변화는 인슐린 양보다는 어린이의 활동량, 기분 등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

아. 펜형 인슐린 주사 방법¹⁾

1) 인슐린은 바이알형, 펜형, 인슐린 펌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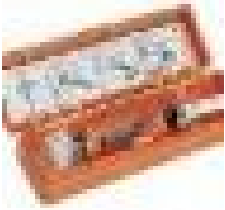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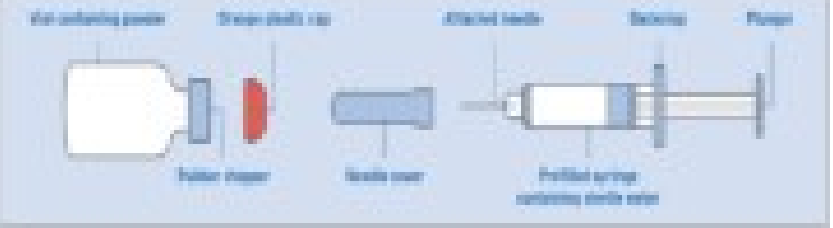
① 펜형 인슐린 내부에 인슐린양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② 중간형 인슐린이나 혼합형 인슐린인 경우 최소한 20회 이상 부드럽게 흔들어 혼합하기
③ 펜형 인슐린의 고무마개 부분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기
④ 펜니들의 종이 덮개를 떼어내기
⑤ 고무막 중앙에 펜니들을 똑바로 맞추어 돌려 끼우기
⑥ 먼저 2단위에 맞추어 돌린 후 바늘이 위를 향하도록 세우고 천천히 버튼을 눌러 인슐린이 바늘 끝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방울이 보일 때까지 반복한다.
⑦ 주사할 인슐린 용량만큼 다이알을 돌려준다.
⑧ 알코올솜으로 인슐린 주사 부위를 소독한 후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⑨ 인슐린을 주사한 후 최소 10초 이상 주입 버튼을 누른 채 기다렸다가 바늘을 뺀다.
⑩ 바늘을 빼고 알코올 솜으로 주사 부위를 5초 정도 문지르지 않고 눌러준다.
⑪ 주사가 끝난 후 즉시 펜니들을 제거한다.
⑫ 사용한 펜니들과 알코올솜을 뚜껑이 있는 밀폐형 폐기물 통에 버린다.

자. 글루카곤 주사 방법

* 글루카곤이란?	• 간 속의 글리코겐이 포도당(당분)으로 변하도록 도와줌 • 인슐린과 반대되는 효과로 포도당이 혈류로 흘러 들어가 혈당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함										
* 언제 사용하나요?	• 인슐린 혼수나 심한 저혈당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할 때 사용함 • <u>심한 저혈당 증상</u> - 혼수상태일 때 - 발작증상을 보일 때 - 저혈당 간식을 먹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 저혈당 간식을 먹었는데도 저혈당에서 회복되지 않을 때										
* 저혈당시 조치계획 (글루카곤 사용)	* 저혈당 증상 조치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학생이 먹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발작 또는 경련 (갑작스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① 학생을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한다. ② 글루카곤을 투여한다. ■ 알코올 솜으로 잘 닦은 후 주사를 놓고 주사 부위를 누른다. ■ 용량 및 부위를 체크한다. <table><tr><td>용량</td><td>☐ 1mg</td><td>☐ 0.5mg</td><td colspan="2">☐ 기타 mg</td></tr><tr><td>부위</td><td>☐ 팔(상완부)</td><td>☐ 허벅지(대퇴부)</td><td>☐ 둔부</td><td>☐ 기타</td></tr></table> ③ 학생의 보호자와 119(응급의료서비스)에 연락한다.	용량	☐ 1mg	☐ 0.5mg	☐ 기타 mg		부위	☐ 팔(상완부)	☐ 허벅지(대퇴부)	☐ 둔부	☐ 기타
용량	☐ 1mg	☐ 0.5mg	☐ 기타 mg								
부위	☐ 팔(상완부)	☐ 허벅지(대퇴부)	☐ 둔부	☐ 기타							
*투여량	• 어린이(몸무게 25kg 이하): 0.5cc (병에 들어있는 용액의 1/2) • 청소년, 어른(몸무게 25kg 이상): 1cc										
*글루카곤 응급키트 사용시 주의사항	• 글루카곤 보관 : 2~8도에서 냉장 보관시 유통기한까지 보관 (25도 이내의 실온에서 18개월간 보관 가능) • 글루카곤 주사 부작용으로 메스껍거나 구토할 수 있으므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돌려 눕혀 둔다. • 글루카곤 주사 후 10-15분 내에 의식이 돌아오면 주스 등 당분이 든 음료를 추가로 섭취하도록 한다. • 주사 후 남은 글루카곤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 주사제의 종류에 따라 용법, 용량, 주사 방법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glucagon emergency kit 사용법

	
glucagon emergency kit	glucagon emergency kit 구성품 (글루카곤 분말 1mg + 일회용 주사기(멸균수 1ml))
주사법	① 유리병의 뚜껑을 제거한 뒤, 주사기의 바늘 뚜껑을 제거하고, 주사기 바늘을 유리병의 중앙에 수직으로 찔러 증류수 1mL를 모두 밀어 넣는다. ② 주사기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병을 잡고, 흔들지 말고, 천천히 병을 돌려서, 모든 분말이 녹아 투명한 액체가 되도록 한다. ③ 글루카곤의 빠른 흡수를 위해서 가장 큰 근육인 대퇴부(허벅지)의 중간 또는 상완부 바깥쪽에 90°로 주사한다.

2)

아나필락시스의 이해 및 응급처치

1. 아나필락시스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과민반응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갑작스럽게 전신적으로 중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부(두드러기, 혈관부종 등), 호흡기(호흡곤란, 천명, 기침 등), 순환기(혈압저하 등) 등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아나필락시스의 증상



3.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5: 103–110



4.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

자세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며 의심되는 물질을 선별하고 알레르기 검사(피부시험,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 때로는 원인물질에 대한 유발 시험을 하기도 함



5. 행동요령



6. 아나필락시스(교사용 동영상, 서울특별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

[v=Mg5BxYZdxlw&pp=ygUa7JWE64KY7ZWE65297luc7lqkICDshJzsmrg%3D](#)

7. 아나필락시스의 치료(에피네프린 자가주사법)

아나필락시스의 치료

아나필락시스의 치료에는 에피네프린이 필요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피네프린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피네프린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엑스트라)사용법



1

두손가락을 이용하여 주사침 아래로 빨간색 버튼을 손가락으로 잡고
분류해 있는 안전캡을 다른 손으로 떼십시오.



2

바깥쪽 대퇴부 근육(허벅지)에 수직 방향으로 약 90도 각도로 바늘을 세게 누릅니다.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10초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초 동안 바늘을 유지합니다.



4

가능한 경우 즉시 구급차(119)를 부르거나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만약 구급차가 도착하지 않으면, 병원에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뇌전증의 이해 및 응급처치

1. 뇌전증의 정의

뇌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의식의 소실이나 발작, 행동의 변화** 등 **뇌기능의 일시적 마비**를 나타내는 상태. 발작이 일회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인 발작’**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

2. 뇌전증 발작의 특징 및 증상

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음

나. 등의 경직 및 구부러짐

다. 호흡이 힘들어지며 입술의 청색증, 얼굴과 목이 충혈(붉어짐)되면서 부풀어 오름

라. 경련, 턱을 악물고 호흡이 거칠어짐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만약 입술이나 혀를 깨물면 붉은색의 침을 흘림)

마. 방광이나 내장을 조절할 수 없어 소변과 배변의 조절이 안 됨

바. 근육이 이완되면서 호흡은 정상이 되며, 몇 분 후 의식을 회복 함

사.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얼떨떨해하거나 멍한 기분으로 이상하게 행동함

아. 발작 이후 피로를 느끼며 깊은 수면에 빠짐

[전조증상(Aura)]

간질 발작을 경험하는 몇몇 환자들은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평상시와 다른 감각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전조증상은 **시각, 청각, 후각 불쾌감, 토할 것 같은 느낌 등**

다양하다. 전조증상은 해당하는 감각을 다스리는 뇌의 부분에서 발작이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간질을 일으키는 병의 부위를 찾는 데 중요하다.

3. 발작(경련) 시 응급처치법

가. 학생이 서 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학생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힌다.

나.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머리 밑에 수건을 대주거나 옷을 깔아준다.

다. 기도유지를 위해 목 주위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라. 몸을 옆으로 눕혀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한다.

마. 발작 시작한 시간을 확인한다.

발작이 5분 정도 이상 지속되거나, 의식의 회복 없이 발작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 머리 부위에

손상이 있을 때는 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치료를 받는다

바. 발작하는 동안 발작양상을 관찰 (발작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거나 주무르지 않는다.)

사. 발작하는 동안 입안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된다.(기도의 질식 위험)

아. 발작 후 졸린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혼자 두지 말고 휴식을 제공한다.

자. 학생의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려한다.



4. 뇌전증을 가진 학생을 대할 때

가. 학생이 복용 중인 약을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지도

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

다. 발작 후 전체 학생들에게 설명 (예: 전염성 없음, 놀리지 말 것)

라. 학생이 전조증상을 호소할 경우, 보건실로 내려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마. 발작 시 응급처치법에 대해 항상 숙지

5. 경련 발작 시 관찰 사항

가. 안구의 위치(좌, 우 편위 여부)

나. 편측성인가 양측성인가?(편측성은 좌, 우 여부 확인)

다. 지속시간

라. 기타 확인 사항(발열, 흥분, 과로 등), 생활 장면(입욕, 음주 등), 기타(빛, 소리, TV 시청 등)

마. 평소 경련 증상이 있는 학생은 교실 자리 배치 시 맨 뒤에 앉히지 않는다(넘어져 뇌 손상 우려)

6.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시 대처법

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 <https://youtu.be/YDjbYT5ME5g>

나. 뇌전증 지원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aLNucite-](https://www.youtube.com/watch?v=aLNucite-Hw&pp=ygUV64eM7KCE7Kad7KeA7JuQ7IS87YSw)

[Hw&pp=ygUV64eM7KCE7Kad7KeA7JuQ7IS87YSw](https://www.youtube.com/watch?v=aLNucite-Hw&pp=ygUV64eM7KCE7Kad7KeA7JuQ7IS87YSw)

[illegible]

- 본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2014-2015, 2015-2016, 2016-2017)
 1.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및 연구
 2.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3. 노인복지시설의 평가 및 인증
 4. 노인복지시설의 홍보 및 마케팅
 5.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양성
 6. 노인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관리
 7. 노인복지시설의 재정 관리
 8. 노인복지시설의 정보 관리
 9. 노인복지시설의 안전 관리
 10. 노인복지시설의 환경 관리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5: 103–110

[illegible]

© 2000 Blackwell Science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47: 395–402





연구 계획

연구 목적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학습 결과에 대한 연구

수업시간에 학습 태도와 학습 결과에 대한 연구 - 수업시간에 학습 태도와 학습 결과에 대한 연구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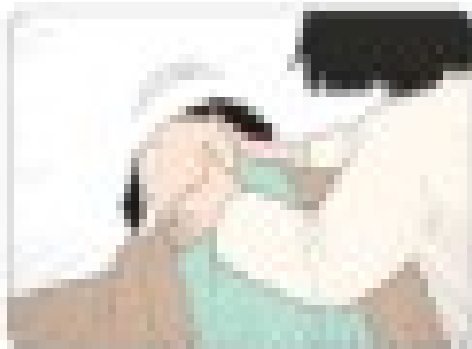
연구 방법 - 수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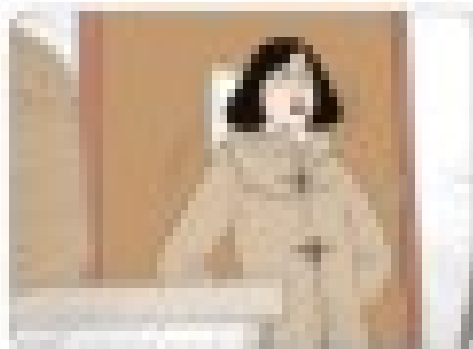
수업 시간 동안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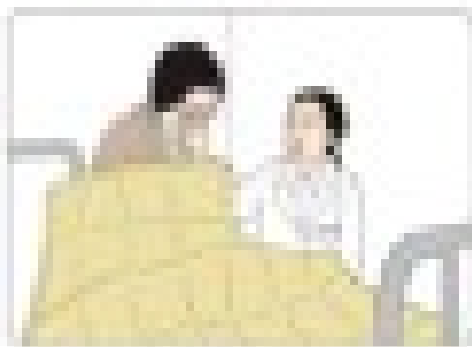
수업 시간 동안 수업



수업 시간 동안 수업



수업 시간 동안 수업



수업 시간 동안 수업



수업 시간 동안 수업



중국어

- 1. 中国
- 2. 中国
- 3. 中国
- 4. 中国
- 5. 中国
- 6. 中国
- 7. 中国
- 8. 中国

中国

- 1. 中国
- 2. 中国
- 3. 中国
- 4. 中国

中国

- 1. 中国
- 2. 中国
- 3. 中国

中国

- 1. 中国
- 2. 中国
- 3. 中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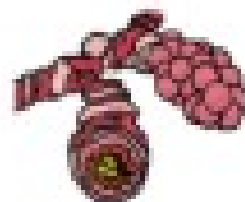
천식의 이해 및 응급처치

1. 천식이란? 폐와 기관지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알레르기 질환

천식은 기관지의 만성적인 알레르기 염증질환이다. 천식은 평소에도 기관지에 염증이 존재하므로 정상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기도가 좁아지게 되어 숨 쉴 때 쌉쌉거리는 소리(천명)와 함께 기침, 가슴이 답답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정상 기관지



천식 발작 기관지

2. 천식의 증상

	
일반증상	후기 중증상태의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헐떡거림 숨을 내쉴 때 쌉쌉거리는 소리가 남 기침: 특히 밤에 심하며 가래가 약간 나옴 호흡곤란: 목의 근육이 조이는 느낌 앉았다가 일어설 때 호흡곤란이 갑자기 일어남 가슴이 커짐 또는 답답함(Enlarged chest)	피부가 푸르스름(입술의 청색증) 심한 피로 숨 쉴 때 소리가 남(후두 천명음) 말을 잘 못함 불안, 혼란 등의 정신적인 변화

3. 천식 발작의 이해

- 평상시 증상 조절이 잘 되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숨이 찰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호흡 마비로 응급실 이송 도중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한 천식 발작의 증후가 있을 때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손톱이나 입술이 회색이거나 파랗다.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몽롱해진다.

평소에 하던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

목, 가슴, 늑골이 퇴축하고 비공이 확대된다.

4. 천식 발작의 올바른 대처법

가. 안정을 취한다.

옷의 단추를 풀어 주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도록 한다.

나. 학생이 약물을 소지 할 경우 증상 완화제를 투여한다.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정량식 분무기나 연무기(네블라이저)를 사용하여 흡입시켜야 하며 효과 가 없으면 20분

간격으로 2회 반복할 수 있음.

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응급실로 간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이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는 반복 흡입

5. 체육 활동 시 주의사항

가. 과격한 운동을 피한다.

나.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운동은 서서히 마친다.

다. 차고 건조한 공기는 피한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해당 계절에는 주의)

라.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발생하면 운동을 중단한다.

마. 학생이 흡입제를 소지하고 있을 시 청색이나 회색 흡입제를 2~4회 들

이 마신다.



▶ **천식약물은 흡입제가 최선!** 약물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여 직접 작용하기 시작하고 소량으로 작용을 발휘하며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바. 천식의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면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흡입제를 다시 사용하고, 4분 안에 나아지지 않으면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흡인기를 사용한다.

6. 학교에서 주의사항

가. 천식 학생이 없을 때 시행

(먼지털이, 진공청소,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 조리, 살충제가 방향제 스프레이 사용, 페인트칠)

나. 천식 학생이 교실 내 들어오기 전에 환기

다. 천식 학생이 직접 청소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라. 천식 학생이 직접 청소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배려

마. 교육영상 (서울특별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학생용)

<https://youtu.be/F7cPeCcoDGo>

희귀질환의 이해 및 응급처치

1. 희귀질환(Rare Disease)

가. 개념

희귀질환은 질환 자체가 매우 드물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을 총칭한다. 현재 알려진 것만 7000~8000가지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제 2조



나. 특징³⁾

- 80%이상이 유전적이거나 선천성 질환이다.
- 전문가가 부족하다.
- 진단을 받는데 조차도 어려움이 있다.
- 치료법/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치명적이거나 장애를 초래한다.
- 비급여 약제가 많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3) 질병관리청

질환의 종류는 많으나 질환별 환자수가 적다.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다. 종류⁴⁾

WHO에 의하면 6000-7000여종의 희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희귀질환

- 고셔병(Gaucher's disease)
- 왜소증(Dwarfism)
- 부신백질이영양증(Adrenoleukodystrophy)
- 중증근무력증(Myathenia Gravis)
- 클라인펠터증후군(Klinefelter's Syndrome)
- 윌슨병(Wilson's disease)
-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 코넬리아드란지증후군(Cornelia de Lange Syndrome)
- 근육병(진행성근이영양증, 염증성근질환) (Myopathy)
- 호흡장애아, 알포트증후군 (Alports syndrome)
- 만성염증성장질환(궤양성장염, 크론씨병) (Chrohn`s disease)
-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 소뇌실조증(Cerebellar ataxia)
- 레트 증후군(Rett Syndrome)
- 유전성혈전증(Hereditary thrombophilia)
- 터너증후군(Turner Syndrome)
- 포피리아(Porphyrria)
- 혈우병(haemophilia)

라. 희귀질환 학생의 어려움

① 일반적인 어려움

일반적인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달리 장기간의 병 치료로 인한 학업 단절 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환아 및 가족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 한다.

입 퇴원이 잦고 치료가 장기적이어서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기가 어렵다.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질환 이해에 대한 어려움과 정확한 정보획득의 어려움이 있다.

환자 이동과 관련된 교통/편의 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

교육기관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이 부족하다.

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은 환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

② 학교 생활 적응의 어려움⁵⁾

жат은 결석으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

체력이 부족해서 학교생활이 어렵거나 힘들다.

4) 질병관리청-희귀질환정보(<https://shorturl.gg/J6XRdEg>)에서 모든 희귀질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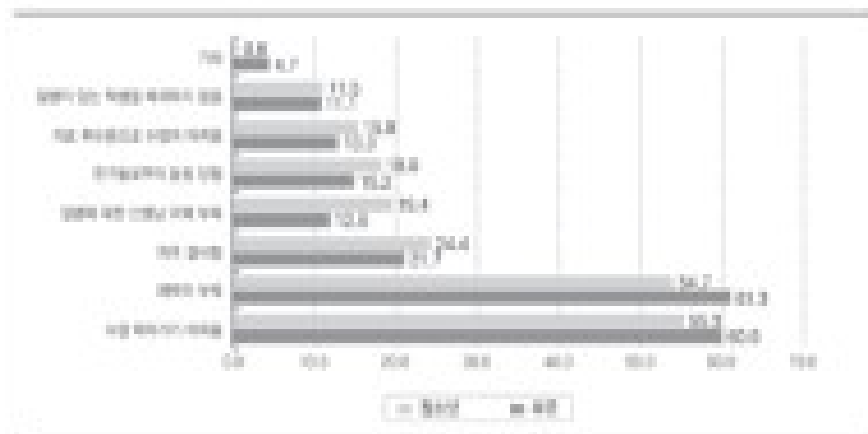
5) 김미숙, 최은진, 김유경, 송원영, 김정연, 신혜정 등. (2016). 건강취약 위기청소년 자립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20-221

치료 후유증으로 수업 참여, 이동이 어렵다.

질병에 대한 선생님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질병이 있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또래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여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학교 생활 적응 문제>



③ 지도 시 유의사항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 질환의 종류에 따라 치료율에 차이는 있지만 ‘희귀 질환’ 이 불치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여 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 영위가 충분하다.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질병 발생 후 치료과정 및 완치 후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또래집단을 포함하여 교사, 이웃 등에게 차별이나 소외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와 격려를 한다.

질병치료 등으로 또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 어려우므로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학업 중단이나 학업의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학생과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형제자매 캠프, 가족상담, 사회적응 교육, 경제적 지원 등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희귀질환 학생의 이해를 돕고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기념일 관련 행사를 기획하거나 캠페인에 동참한다.

예) ‘세계희귀질환의 날’ (매년 2월 마지막 날),

‘희귀질환 극복의 날’ (우리나라는 5월 23일)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278>

‘얼룩말 캠페인’

<http://m.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40>

마. 모야모야병

- 정의: 모야모야병은 양측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한 부위가 막히는 특수한 뇌혈관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질환은 일본의 스즈키 교수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뇌동맥 조영 영상이 아지랑이처럼 흐물흐물해지면서 뿌연 담배 연기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모야모야'라고 명명되었습니다.

□ 교육영상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칠곡경북대병원 제작 <https://youtu.be/U0N8P0xVQxs>



	꿈을 향해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삶, 미래^{high+} 수지교육	● 수지구 정평로 13번길 ● 교무실 031) 262-0055 ● 행정실 031) 262-2498 ● 팩 스 031) 262-4479 ●
	가정통신문	http://www.suji.es.kr

제목: 2026학년도 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학생건강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에대한동의및건강상태조사를거부할권리가있으나거부에따른불이익에대한책임은본인에게있습니다.

학년/반	번호	이름	응급상황시연락처 (연락이안될경우를대비하여 3순위까지확보하고자합니다)
			보호자 1 (학생과의관계:) ☎ _____. 보호자 2 (학생과의관계:) ☎ _____. 보호자 3 (학생과의관계:) ☎ _____.

1. 건강 상태 조사
- **현재 주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거나 수술한 과거력을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예: 심장병, 천식, 간질 및 경련, 발작, 당뇨, 결핵, 신장질환, 암, 근골격계 질환 등

1. 현재 치료 중, 관리 중인 질병	질병명(발병시기)		☐ 없음 ☐ 있음 :		
	병원명				
	복용 약물		☐ 없음 ☐ 있음 :		
2. 수술병력	수술명(수술 연도)				
3. 언어장애 유무	☐ 없음 ☐ 있음 :				
4. 운동능력장애유무	☐ 없음 ☐ 있음 :				
5. 청력장애 유무	☐ 없음 ☐ 있음 :좌측장애() / 우측장애() 보청기 착용 유무()				
6. 시력이상 유무	☐ 없음 ☐ 안경착용 ☐ 난시 ☐ 사시 ☐ 기 타:				
7. 약품 및 식품 알레르기	종류		주의사항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이 있다면 급식 시간에 먹지 않도록 자녀에게 반드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8. 알러지 관련 질환 (최근에 치료 중이거나 관리 중인 경우 기록해 주세요.)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성 비염	천식	알러지성 결막염
	※현재 상태(치료 중인 경우 기록해 주세요)				
주의할 사항					

뒷면도 작성

2. 건강생활에 관한 질문 (해당칸에 **√표시** 및 작성)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한 양식

항 목	건강 생활 행동				먹지 않음	1-2번	3-5번	매일 먹음	항 목	건강 생활 행동					
식생활 습관	1.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라면						수면 및 신체 활동	4. 일주일에세번이상 숨이차거나 땀이날정도로 운동을합니까?	예()		아니오()			
		음료수													
		패스트푸드													
		육류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김치제외)														
	2.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꼭 먹음	대체로 먹음	대체로 안먹음	거의 안 먹음										
	3. 살을 빼기 위해 해본 방법을 모두 선택하세요	아무것도 안함	식단조절	약을	운동으로감량				6.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안함		약간 안함	보 통	약간 함	매우 함

항 목	건강 생활 행동	예	아니오	항 목	건강 생활 행동	예	아니오
개인 위생	7.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TV, 인터넷	17.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8. 하루에 세 번 이상 이를 닦는다.				18.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안전 의식	9.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약물	19.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방송(사이트)를 자주 본다.		
	10.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또는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착용한다.				20.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가정 및 학교 생활 (학교 폭력)	11.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정서	21.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12.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다.				22.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13. 지난 1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인 성희롱이나 성학대(성폭력)를 받은 적이 있다.			부모님 의견	23.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14.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24. 귀하의 자녀가 만 5세 이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뛰어다니거나 말을 많이 합니까? (1학년만)		
	15.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기타	25. 귀하의 자녀는 주의력이 없고 주의가 산만합니까?		
	16.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26.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27. 상담을 받고 싶으면 누구와 상담하고 싶은지 써주세요. (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칸에 √ 표시)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라다음항목에대해개인정보수집동의여부를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제공받는 자 : 수지초등학교
2. 이용목적 : 응급상황 발생 대비 및 건강관리
3. 개인정보 항목 : 학번, 학생이름, 보호자이름, 보호자 전화번호, 학생건강상태
4. 보유 . 이용기간 : 2026.3.3. ~ 2027.2.28.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4.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및 응급처치 동의서 (해당칸에 $\sqrt{\quad}$ 표시 및 서명)

▶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내 환자이송팀이 인근 병원으로 먼저 후송**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 학교에서의 사고 .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및 절차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며 의약품 투약(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보호자: (서명)

2026. . .

수지초등학교장

【참고자료 1】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4.] [경기도조례 제6852호, 2021. 1.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신설 2016. 1. 4.>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보건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

-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경기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 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성
2.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청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7. 11. 10., 2021. 01. 04.>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01. 04.>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연구관, 교육연구사)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852호,2021.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2】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2. 3. 4.] [경기도조례 제7348호, 2022.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및 제시한다.<개정 2022.03.04.>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개정 2022.03.04.>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개정 2022.03.04.>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선정한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해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성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성교육 지도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03.04.>

제7조(실태조사) 학교장은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03.04.>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03.04.>

1.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03.04.>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2.03.04.>

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03.04.>
 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2.03.04.>
 2.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관계자<개정 2022.03.04.>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경기도의회 도의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3.04.>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성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348호,2022.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부분 수정안 (교육부, 2021년)

구분	원안					수정안
초등고학년 (10쪽) 3. 성교육 표준안의내용 가. 초등학교 성교육 표준안 3) 활동내용	영역	주제	목표	내용요소	활동내용	활동내용
	사회와 문화	(3) 대중매 체와 성	인터넷의 편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터넷을 활용한 성 상품화와 성폭력 사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대비하며 대중매체 속에 나타난 불편한 광고를 바로잡아 잘못된 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다	SNS 편리성과 위험성	· SNS를 이용한 성폭력사례 · SNS를 이용한 성폭력 대처와 예방법	· SNS를 이용한 성폭력사례 · SNS를 이용한 성폭력 대처와 예방법 ·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중학교 (14쪽) 3. 성교육 표준안의내용 다. 중학교 성 교육표준안 3) 활동내용	영역	주제	목표	내용요소	활동내용	활동내용
	사회와 문화	(1) 폭력의 예방과 대처	성폭력의 의미와 문제점을 알고 성폭력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사례에 따른 대처방법을 익혀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능력을 기른다.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성폭력의의미 · 성폭력의실태와사례 · 성폭력의사례별대처방법	· 성폭력의의미 · 성폭력의실태와사례 · 성폭력의사례별대처방법
고등학교 (18쪽) 3. 성교육 표준안의내용 라. 고등학교 성교육표준안 3) 활동내용	영역	주제	목표	내용요소	활동내용	내용 요소
	사회와 문화	(2)성과 표현	성매매와 성 상품화의 실태 및 폐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성매매와 상품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예방법을 익혀 사례별 대처능력을 기르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	성매매와 성상품화 의 실태, 원인, 대처법	· 성매매와 성상품화의 실태 · 성매매, 성상품화의 폐해 · 성매매, 성상품화 원인에 따른 예방법 · 성매매, 성상품화 사례별 대처법	· 성매매와성상품화, 디지털성범죄의실태 · 성매매, 성상품화, 디지털성범죄의폐해 · 성매매, 성상품화, 디지털성범죄원인에따른 예방법 · 성매매, 성상품화, 디지털성범죄사례별대처법

※ 자료 출처: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운영 모형(예시)

구분	표준형(교과통합형)	전담형	초빙형	융합형(혼합형)
특징	관련교과 담당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성교육 실시 교과관련내용에맞춰시간 확보 교과관련성이 없는 시간은 창체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하고 보건 또는 관련 전문교사가 지도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성교육 실시 11학급 이하의 학교 규모에서만 활용이 가능함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성교육을 위한 시수를 배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보건교사와 외부강사가 실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운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형, 전담형, 초빙형을 학년단위로 선택적으로 구성
지도 교사	관련교과 담당교사 <관련교과> - 초등(저): 통합, 국어 - 초등(중): 도덕, 국어, 체육 - 초등(고): 도덕, 국어, 체육, 실과, 과학 - 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체육, 기술가정, 보건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보건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전담하여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담임교사의 보조적 역할	보건교사와 외부강사 초빙 - 외부의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에서 성교육 실시 - 보건교사와 기간제 교사 - 12학급 이상의 규모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2개월 이상) 운영하는 방법 - 학교의 규모와 예산상황 등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연장 채용 가능	관련교과 담당교사, 보건교사, 외부강사, 기간제 교사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인적자원
담당 시간 수	<학교급별 교과별 담당시수> - 초등(저): 통합(18), 국어(7) - 초등(중): 도덕(13), 국어(7), 체육(2) - 초등(고): 체육(5), 과학(1), 실과(7), 도덕(4), 국어(1) - 중학교: 기술가정(7), 도덕(3), 사회(2), 과학(3), 체육(2), 보건(8), 기타(5) - 고등학교: 보건(10), 생활과 윤리(13), 기술가정(7)	- 보건교사 1명이 담당 가능한 수업시간: 주당 5.5시간 × 30주 = 165시간 - 연간 배정된 15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1 학급까지 담당이 가능함	- 기간제교사 2개월 채용시: 주당 15시간 × 8주 = 120시간이므로 연간 15시간 확보를 기준으로 8학급까지 기간제 교사가 담당 가능 - 정규 보건교사 담당 시간: 11 학급까지 가능 - 이 유형을 활용할 경우 기간제 교사 한명 채용시 총 19 학급까지 운영이 가능함	학년단위로 가능한 시수 구성하여 운영 교과 담당교사, 보건교사, 외부강사, 기간제 교사 등 필요에 따라 운영 가능한 시수를 배정
장점	전 교직원들이 성교육에 동참하게 되어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교사들의 성교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증대됨 보건교사의 수업부담을 감소시켜 건강관리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음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성교육에 대한 계열성이 확보되어 체계적인 성교육이 가능함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함 체계적인 성교육 가능 보건교사의 수업부담이 감소되어 학생들의 건강관리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음	성교육을 위한 모든 구성원의 동참으로 성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산에 도움 성교육에 대한 지역인사의 참여로 지역사회와의 자원 활용과 연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음
단점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의 참여 문제 발생 교과별 지도시기의 차이로 성교육에 대한 계열성이 무너질 수 있음	보건교사에게 배당되는 수업이 가중되어 학생들의 건강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 학교 규모가 큰 대규모 학교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	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가치 도입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있음 성교육에 대한 주인의식의 결여

【참고자료 4】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시행 2023. 12. 22.] [경기도조례 제7845호, 2023. 12. 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약물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이란 각급학교에서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담은 모범교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내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자료 제공
4.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연구·개발·평가
5.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핵심사항 제시
2.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학생용 워크북 및 영상자료
4.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사 집중교육)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진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보건소, 지역사회 전문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7845호,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5】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7. 15.] [경기도조례 제6536호, 2020. 7.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5. “능동감시”란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상시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
3.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4.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예방교육 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및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
2. 심각(Red) 단계 : 교육감

제9조(감염병대책본부 구성 및 업무) ①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반 :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 상황 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
2. 감염병대책반 : 방역대책 수립·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
3. 학사지원반 :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

4. 행정지원반 : 방역물품 구입·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

5. 홍보지원반 :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

②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Blue) 단계 : 수동감시

2. 경계(Orange) 이상의 단계 : 능동감시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도내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집단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6】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1. 5. 20.] [경기도조례 제6981호, 2021. 5.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하 “당뇨병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학교의 장은 체계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4.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7】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1. 10. 6.] [경기도조례 제7162호, 2021. 10. 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희귀질환 학생”이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을 가진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생활 지원”이란 희귀질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귀질환 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희귀질환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 학생 지원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희귀질환 학생 실태조사

3. 희귀질환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계획 및 방법
4.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희귀질환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학교의 장은 희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학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희귀질환 학생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2. 희귀질환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3. 희귀질환 학생을 위한 필요 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공간 확보
4. 희귀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보건교사 등의 우선 배치 또는 추가 배치
6.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7. 희귀질환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
8. 그 밖에 교육감이 희귀질환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8】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0. 14.] [경기도조례 제8228호, 2024. 10.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중점사업”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강증진학교”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건강 문제를 진단·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말한다.
5.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치과검진비”란 치과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7.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8.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제5조에 따른 중점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점사업)

-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사항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눈건강 증진
 - 가. 찾아가는 학생 시력검진 및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
 - 나.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눈건강 교육 및 홍보 사항
 - 다.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 가. 초등학생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사항
 - 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초등학생 치과검진비 지원
 - 라.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 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
 - 나.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
 - 다. 측정 후 교정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및 협력체계구축
 - 라.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비만 예방교육 지원
 - 가.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
 - 나.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지원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5.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 6. 건강증진 교수·학습 연수지원 및 건강증진 정책연구
- 7.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건강증진학교 지정·운영)

-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경기도 및 시·군, 건강 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연수)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228호,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 1.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2.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
- 3.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4.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9】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4.] [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 2021. 11.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개정 2021.11.04.>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31.>

제3조(실태조사)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제2조의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4조(타당성 검토) 교육감은 제2조의 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

영역	시설과 기구 및 용품명	규 격	구분
1. 일반 시설 및 기구	1. 사무용 책상·의자		필수
	2.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시건장치 포함	//
	3. 약품 및 의료기구보관장	시건장치 포함	//
	4. 소독(멸균)기		//
	5. 냉장고, 전자레인지(온장고)		//
	6. 전화기(착발신)		//
	7. 컴퓨터, 프린터기		//
	8. 온·습도계		//
	9. 가습기		//
	10. 수도시설 및 세면대(싱크대)		//
	11. 냉·난방시설		//
	12. 순간온수기(온수설비)		//
	13. 물 끓이는 기구		//
	14. 보건게시판		//
	15. 페이퍼 타올 또는 핸드드라이어		//
	16. 세족기	샤워기 부착	권장
	17. 손전등		//
	18. 진공청소기		//
	19. 긴의자	3-4인용	//
	20. 공기청정기		//
	21. 문서파쇄기		//
2. 환자 안정용 기구	침대, 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파티션), 보온기구(전기요 등)		필수
3. 건강 진단 및 상담용 기구	1. 자동신장체중측정기		필수
	2. 전기시력표, 눈가리개, 검사용지시봉	3미터(또는 5미터)	//
	3. 혈압계	크기별 커프 구비(소,중,대)	//
	4. 청진기	전문가용	//
	5. 펜라이트		//
	6.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찰용 의자		//
	7. 혈당측정기		//
	8. 검이경		//
	9. 체온계(디지털고막체온계)		//
	10. 비접촉식체온계		권장
	11. 확대경		//
	12. 신장계, 체중계, 줄자		//
	13. 색각검사표		//
	14. 신체검사용 청력계(순음청력계)	헤드폰사용	//
	15. 검안경, 비경		//
	16. 치과용 거울, 탐침		//
4. 응급 처치용 기구	1. Dressing set(거즈/스폰지캔, 포셉 등)		필수
	2. Dressing Cart		//
	3. 의료용 가위(밴드시저), 농반		//
	4. 처치대(진찰대)		//
	5. 들것	접이용	//
	6. 부목	규격별	//
	7. 목발	규격별 또는 조절용	//
	8. 경추보호대	조절용	//
	9. 산소포화도측정기		//
	10. 휴대용 응급처치가방		//
	11. 혈체어	하지거상형	//

	12. 냉·온 찜질기		//
	13. 수동식인공호흡기(Ambu-Bag)		//
	14. 켈리		권장
	15. 적외선치료기		//
5. 환경위생 검사용 기구	조도계		권장
	2. 먼지측정기		//
	3. 소음계		//
6. 보건 교육용 기구	1. 성교육용 교구		필수
	2. 흡연예방교육용 도구		//
	3.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	피드백장치포함	//
	4.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
	5. 구강(치아) 모형		권장
	6. 기타 보건교육 교구		//
7. 기타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등		권장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4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가 아닌 교직원 등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
-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나목,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

<의약외품 예시>

-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 나.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 다.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 라. 구취 등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액취 방지제, 땀띠·깃무름용제, 치약제)
- 마.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작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사.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 아. 연고제, 스프레이 파스 등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하여 보관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 보관기관 준수 등 관리 철저)

<주요 중점 관리사항>

-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 용기나 포장에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참고자료 11】 학교 내 평상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대응체계(예시)

단 계		상 황	주 요 활 동
예 방		학교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수립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조직 구성 -예방접종관리
대 응	1단계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의 발견 및 확인 단계)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보건교사에게 연락 -마스크 착용 필요한 감염병 여부 확인 -보건실로 감염병(의심)환자 이동 -감염병여부 확인(의심증상/진료여부/질환명) -일시적 관찰(격리) 필요성 판단 및 이동 -학부모에게 연락, 의료기관 진료 요청 -교실 환기 및 소독 -학생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일시적 관찰실 환기 및 소독
	2단계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의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의심)환자 존재	-나이스 감염병 발생현황 보고(필요시 보건소신고) -능동감시 실시 및 협조 -해당 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자료 준비, 교육 실시 -감염병 (의심)환자가 속한 학급 관리
	3단계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의 유행시 대응활동을 통해 유행 확산을 방지하는 단계)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유행의심 여부 확인 -학생감염병 관리조직 활성화 -나이스 감염병 발생현황 보고 -수동 또는 능동감시체계 강화 -환자 및 유증상자 관리 -밀접접촉자 파악 및 관리 -고위험군 파악 및 관리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방역물품 확보 및 방역실시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필요시 방역당국 역학조사 지원
복 구		유행 종결 및 복구	-유행종료 판단 및 보고 -수업결손 보충 -심리지원

※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초중고·특수학교용)』 (제3차 개정판) 매뉴얼 참조,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는 국가위기 단계별 대응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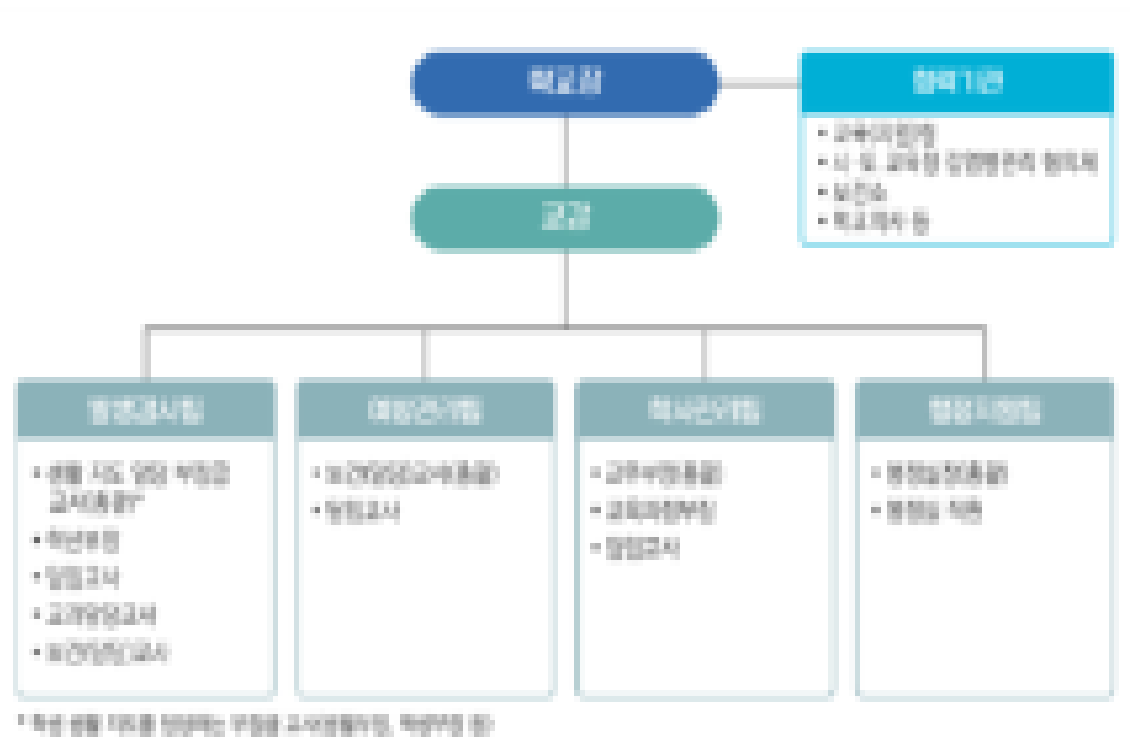
【참고자료 12】 국가위기경보수준에 따른 학교의 대응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감염병(신종-재출현) 감염병	
심각 (Red)	해외에서부터 신종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재발차 단파	-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자각을 위한 예방활동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에 재발차 단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에 대해 사회적 전파	- 교육연속성계획(ED-CP) 수립 - 환자 발생 현황 파악 - 환자 발생 시 대응 - 위기소통채널 운영 - 각종 행사 연기 또는 취소 검토
심지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에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에 전국적 확산	- 교육연속성계획(ED-CP) 내 '학교 비상대응체계 조직' 숙지 - 환자 발생 현황 파악 및 보고 - 환자 발생 시 대응 - 휴업 및 휴교 검토 - 위기소통채널 강화

[출처: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초·중·고·특수)』, 70페이지]

【참고자료 13】 학교 내 평상시 대응 제3단계서부터 「학교감염병관리조직」 구성(예시)

-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은 학교 실정에 맞게 사전에 조직하며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도록 함.
- 아래 모형에서 제시한 역할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출처: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초·중·고·특수)」, 13페이지]

【참고자료 14】 국가위기경보수준 심각 단계 시 「표준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예시)

- 학교 내 ‘감염병 담당자’ 를 복수로 지정,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감염병예방활동 총괄
 - ※ 임신부, 기저질환자, 고령자(만 65세) 등 고위험군은 담당자에서 제외
- 일부 교직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은 팀·개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할 것
 - ※ 이 모형에서 제시한 학교 내 조직구성, 팀명칭, 구성원 역할 등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출처: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초·중·고·특수), 82페이지』]

【참고자료 15】 법정감염병 유형 및 종류

구분	1급 (17종)	2급 (21종)	3급 (28종)	4급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또는치명률이 높거나집단발생우려가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같은높은 수준의 격리가필요한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격리가필요한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또는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는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외에유행여부를조사하기 위하여표본감시활동이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하. 중등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버. 카피페람내성장내세균속군목 (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찻찻가무시증 카. 렘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Dengue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쳐.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 허. 엡폭스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편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첨규콘딜롬 하.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VRE) 감염증 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너.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더.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러. 장관감염증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버.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2025.1.1.]

출처: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신고

【참고자료 16】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교육지원청 대응조직 및 역할



[출처: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초·중·고·특수), 141페이지]

- 운영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경계’ 발령 시
 -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시 비상대책반 확대 운영(대책반장: 교육지원국장 → 교육장)
- 보건당국 핫라인: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및 감염병 유행 시 관내 보건소와 핫라인 구축하여 긴밀한 협조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 1차 역학조사 회의 직후 최초보고하며, 추구검사(TST, IGRA,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한 후 중간보고, 역학조사 종결시 최종보고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법정 비법정 구분 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청(동시보고)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 생 수	교 직 원 수	학 교	교육지원청	교 육 청	
○○학교(국·공·사립)	○○시·군·구			고아라 (031.234.5678)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감염병명	지표환자(최초발견환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수)	발견경로		
결핵(예시)	1	학생	2-1(1)	별도검사	`25.1.3	`25.1.3
백일해(예시)	30	학생	1-1(10) 1-3(20)	개인진료	`25.1.3/`20.1.11	`25.1.11
결핵(예시)	1	교사(담임)	2-3(1)	건강검진	`25.2.21	`25.2.21
수두(예시)	1	교사(음악담당)	3학년(1)	개인진료	`25.2.25	`25.2.25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중간/최종)	역학조사 대상자 현황				조사결과	다음 역학조사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대상인원	검사인원			
'20.3.10	최초(예시)	학생	2-1, 3학년	300	297	결핵:0명	'25.4.12	-3.10 역학조사 회의 -3.12 1차 흉부X선촬영 -흉부촬영 미 실시한 학생 3명, 교사 1명 보건소 방문 검사 예정 -4.12 학생 TST, 교사 IGRA 예정
		교사	담임, 교과 전담교사	10	9	결핵(의심):1명		
'20.4.12	중간(예시)	학생	2-1, 3학년	300	300	결핵:0명 잠복결핵:12명	'25.6.15	-5월 3주차:2차 흉부X선촬영 예정 -잠복결핵 감염 양성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 추구 검사 및 치료 여부 결정 예정
		교사	담임, 교과 전담교사	10	10	결핵(의심):1명 잠복결핵:0명		
'20.6.15	최종(예시)	학생	2-1, 3학년	300	300	결핵:0명	종료	-결핵의심은 과거 흔적으로 확인
		교사	담임, 교과 전담교사	10	10	결핵:0명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적

1. 감염병예방 모의훈련 일지 (* 자체보관)

일반 사항	일자	20 . .		시간	~	
	장소			주관		
참석자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훈련 상황						
훈련 내용						
보완 사항						

※ 모의훈련은 연 1회 이상 가상 또는 실제 훈련 방식으로 실시, 훈련 결과를 내부결재로 유지
 재난대응한국안전훈련 기간에 실시한 실적 포함하여 작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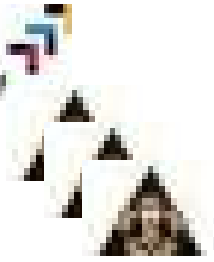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담당 : 황정윤

2026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지초등학교

<https://suji-e.goeyi.kr/suji-e/main.do>



2026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지초등학교

1. 목적

- 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 학령기 학생 성장 평가 및 학생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기초자료 마련

2. 근거

- 가.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령, 2021.6.30.시행)
- 다.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교육부 고시, 2022.12.26. 일부개정)
- 라.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호, 2025.1.10.시행)
- 마. 「2025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393(2025.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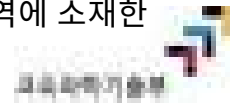
3. 학생 건강검진

가. 건강검진 실시 방법

1) 건강검진 절차 등

- 가) 학교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다만 제안서 미비 등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 ([교육지원청](#))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학교건강검사규칙 참조)

나)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단,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1개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 가능)



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4항 1~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중 부득이하게 1개의 검진기관 선정 또는 출장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 완화 승인기준 [서식 3호]를 참고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 후 검진 실시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24호 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2023.8.7.시행)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 면, 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불필요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불필요

3.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교육공동체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의·자문 등)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필요

라) 검진기관은 문진표(규칙 [별지 서식 1의2, 1의3, 1의4] 양식)를 검진대상자에게 작성·제출하게 한 후,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

마)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2) 검진기관 선정과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선정기준

(1)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 중 시설·설비, 인력과 전산처리능력 등을 확인하여 정확성, 편리성을 갖춘 기관 선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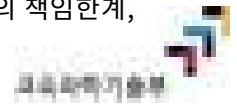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 별표 4, 별표 5와 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 선정

※ 검진기관 검색: 건강 IN(<http://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 정보-검진기관 찾기]

나) 계약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계약

(2) 검진준비, 검진항목, 검진비용부담, 검진결과 처리방법 등 검진실시에 따른 의료사고의 책임한계, 손해배상 이행등 명기



(3) 학생 건강검진 시 필요한 계약 서류의 간소화로 검진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민원 해소

4. 세부방침

가. 학생 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장 검진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나. 건강검사 결과 질병 또는 건강 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상담·치료와 보호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5. 세부 추진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실시내용(2025년 보건복지부 시 수가 기준)

검사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일정	실시방법
건강검진	초1,4 (건강검진)		2026년 6월	•출장 검진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함 •비용: 1인당 10,510~30,660원 *학년별 검사항목 및 비만여부에 따라 검사비용 다름
	초2,3,5,6 (구강검진)		2026년 6월	•출장 검진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함 •비용: 1인당 8,170원
별도검사	초2,3,5,6 (시력검사)	담임교사 보건교사	2026년 5월	•실시, 미실시 여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 •외부전문인력(기관) 위탁 등 •공인시력표를 활용하여 좌, 우안 각각 측정
	초2,3,5,6 (소변검사)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지부	2026년	•학교출장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함 •비용: 1인당 920원
신체발달상 황	초1,4		2026년 5월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체질량지수)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초2,3,5,6	담임교사 보건교사	2026년 5월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함 •1학기 말까지 실시, NEIS입력/보고 *건강검진 대상학년의 경우 검진계약기간과 측정기한이 다르면 학교별 자체 측정해야 함
건강조사	초1,4	보건교사 담임교사	- 신입생 및 재학생(3월초) - 전입생(수시) - 검진대상자(문진표제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행태 등 학교별 건강조사 실시 •1학기 말까지 실시
	초2,3,5,6			

※ 시력검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다만, 학교 교육공동체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

나. 학생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세부일정

검진대상	검진항목	검진일정	검진기관	검진항목	검진장소
------	------	------	------	------	------

1,2,3,5,6 학년	구강검진	2026년 4월		구강검진 (치아 및 구강상태) - 미검진자는 추가 출장검진 실시 <공통 항목> - 건강검진 상담 및 진찰 - 척추형태(척추측만증검사)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목병, 피부병 - 신장, 체중, 비만도(BMI) - 허리둘레(비만학생에 한함) - 혈압측정 - 소변검사(요단백, 요잠혈) <4학년 비만아동> - 혈액검사 혈당, 간세포효소(AST, ALT)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	각 학급 복도
1학년	건강검진	2026년 6월			체육관
4학년	건강검진	2026년 6월			

다. 4학년 구강검진은 경기도청 「**2025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참여기관에서 검진 가능

- 1) 대상: 도내 초4학년 학생 전체(특수,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 포함)
- 2) 예산: 학생 1인당 48,000원(도청 예산 100% 지원)
- 3) 구강검진 서비스: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포함

6. 건강검진 비용: 학교 회계에서 지출

가. 근거: 2025년도 보건복지부 고시(2025.1.10.) 「건강검진 실시기준」 수가 적용

나. 학년별 1인당 검진비용(※ **2025학년도 기준**)

학년	1학년 (18,680)	4학년		2,3,5,6학년
		정상(10,510)	비만(30,660)	구강검진
검사비 (단위:원)	검진비: 10,510 구강: 8,170	검진: 10,510 (구강검진제외)	검진: 10,510 혈액검사: 20,150 (구강검진제외)	8,170

※ **비만** : 초 4학년 이상,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95이상 학생에 한하여 검사항목 추가

(허리둘레, HDL/LDL Cholesterol, 중성지방 항목 추가)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7. 결과처리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가. 학생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나.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보건교육 실시

다.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보건교육 실시

라. 출장검진 시 검사 결과지 배부

- 1) 검진기관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규칙 서식 1의5),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규칙 서식 1의6)를 각각 작성하여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학교로 일괄 통보
- 2)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진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조기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즉시 통보
- 3) 학생의 인적사항과 검진결과 등은 철저히 개인 비밀보장

마. 나이스 건강기록부 관리 및 사후관리

- 1) 검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NEIS)에 기록,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검진 통계표를 작성,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
- 2) 건강검진 실시 대상이 아닌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 (신체발달상황, 별도의 검사 등)도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
- 3) 검진기관이 통보한 건강검사 결과 원본은 최소 당해년도 보존 후 폐기하며 단, 학교장이 건강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리를 판단한 경우(요양호자 등) 필요시 보관 가능하고, 학생 전출 시 이관되지 않음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관리지침」 제14조 참고)
- 4)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진, 조기치료 등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추가 검사 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5)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상담 활동 등 지도대책 강구

6) 건강검진 대상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장기결석자, 전입생 등)로 건강검진 미실시한 경우,

다음 학년도에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조치

바. 건강검진 기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차후 건강검진에 반영

아.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보고(2025. 8. 14. 나이스)

자.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보고(2025. 12. 5. 자료집계)

8. 구강검진 및 건강검진 시 방역 계획

가. 체육관, 교실, 복도 환기 및 소독 : 창문 및 문 개방 후 실시

나. 거리두기 준수 : 충분한 거리두기 확보

[서식 1]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엑셀서식보고

기관명 : 교육지원청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초	1							
초	4							
중	1							
고	1							
각종(중)	1							
특수	필요시 행 추가							

- 분교는 본교에 포함하여 작성, 필요시 행 추가, 각종학교는 서울삼육중학교, 계원예술중학교만 해당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2							
3							
5							
6							

- 분교는 본교에 포함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시 특수학교는 미실시, 필요시 행 추가

3. 별도검사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요단백 양성인원	요잠혈 양성인원	요단백및 모두양성인원	검진기관	전체 인원	검사 인원	비용
초	2							학교보건협회0교 ()0교			
초	3							//			
초	5							//			
초	6							//			
중	2							//			
중	3							//			
각종(중)	2							//			
각종(중)	3							//			
고	2							//			
고	3							//			

- 특수학교 미실시, 필요시 행 추가, 각종학교는 서울삼육중학교, 계원예술중학교만 해당

○ 결핵검사

학교급	학년	전체인원	검사인원	결핵확진 학생수*	소요비용	검진기관
						결핵협회 00교, ()00교

[서식 2]

*나이스 보고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년 도 ☐ 초 ☐ 중 ☐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분 류	성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저체중 (%)	남자												
		여자												
	정 상 (%)	남자												
		여자												
	과체중 (%)	남자												
		여자												
	비 만 (%)	남자												
여자														
검사인원수 (명)	남자													
	여자													
	계													

※ 작성방법

-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별로 1학기말까지 측정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 키 · 몸무게 평균은 성별 · 학년별 수검자의 키 · 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 비만율은 성별 · 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 · 정상 · 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에는 해당 성별 · 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학생 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요청서



학 교 명		교육과학기술부		
검진대상학급수		대상학생수		
소재지	도로명 주소	담당자명		
	지번 주소	직통 전화번호		
구 분		요 청 내 용	요 청 사 유	
1개 검진기관 선정 (방문검진기관)		의과검진기관 선정 ()	1개 검진기관만 참여 ()	
		구강검진기관 선정 (√)	검진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기타 사유 (√)	
출장검진기관 선정 (1개 검진기관 선정)		의과검진기관 선정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구강검진기관 선정 (√)	검진대상 학년이 기숙사 생활 () 기타 사유 (√)	

***요청내용과 사유에 해당항목에 각각 √ 표 기입**

☞ 승인가준을 확인하여 기타 요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기입

1개 검진기관 선정	- 완화승인요청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예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 면, 동)에 학생 의과검진기관 2개, 치과검진기관 3개가 있으나, 확인해본 결과 의과검진기관 2개는 미참여, 치과검진기관 2곳은 미참여하여 의과검진기관은 출장검진은 요청하고, 치과검진기관은 1개기관 요청함.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등
출장검진기관 선정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완화 요청은 기준에서 제외됨.

-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완화 승인기준

구 분	승 인 기 준
1개 검진기관 선정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 면, 동을 말한다)에서 1개의 검진기관만 학생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학교 2. 검진대상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3.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4.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출장검진기관 선정	1.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2. 검진대상 학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3.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건강검진선정 완화승인 제외 대상 (승인 요청서 제출 불필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할 수 있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승인요청서 제출(→교육장이 승인) 후 1개 기관 검진 또는 출장검진 실시

※ 지역내 학교 소재지가 같거나 인근에 있는 학교(병설교, 통합학교, 동일 법인학교 등)가 완화승인 요청 시 학교(급)별 지역 상황이 다르게 조사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 지역의 의료기관(검진기관)실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판단

[참고자료 1]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식(안)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예시문(안)

☐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 진 대 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 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과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과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와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2]

2025년 건강검진 항목별 고시수가



(보건복지부, 2025.1.10. 단위: 원)

순위	검 사 항 목	2024년 수가	2025년 수가	증 감
1	1차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척추측만증검사, 허리둘레(비만)포함	9,170	9,590	420
2	흉부방사선 직촬(14*14")	9,520	9,560	40
3	흉부방사선 직촬(14*17")	9,840	9,880	40
4	흉부방사선 CR/DR	8,130	8,170	40
5	흉부방사선 Full PACS	9,080	9,120	40
6	요검사(요단백,요감혈)	920	920	0
7	혈액검사(혈색소)	1,240	1,250	10
8	혈액검사(공복혈당)	1,580	1,590	10
9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	1,880	1,890	10
10	혈액검사(AST)	2,270	2,280	10
11	혈액검사(ALT)	2,220	2,230	10
12	혈액검사(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7,610	7,650	40
13	혈액검사(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7,640	7,680	40
14	혈액검사(중성지방)	4,490	4,510	20
15	(구강검진)상담료 및 행정비용	8,120	8,170	50
* 비만학생에 한하여 대사증후군 검사(허리둘레, 중성지방, HDL-Chol, LDL-Chol)추가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 (검진비용 제외)				



[참고자료 3]

2025년 학생 건강검진 단가표

(보건복지부 고시 2025.1.10.)

검 사 항 목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1학년	4학년		정상	비만	남학생		여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정상	비만
1.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진찰및상담											
-척추형태(척추측만증검사)											
-눈(시력, 안질환)											
-귀(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신장, 체중, 비만도(BMI)											
-허리둘레(비만학생에만함)											
-혈압측정											
-결과통보등											
2. 구강검진(차아및구강상태)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3. 요검사(요단백, 요잠혈)			920	920	920	920	920	920	920	920	
4. 혈액검사			미 실시	미 실시	20,150	미 실시	20,150	미 실시	20,150	미 실시	20,150
-비만											
:혈당,AST,ALT,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계산값)											
-고1(여):혈색소										1,250	1,250
6. 결핵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촬영, 판독, 재료대 포함	직촬	14"×14"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9,560	9,560	9,560	9,560	9,560	9,560
		14"×17"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9,880	9,880	9,880	9,880	9,880	9,880
	CRorDR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FullPACS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9,120	9,120	9,120	9,120	9,120	9,120
금액합계	14"×14"		18,680	18,680	38,830	28,240	48,390	28,240	48,390	29,490	49,640
	14"×17"					28,560	48,710	28,560	48,710	29,810	49,960
	CRorDR					26,850	47,000	26,850	47,000	28,100	48,250
	FullPACS					27,800	47,950	27,800	47,950	29,050	49,200

* 초4학년 구강검진은 경기도청 주관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 가능(학생건강검진 비용 제외)

* 혈액검사(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 및 간
세포효소(AST,ALT)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단, 중성지방 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검사(검사비용: 7,680원)

* 비만: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이상인 경우

* 중, 고등학교 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 금액임

*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구강, 혈액검사 비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자료 4] 2024~202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건강조사표(초등학교용)

건강조사표 (초등학교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라면	①먹지 않음	②1~2번	③3~5번	④매일 먹음
음료수	①먹지 않음	②1~2번	③3~5번	④매일 먹음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①먹지 않음	②1~2번	③3~5번	④매일 먹음
육류(소, 돼지, 닭고기 등)	①먹지 않음	②1~2번	③3~5번	④매일 먹음
우유, 유제품	①먹지 않음	②1~2번	③3~5번	④매일 먹음
과일	①먹지 않음	②1~2번	③3~5번	④매일 먹음
채소(김치 제외)	①먹지 않음	②1~2번	③3~5번	④매일 먹음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수면 및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니까?	예	아니오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아니오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아니오
개인위생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예	아니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예	아니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스케이트보드 또는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착용한다.	예	아니오
TV·인터넷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예	아니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예	아니오
가정 및 학교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다.	예	아니오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예	아니오
	우리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예	아니오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예	아니오
약물	위의 문제로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정서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	아니오
부모님란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예	아니오
	귀하의 자녀가 만 5세 이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뛰어다니거나 말을 많이 하니까? (1학년만)	예	아니오
	귀하의 자녀는 주의력이 없고 주의가 산만하니까?(1학년만)	예	아니오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꿈을 향해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삶, 미래 ^{high+} 수지교육	● 수지구 정평로 13번길 ● 교무실 031) 262-0055 ● 행정실 031) 262-2498 ● 팩 스 031) 262-4479 ● http://www.suji.es.kr
	가정통신문	

제목: 2026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실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항목」에 따라 초등학생은 매년 학생 건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교는 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생건강검진 실시기관 완화 승인을 받은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진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하는 출장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년별로 검진 날짜, 검사 항목, 사전 준비사항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검진 일정

검진종류	검진날짜	대상학년
구강검진		1, 2, 3, 5, 6 학년
건강검진		4학년
		1학년

2. 검진 안내

구강검진	검진대상	1, 2, 3, 5, 6학년 ※ 4학년 구강검진은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대체
	검진기관	
	검진항목	구강위생상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검진비용	무료(학교 예산으로 지급)
	준비사항	0월 00일() 학생 편에 구강검진 문진표 배부 ★구강검진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여 0월 00일(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검진방법	출장검진(의료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검진), 결석생 추가 출장검진(추후 재안내 예정)
건강검진	검진대상	1, 4학년
	검진기관	
	검진항목	- 진찰 및 상담, 키, 몸무게, 비만도, 시력검사, 척추형태, 청력검사, 혈압, 소변검사(요단백, 요잠혈) ★혈액검사: 4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만 해당 혈당, 간세포효소(AST, ALT),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
	검진비용	무료(학교 예산으로 지급) ★ 4학년 학생 중 검진 당일 비만 판정받은 학생은 혈액검사를 추가로 실시 0월 00일 추가 출장검진 당일 아침 금식 후 등교 (8시간 이상 금식 필요)
	주의사항 및 준비사항	- 혈액 검사 대상자 중, 금식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별히 혈액검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담임 선생님께 미리 알리기 - 건강검사기록지: 앞면, 뒷면 파란색 테두리 부분 모두 작성 0월 00일(0) 학생 편에 문진표 배부, 0월 00일(0)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검진방법	- 출장검진(의료기관이 학교로 방문하여 검진), 결석생 추가 출장검진(추후 재안내 예정) - 추가 출장검진 당일 결석생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개별 방문하여 검진 실시

2026...

수 지 초 등 학 교 장

	꿈을 향해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삶, 미래 ^{high+} 수지교육	● 수지구 정평로 13번길 ● 교무실 031) 262-0055 ● 행정실 031) 262-2498 ● 팩 스 031) 262-4479 ● http://www.suji.es.kr
	가정통신문	

제목: 2026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만족도 조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본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정한 병원에서 출장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설문은 검진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2027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통한 건강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조사 대상

-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 1, 4학년 학생 보호자
- 구강검진 만족도 조사 : 1, 2, 3, 5, 6학년 학생 보호자
- ※ 4학년은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으로 제외

2. 조사 방법 : 이알리미 설문조사 참여

3. 조사 기간 : 2026년 12월 00일(0)~12월 00일(0)

4. 조사 문항

▶ 00000의원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1, 4학년)

검진일정 : 1학년 2026년 0월 00일(), 4학년 2026년 0월 00일(0)

추가검진 : 2026년 0월 0일(0)

구분	내용	검진 만족도		
1	1. 건강검진 진행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	보통	불만족
2	2. 건강검진 방법(출장검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	보통	불만족
3	3.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불만족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00치과의원 구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1, 2, 3, 5, 6학년)

검진일정 : 2026년 0월 00일(), 추가검진 2026년 0월 00일()

구분	내용	검진 만족도		
1	1. 구강검진 진행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	보통	불만족
2	2. 구강검진 방법(출장검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	보통	불만족
3	3. 구강검진과 관련하여 불만족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026. .

수 지 초 등 학 교 장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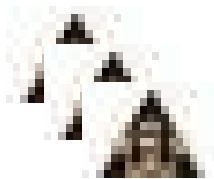
담당 : 김선영

2026학년도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계획



수지초등학교

<https://suji-e.goeyi.kr/suji-e/main.do>



2026학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계획

I

목적

1. 교직원 및 학교 종사자의 결핵검진 등(잠복결핵검진 포함)을 통해 학교 내 결핵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한다.

II

근거

1.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 등에 관한 사항”
2.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부칙
3. 동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8101(2022.7.14.) 및 평생교육건강과-2890(2023.2.24.)
5. 2026년 국가결핵관리 지침

III

세부 추진 계획

구 분	결핵검진 (흉부X-선 검사)	잠복결핵검진 (혈액검사)
근거법령	제11조(결핵검진 등) 학교의장, 유치원의장은 기관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항 제1호, 제2호 - 결핵검진 : 매년 실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검진은 1개월 이내 실시) - 잠복결핵검진 : 재직 기간 중 1회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검진 대상	「결핵예방법 11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 교직원 :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행정직원 (교육감소속근로자 등 포함) - 종사자 : 교직원 외에 강사, 대체 시간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방역인력 등 학교장의 감독하에 있는 종사자	지휘·
검진 제외자	- 당해년도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 - 급식실 종사자(6개월에 1회 검진)	- ①과거 결핵 치료경력자 - ②과거 잠복결핵검사를 받은 경우 ※ 다만, ①② 해당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 불가시 검진대상
검진 주기	- 매년 1회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당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으로 같음 - 신규채용 교직원 및 종사자: 채용·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의 신체검사로 같음) ※ 해당(채용)업무 담당자가 확인·관리 ※ 6개월 이상 휴직·파견: 복직 시 검진대상	- 재직 기간 중 1회 근무지 변경 시 다시 검사받지 않아도 됨 - `22.7.1.이전 채용자(교직원·종사자) ※ ~2023.6.30.까지 실시(휴직자 포함 실시) - ‘22.7.1.이후 채용자(교직원·종사자) 채용·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용서류에 검진확인서 첨부) ※ 해당(채용)업무 담당자가 확인·관리
검진 항목	- 흉부 X-ray (임산부는 객담검사 가능)	- 혈액검사 (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IGRA)
검진 비용	- 학교회계에서 일괄 지출 1인당 1만원 이내 지원	- 학교회계에서 일괄 지출 1인당 5만원 지원
검진 방법	- 6개월 이상 휴직 후 복직한 경우 검진기간 : 1개월 이내 검진기관 : 러스크병원, 개별 방문 - 그 외대상자검진일정 : 2026년 10월 00일(0) 검진기관 : 대한결핵협회(학교 출장검진) 검진장소 : 1층 시청각실	- 신규채용자 검진기간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진기관 : 러스크병원, 개별 방문 검진비용 : 5만원(학교예산에서 지원)
비고	- 검진 후 결핵(의심) 등 결과 통보 시 - 반드시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함	※ 잠복결핵감염검진결과양성 인 경우,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아 결핵을 전염시키지 않는 바, 출근·근무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므로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취업거부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의장이 처벌 받을 수 있음

2026년 결핵예방 교직원 연수자료

수지초등학교

1 결핵이란?

결핵(tuberculosis, TB)은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결핵균은 다른 세균들과는 달리 자연계에서는 살 수 없고 사람의 몸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를 통해 감염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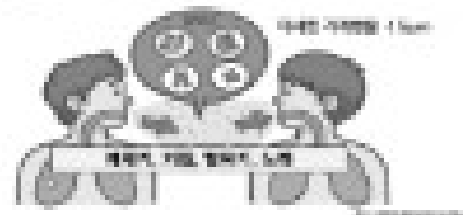
2 결핵의 전염

결핵은 공기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결핵 환자가 재채기, 기침, 말하기, 노래 시 미세한 침방울로 배출되어 주위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 폐로 들어가서 감염됩니다.

(예: 결핵 환자와 5분 대화나 재채기 한 번에 약 3,500개의 결핵균 배출)

공기 중으로 누구나 결핵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결핵의 증상은?, 언제 검사받아야 할까?

결핵의 증상은 무엇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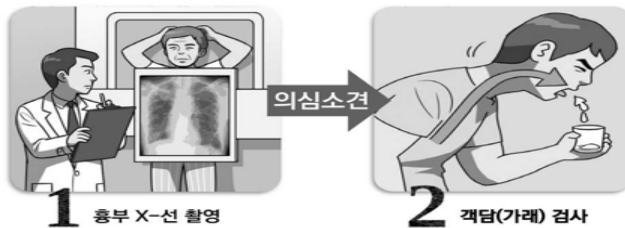
어떨 때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 미열, 피로감, 체중감소, 호흡곤란, 흉통,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 가족이 결핵 환자로 진단받았을 때
- 전염성 결핵환자와 같이 지낸 시간이 많았을 때
- 산체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스럽다고 할 때



4 결핵의 검사와 진단, 치료

결핵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5 결핵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식생활
 - 체력 증진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생활
 - 야외 활동 권장
 - 흡연예방 및 금연 운동 강화
 - PC방 등 폐쇄된 공간 출입 자제
 - 기침예절 지키기
 - 2주 이상 기침 하면 결핵을 의심하여 검사받기 (결핵 환자와 접촉했다면 검사받기)
 - 매시간 환기 및 청소 철저 (특히 냉난방기 사용 시 환기 철저)
- (자료출처: 결핵연구원)

6 잠복결핵이란?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발병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
즉, 휴면(잠자고 있는) 중인 결핵균을 몸 속에 갖고 있음



잠복결핵감염이란?



7 잠복결핵 어떻게 진단하나요?

잠복결핵감염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투베르쿨린 검사(TST):
피내주사
48~72시간 사이에 경결의 크기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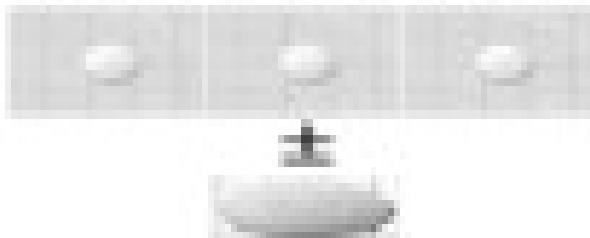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IGRA):
혈액 검사
결핵균에 반응하여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인터페론을 측정

8 잠복결핵, 어떻게 발병 예방하나요?

잠복결핵감염인데 어떻게 발병을 예방할 수 있나요?

잠복결핵감염치료 (예방의학치료)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리팜피신 3~4개월

9 결핵 전파를 막으려면?

결핵균 전파를 막으려면 ?



기침예절



환기

공기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기침 예절'과 '환기'가 도움이 됩니다.

QUIZ !

-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 결핵 환자가 사용한 식기류는 소독해야 한다?
- 결핵의 증상에는 기침, 가래, 체중감소가 있다?
- 결핵은 치료 끝날 때까지 전염성이 있다?
- 잠복결핵감염자도 격리해야 한다?
-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가 필요 없다?

O
X
O
X
X
X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 (<https://eduknta.or.kr>) 링크 접속-①[회원가입]-②로그인-<교육기관을 위한 결핵 예방교육>(30분)

결핵예방법령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Q **A** 1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결핵예방법 제11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Q **A**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종사 기간 중 1회(매년 검진 대상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검진 실시·관리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검진 목적(결핵 발생의 사전 예방)에 따라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결핵 검진과 함께 조기(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적절한 결핵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Q **A**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설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이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기존 종사자·교직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다만, 신규채용자 중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7.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Q **A** 4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 검진 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Q **A**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결핵·잠복결핵)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문진과 진찰로 갈음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
- (참고) 결핵 진료지침(4판, 2020) :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IGRA)는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Q A 6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가 면역학적 검사를 문진과 진찰로 같음한다면 어떻게 검진 실시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이전 치료·검진 관련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면역학적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임을 주치의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라면 어떤 형태로든 증빙 가능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함

Q A 7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 결핵·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는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결핵바로알기, FAQ”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대표 자료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등

Q A 8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받을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Q A

9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 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지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 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관련

Q A 1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 (결핵예방법 제34조제2항)
- 따라서,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

Q A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에서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기관·학교*의 장 등을 말함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Q A 3 과태료 부과는 기관 단위로 부과하는 것인가요?

- 결핵 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관·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

Q A 4 검진대상자가 매년 실시해야하는 검진(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

-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예를 들어, 금년 2월 점검시 종사자·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검진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 점검 시 전체 종사자·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Q A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핵검진 홍보물



OECD 회원국 중 결핵발생률 1위,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약 34만명도 1명씩, 결핵환자 발생 (2019년 결핵 신규환자 - 34,821명)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 1 결핵환자와 접촉한다면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결핵검진을 받으세요.
-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병관리청 답변서

구 분	질 의 사 항(경기도교육청)	검 토 의 건(질병관리청)									
1	신규채용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채용기준일에따라 상이합니다. 2022.7.1. 이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은 2023.6.30.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2022.7.1. 이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table><tr><td>채용일</td><td>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한</td></tr><tr><td>'22.7.1. 이전</td><td>~23.6.30.</td></tr><tr><td>'22.7.1. 이후</td><td>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td></tr></table> 다만, 2022.12.31.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완료해야하는 대상자는 2022.7.1. 이전에 신규채용된 「결핵예방법」 제4조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간호하는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관련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채용일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한	'22.7.1. 이전	~23.6.30.	'22.7.1. 이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용일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한										
'22.7.1. 이전	~23.6.30.										
'22.7.1. 이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2022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으면 결핵검진(흉부 X-ray)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목적과 검사방법이 상이한 다른 검사입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였더라도 결핵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검사를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table><tr><td>구 분</td><td>결핵검진</td><td>잠복결핵감염검진</td></tr><tr><td>목적</td><td>활동성 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td><td>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td></tr><tr><td>검사방법</td><td>흉부X선검사, 객담검사</td><td>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d></tr></table>	구 분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목적	활동성 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검사방법	흉부X선검사, 객담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구 분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목적	활동성 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검사방법	흉부X선검사, 객담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3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하는 교직원·종사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은 기관내 모든 종사자를 의미하며, 고용 형태(직접고용 또는 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학교장의지휘·감독하에있는파견, 용역등의종사자도 포함입니다. 참고로, 종사자의 근무시간 및 기간과 무관하게 신규 채용된 경우는 근로계약서상 근무개시일(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4	6개월 이상 휴직한 교사가 2022년 9월 1일자 복직 예정입니다. 검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학교에서 6개월 이상 휴직하다가 A학교 또는 B학교로 복직한 경우 결핵검진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분이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적이 없다면 2023.6.30.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5	2022.3.1.~8.31. 계약기간인 기간제교사가 9.1.부터 재계약하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고 1개월 이내 검사받아야 할까요?	동일 학교에서 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갱신하는 방법 등을 통해 퇴직 처리없이 고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존 종사자에 해당하며,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2023.6.30.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 등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어 채용된 경우, 신규채용자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초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6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검진대상의 증빙서류(검사확인서)를 수합하여야 하나요?	검진대상의 개별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 검진자정보, 검진명, 검진기관, 검진일 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면 됩니다.
7	2022.3.1.~23.2.28.까지 계약된 외부강사의 경우 계약 만료 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2022.7.1. 이전 소속된 종사자·교직원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2023.6.30.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7.1. 이전부터 소속된 종사자가 2023.6.30.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 예정인 경우, 결핵 예방 차원에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신규채용 시 실시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항목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추가할 수 있나요?	교직원 채용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바 해당 부처의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후 보고서항이 따로 있나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는 학교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검진 실시 이후에 검진 보고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34조에 따라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보건교사가 임용 전 의료기관 근무 중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았는데 임용 전 검사도 같음할 수 있나요?	같음 가능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학교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같음 가능하며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의료기관 근무 시 결핵환자 간호를 1년 이상 담당하고 학교로 입사하는 경우 의료기관 퇴사 이후 1년간 잠복결핵감염 검진 1회 실시를 권고합니다(의료기관 결핵관리안내* (3차 개정판)). ** 다운로드 경로 : 결핵 ZERO 누리집 > 지침 > 관리지침

		※ 관련근거 : 「2022 국가결핵관리지침」(’22.8월, 일부개정), XI. 부록 - 제5절. 자주 묻는 질문
11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의무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가 아닌데 해당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잠복결핵감염 검진 포함)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진 여부 입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인사이동으로 소속 학교가 변경된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고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 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이 아니며 기존 종사자·교직원의 검진횟수·주기와 동일합니다. 결핵검진의 경우, 같은 해에 검진을 받고 다른 학교로 이동한 경우는 재검사 할 필요 없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7.1. 이전 소속된 종사자·교직원은 2023.6.30.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사이동 전에 학교의 자체 채용건강검진으로 실시하였거나, 같은법제11조제1항의기관·학교에서 실시한 이력이 있다면 갈음 가능합니다(이 경우 현재 별도 정해진 기간 없음).
13	신규채용자가 채용 전 개인적인 검진으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 경우 갈음할 수 있나요? 갈음된다면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결핵검진의 경우, 신규채용 전에 학교의 자체 채용건강검진이나 개인적인 결핵검진을 받았고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갈음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2022 국가결핵관리지침」(’22.8월, 일부개정), XI. 부록 - 제5절. 자주 묻는 질문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신규채용 전에 학교의 자체 채용건강검진으로 실시하였거나,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기관·학교에서 실시한 이력이 있다면 갈음 가능합니다(이 경우 현재 별도 정해진 기간 없음).
14	국가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학교장은 소속된 종사자,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 교직원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 수검 여부를 조회 또는 회신받을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결핵관리지침」은 「의료법」에 따른 정보 누설금지, 기록 열람 조건 등이 선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결핵관리지침」내용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제3자제공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근거 : 「2022 국가결핵관리지침」(’22.8월, 일부개정), XI. 부록 - 제5절. 자주 묻는 질문
15	현재 휴직중이고, 2023.9.1. 복직예정입니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언제 받아야 하나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시행규칙 시행(2022.7.1.)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이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23.6.30.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법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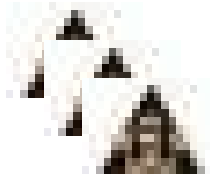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 교육 운영계획

담당: 김선영

2026학년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운영계획

수지초등학교

<https://suji-e.goeyi.kr/suji-e/main.do>



2026학년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계획



I.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가. 목적

1.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 방지조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을 정함
2. 성폭력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등 적극적인 사안 처리 방안 마련
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4. 학교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

나. 관련근거 법률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성희롱의 정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3.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법적 근거

* 예방교육 등 실적 보고(~2027.2.):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http://shp.mogef.go.kr/>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초·중·고등학교의 장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대상	필수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정의

1. 성희롱: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폭력: 성폭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분노, 불쾌감을 유발하고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는 음란한 눈짓, 말, 신체접촉 등을 말하며 성희롱, 성추행, 신체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통신매체를 통한 사진 및 영상 유포 등 포괄적인 범위가 포함
3. 성매매: 이익을 얻기 위해 성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함

마. 2026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內 주요 변경 사항

영역	구분	현행 제정규칙	현행 제정규칙
특정 대형교육 공공기관	일반 학교 기준치	유치·초등학교 중년 기준치 기초교육 수월하기 기본생활 지수별 C	유치·초등학교 기준치 및 중·고등학교 연령·성별·교육과정·학업수준 학업·신체 학업·신체
	대학원 입학률 기준	대학원 입학률 50%, 2000학년도 기준	대학원 입학률 50%, 2000학년도 기준 + 고교생의 대학 진학으로 인한 편차
	일반교 학생수 기준치	- 신원 변화 등 학생증명교육 후 고교 입학률 100%	- 일반고 학생수 100% 입학률 100% -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평가 - 신원 변화 등 학생증명교육 후 고교 입학률 100%
	대학원 학생수 기준치	- 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 교육과정·교육과정 - 일반고·대학원 학생증명교육 입학률 100% 이상	- 일반고 학생수 100% 입학 -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평가
	대학원 학생수 기준치	- 기존 내 대학원 입학률 100% 이상 교육 과정 - 대학원 교육 입학률 100% 이상 학사·교육과정·교육과정	- 기존 내 대학원 입학률 100% 이상 교육 과정 - 대학원 교육 입학률 100% 이상 학사·교육과정·교육과정
	대학원 학생수 기준치	- 일반고·대학원 입학률 100% 이상 교육과정·교육과정 - 대학원 교육 입학률 100% 이상 학사·교육과정·교육과정	- 일반고·대학원 입학률 100% 이상 교육과정·교육과정 - 대학원 교육 입학률 100% 이상 학사·교육과정·교육과정

항목	구분	현행 제도(2019년)	현행 제도(2020년)
특수 목적교육 운영안내	통제검정 (p.238)	(삭제)	○ 취업지원 센터 중앙행정기관별 등 관련 기관별 취업 특목대학교육 진로검사를 위한 기관 별지 편성에 포함 ※ 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별 취업 센터, 특수목적직업 전문학교, 중앙행정기관 별지별 취업센터, 기업대학(연구)원 등 소관
	계제편입 (p.239-242)	· 특수목적교육 제공처 및 교육비교제 (부속 1) · 편입교육 제공(제공처)비율	(변경)
	고사 병합검정 (p.243-245)	(삭제)	제1(특목목적교육 중심) 제1회 특목목적 교육의 취지를 널리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 수준 제2(고사+시험성적) 제1회 고사성적을 존중하여, 차별화하고 필요적인 일정을 설치하여 배제 제3(특목목적 교육 및 교육 내용과 방법의 제공성 및 운영성과 평가 반영성) 평가하여 배제 제4(고사성적) 제1회 고사성적을 바탕으로 편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제2회 고사 성적이 반영 가능 제5(교육비율 중심) 제1회 특목목적 교육비 비율을 우선으로 삼은 입학과 관련된 사항 존중하는 것으로 평가 제6(고사성적, 교육비율 등) 제1회 고사성적 준수율에 부합하는 (제1회) 고사성적 등에 준하여 교육
교육비 평가 등 운영안내	인간 고등교육기관 교육 비율 관련 p. 246	○ 인문지형에 고등교육기관별 교육 부가별 교육 고등교육기관 교육비율	○ 인문지형에 고등교육기관별 교육 부가별 교육 고등교육기관 교육비율 · 인문, 제1회 고사성적 기준에서 고사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제2회 고사성적이 우수 고사성적이 고등교육기관별 교육비율에서 고등교육기관 교육비율 준수율에 평가에서 낮은 제1회 고사성적 내 이수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1회 고사성적에서 교육 이수율 인정

바. 세부추진계획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체계화

대상	교육 내용 및 방법	시수	시기	담당자
학생	학생 성교육(필수) - 연간 20차시 이상 보건교육 및 관련 교과에서 연계하여 실시 - 3차시 성폭력예방교육 포함	20차시	연중	관련교과 보건
교직원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필수) - 교직원연수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교원, 현직 연수과정 등에 편성, 운영 - 학교 운영상황에 따라 방법 및 일자 변경 가능	1회	연중	보건
	구 분	시 기	방 법	비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각 1시간 (총 3시간)	4월 1일(수) (예정) 2:00~16:50	대면교육 (외부전문강사)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실시
	고위직 별도교육	하반기	집합교육	교육청주관
학부모	학부모 성교육 - 가정과 연계 지도를 위해 학부모 교육 강화,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회	연중	보건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운영내용(실적) 입력

- (운영내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제출
- (교육운영기간) 2026. 1. 1. ~ 12. 31.
- (입력기간) 2027. 2월 말까지 입력 후 제출

○ 교육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활용 계획 (가점)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추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 예산 계획

구분	산출기초		합(원)	인원수가산	산출액(원)	총액(원)	예산내역
교직원성교육 (일반강사Ⅱ)	강사료	기본 130,000	250,000	120%	300,000	435,000	교직원 성교육 강사비
		초과 60,000*2시간					
	원고료	(5,000원*9장) *3시간	135,000	135,000			
학생 성교육 (일반강사Ⅱ)	강사료 (집합교육)	기본 130,000	250,000	120%	300,000*2 일	(학기별 2,580,000) ▼ 1,2학기 5,160,000	학생 성교육 강사비
		초과 60,000*2시간					
	강사료 (각반교육)	기본 130,000*6일	780,000		1,800,000		
		초과 60,000*17시간	1,020,000				
	원고료	(5,000원*9장) *4개학년	180,000	180,000			

※ 예산 사용은 변동될 수 있음.

2. 교직원대상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 통합예방)

○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 (운영내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필수)
- (교육대상) 기관장을 반드시 포함한 전 교직원(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고위직 대상 관리자 별도 교육 의무》
▶ 대상: 교장, 교감, 행정실장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별도 실시(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교직원 교육으로 같음) - 교육청 주관

- (운영방침) 연간 계획서를 반드시 수립(교육 시기·내용·방법, 예산, 각종 서식 포함)
- (운영방법) 영역별 각 연 1회, 각 1시간 이상 실시(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 가능)
 - ※ 통합교육 시간은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과 동일 (공공기관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초·중·고 연 2시간 이
 - ※ 신규자는 임용·채용 후 2개월 이내에 실시

3. 학생 및 학부모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항목	추진 내용	대상	시기	비고
성폭력 예방 교육	학생 성교육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포함)	전교생	연중	교육과정 중 담임과 보건이 진행 (교육과정계획에 의거) 성폭력예방교육 4시간 포함 성교육 20차시 가저토시무 화요
	학부모 성교육(통합)	학부모	연중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보건소식지 등 활용
성폭력 예방 상담활동	성고충 상담실 운영	전교생	연중	보건실에 성고충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기관 연계지원 (편의식)	학부모		사이버 성고충상담창구 설치 운영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 2026학년도 학년별 성교육 교육과정 연계 세부계획

[1학년]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교육	1	창체	자율활동	◆참소리학급문화조	-	참소리학급문화조(자)	-
	2	창체	자율활동	◆참소리학급문화조	-	참소리학급문화조(자)	-
	3	창체	자율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자)	-
	4	창체	자율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자)	-
	5	창체	자율활동	2. 혼자서도 잘해요	1/1	그림 속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할까요?	70-71
	6	창체	자율활동	3. 안전하게 지내요	1/2	소중한 나를 스스로 지켜요.	84
	7	창체	안전한생활	1-(1).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1/6	실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요	6-9
	8	창체	자율활동	◆학생인권교육	-	학생인권교육(자)	-
	9	창체	자율활동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자)	-
	10	창체	안전한생활	1-(2). 신나는 나들이	1/4	야외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다녀와요	20-21
	11	창체	자율활동	◆인터넷중독예방교	-	인터넷중독예방교(자)	-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교육	12	창체	안전한생활	2-(1). 안전한 길	4/6	신호등이 없어도 안전하게 건너요	38-39
	13	창체	자율활동	◆가정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자)	-
	14	창체	안전한생활	2-(1). 안전한 길	5/6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40-41
	15	창체	자율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자)	-
	16	창체	자율활동	◆사이버폭력 예방교	-	사이버폭력 예방교(자)	-
	17	슬생	가을1-2	1. 내 이웃 이야기	7/40	놀이터에서 만난 이웃 (1/2)	18-19
	18	창체	자율활동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자)	-
	19	창체	자율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자)	-
	20	창체	자율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자)	-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폭력 예방 교육	1	창체	자율활동	◆인터넷중독예방교	-	인터넷중독예방교(자)	-
	2	창체	자율활동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예방교육(자)	-
	3	창체	자율활동	◆사이버폭력 예방교	-	사이버폭력 예방교(자)	-
	4	창체	자율활동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자)	-

[2학년]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교육	1	창체	자율활동	◆참소리 학급문화	-	기본생활 정착주간	-
	2	창체	자율활동	◆참소리 학급문화	-	마음 반올림 1학급 1인성	-
	3	창체	자율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안전주간	-
	4	창체	자율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안전주간	-
	5	창체	동아리활동	◆동아리(반별활동)	-	동아리(반별활동)(동)	-
	6	바생	-	◆인성교육	-	마음반올림 1학급 1인성	-
	7	창체	자율활동	◆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식 개선교육	-
	8	창체	자율활동	◆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식 개선교육	-
	9	창체	동아리활동	◆동아리(반별활동)	-	동아리(반별활동)(동)	-
	10	창체	자율활동	◆인성교육	-	가족사랑 실천주간	-
	11	즐생	-	◆인성교육	-	가족사랑 실천주간	-
	12	창체	자율활동	◆체격검사	-	체격검사 주간	-
	13	창체	자율활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	학교안전주간	-
	14	창체	자율활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	학교안전주간	-
	15	슬생	가을 2-2	1. 동네 한 바퀴	16/40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3/3)	30-33
	16	바생	가을 2-2	1. 동네 한 바퀴	21/40	모두 다 소중해	40-43
	17	창체	안전한생활	3-(3). 나를 지켜요	1/4	나의 몸은 소중해요	52-53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교육	18	창체	안전한생활	3-(3). 나를 지켜요	2/4	소중한 나를 지켜요	54-55
	19	즐생	겨울 2-2	1. 두근 두근 세계 여행	14/40	알록달록 세계의 옷 (1/2)	42-43
	20	바생	겨울 2-2	1. 두근 두근 세계 여행	34/40	함께 지켜요 (1/2)	74-77

성폭력 예방 교육	1	창체	자율활동	성교육	1/1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
	2	바생	여름2-1	성교육	1/1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
	3	바생	여름2-1	성교육	1/1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
	4	바생	겨울 2-2	성교육	1/1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

[3학년]

영역	순	해당 교과	대단원 (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교육	1	체육	-	1. 건강(건강과 체력) 02 다양한 운동을 해요	1/12	대단원 도입	-
	2	도덕	-	1. 나와 너, 우리 함께	3/4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14-17
	3	체육	-	1. 건강(건강과 체력) 02 다양한 운동을 해요	9/12	신나게 몸을 움직여요(2/2)	28~29
	4	도덕	-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2/4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42-45
	5	체육	-	◆생존수영이론교육	-	생존수영이론교육(체)	-
	6	체육	-	◆생존수영체험교육	-	생존수영체험교육(체)	-
	7	체육	-	3. 경쟁(경쟁의 기초) 01 승리를 피해요	10/14	상대를 피해 꼬리를 지켜요(2/3)	74~75
	8	체육	-	5. 안전(신체 활동과 수상 안전) 01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해요	2/6	학교에서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해요(1/2)	122~123
	9	영어	-	Lesson 10 She's My Mom	1/4	Get Ready, Let's Learn, Mini Talk, Chant, Play Together 1	109-111
	10	영어	-	Lesson 10 She's My Mom	2/4	Real Talk, Play Together 2, Song, Make a Story	112-113
	11	영어	-	Lesson 10 She's My Mom	3/4	ABC a Words, Read and Talk, Listen, Connect and Write, Play Together 3 / 선가족선편지	114-115
	12	국어	-	5. 바르게 대화해요	9/10	언어 예절에 맞게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1/2)	178-181 국어활동 59- 60
	13	국어	-	5. 바르게 대화해요	10/10	언어 예절에 맞게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2/2)	178-181 국어활동 59- 60
	14	체육	-	◆성교육	-	성교육(체)	-
	15	도덕	-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 우리 모두를 위한 길	1/4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이웃의 문제를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천 방법을 찾아 계획할 수 있다	118-127
	16	사회	3.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1.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	5/17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14-117
	17	도덕	-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 우리 모두를 위한 길	2/4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이웃의 문제를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천 방법을 찾아 계획할 수 있다	118-127

영역	순	해당 교과	대단원 (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교육	18	사회	3.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1.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	6/17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생각해 볼까요 (1/2)	118-121
	19	사회	3.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1.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	7/17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생각해 볼까요 (2/2)	118-121
	20	체육	-	3. 경쟁(경쟁의 기초) 02 공으로 게임을 해요	10/16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내고 달려요(1/3)	86~87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폭력 예방 교육	1	체육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체)	-
	2	체육	-	3. 경쟁(경쟁의 기초) 01 술래를 피해요	1/14	대단원 도입	64~67
	3	체육	-	5. 안전(신체 활동과 수상 안전) 01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해요	1/7	대단원 도입	116~119
	4	체육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체)	-

[4학년]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교육	1	도덕	-	2. 공손하고 다정하게	2/4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익히고 대상과 상황에 따라 알맞은 예절을 실천할 수	28~31
	2	도덕	-	2. 공손하고 다정하게	3/4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32~33
	3	체육	-	◆생존수영 이론1	-	생존수영 이론1(체)	-
	4	체육	-	◆생존수영 이론2	-	생존수영 이론2(체)	-
	5	창체	자율활동	◆성교육	-	성교육(자)	-
	6	도덕	-	2. 공손하고 다정하게	4/4	일상생활에서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34~37
	7	체육	1. 건강	2. 스스로 체력 운동을 해요	3/14	체격과 체력에 대해 알아요(2/2)	20~21
	8	체육	1. 건강	2. 스스로 체력 운동을 해요	4/14	체격과 체력을 측정해요(1/2)	22~23
	9	체육	1. 건강	2. 스스로 체력 운동을 해요	5/14	체격과 체력을 측정해요(2/2)	22~23
	10	체육	1. 건강	2. 스스로 체력 운동을 해요	6/14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 계획을 세워요(1/2)	24~25
	11	체육	1. 건강	2. 스스로 체력 운동을 해요	7/14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 계획을 세워요(2/2)	24~25
	12	체육	1. 건강	2. 스스로 체력 운동을 해요	10/14	운동 체력이 길러지는 운동을 해요(1/2)	28~29
	13	창체	자율활동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예방교육(자)	-
	14	도덕	-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3/4	편견과 차별의 그릇됨을 알고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문제 상황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110~113
	15	도덕	-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4/4	다양한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114~117
	16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10/17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살펴볼까요(2/2)	122~127
	17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11/17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을 살펴볼까요(1/2)	128~132
	18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12/17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을 살펴볼까요(2/2)	128~132
	19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13/17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2)	133~139
	20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14/17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133~139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폭력 예방 교육	1	체육	1. 건강	2. 스스로 체력 운동을 해요	3/14	체격과 체력에 대해 알아요(2/2)	20~21
	2	체육	1. 건강	2. 스스로 체력 운동을 해요	4/14	체격과 체력을 측정해요(1/2)	22~23
	3	체육	1. 건강	2. 스스로 체력 운동을 해요	5/14	체격과 체력을 측정해요(2/2)	22~23
	4	창체	자율활동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예방교육(자)	-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교육	1	체육	건강	건강 (도입)	1/1	대단원 도입 가치 이해	8-11
	2	체육	건강	1. 건강하게 성장해요	1/12	단원 도입	12-13
	3	체육	건강	1. 건강하게 성장해요	2/12	성장과 발달에 해로운 것을 알아보아요 (1/2)	16-17
	4	체육	건강	1. 건강하게 성장해요	3/12	성장과 발달에 해로운 것을 알아보아요 (2/2)	16-17
	5	창체	자율활동	성폭력 예방교육	1/1	성폭력예방 교육	-
	6	실과	1. 나의 성장	01. 아동기 발달의 특징	1/4	나의 발달 특징을 알아보아요(1/4)	8-11
	7	실과	1. 나의 성장	01. 아동기 발달의 특징	2/4	나의 발달 특징을 알아보아요(2/4)	8-11
	8	체육	-	◆신체발달상황검사	-	신체발달상황검사(체)	-
	9	실과	1. 나의 성장	02. 아동기 성의 발달	1/3	남자와 여자는 성장하며 어떻게 달라지나요? (2/2)	13
	10	실과	1. 나의 성장	02. 아동기 성의 발달	2/3	올바른 자기 관리 방법을 알아보아요(1/2)	14-15
	11	실과	1. 나의 성장	02. 아동기 성의 발달	3/3	남자와 여자는 성장하며 어떻게 달라지나요? (1/2)	13
	12	창체	자율활동	성교육	1/1	성폭력의 의미와 상황	-
	13	체육	건강	1. 건강하게 성장해요	4/11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요 (1/2)	14-15
	14	체육	건강	1. 건강하게 성장해요	11/12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요 (2/2)	14-15
	15	체육	-	1. 건강하게 성장해요	12/12	디지털 성폭력 예방하기	-
	16	실과	가정생활과 생활 안전	03. 옷 입기와 의생활 예절	1/2	옷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89
	17	실과	가정생활과 생활 안전	03. 옷 입기와 의생활 예절	2/2	알맞은 옷차림과 의생활에 대해 알아보아요	90-91
	18	실과	가정생활과 생활 안전	04. 안전한 옷차림	1/2	성장하는 우리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까요? (1/2)	93-94
	19	실과	가정생활과 생활 안전	04. 안전한 옷차림	2/2	성장하는 우리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까요? (2/2)	93-94
	20	실과	6. 나와 직업	02. 자기 이해와 직업 탐색	1/2	나에 대해 알아보을까요?(1/2)	109-111

[5학년]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폭력	1	창체	자율활동	성폭력 예방교육	1/1	성폭력예방 교육	-

예방교육	2	도덕	-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4/6	4. 학급인권선언문 만들기	-
	3	창체	자율활동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1/1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끼치는 영향	-
	4	창체	자율활동	성교육	1/1	성폭력의 의미와 상황	-
	5	창체	자율활동	◆사이버폭력예방교	-	사이버폭력예방교(자)	-
	6	도덕	-	4. 밝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	1/4	1. 사이버 세상, 건전하게 생활해요	98-101
	7	도덕	-	4. 밝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	2/4	2. 사이버 예절, 함께 지켜요	102-105
	8	미술	-	◆현장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미)	-
	9	미술	-	◆현장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미)	-
	10	창체	자율활동	마음 반올림 1학년 1인성	1/1	타임캡슐 개봉하기	-

※ 5학년 보건교과 보건교육 17차시 中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시간표 (5차시)

순	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학습주제
1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 건강	우리와 함께하는 성1, 사춘기 소녀
2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 건강	우리와 함께하는 성2, 사춘기 소년
3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 건강	서로의 경계 존중하기
4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 건강	성폭력!함께 예방하기(디지털 성폭력 포함)
5	보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정서·정신 건강	내마음알아보기, 서로 다름이 모여만드는 세상

[6학년]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교육	1	창체	자율활동	◆학교안전주간	-	학교폭력 예방교육	-
	2	창체	자율활동	◆학교안전주간	-	학교폭력 예방교육	-
	3	창체	자율활동	학생인권교육	1/1	학생인권교육	-
	4	창체	자율활동	학생인권교육	1/1	학생인권교육	-
	5	창체	자율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	-
	6	창체	진로활동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1/1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
	7	창체	자율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	-
	8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1/12 중단원 도입 2/12 씨름을 알아보아요		50-51
	9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3/12 씨름의 기술을 익혀요 (1/2)		52-53
	10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4/12 씨름의 기술을 익혀요 (2/2)		52-53
	11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5/12 씨름 대회를 해 보아요 (1/2)		54-55
	12	창체	자율활동	◆정보통신윤리교육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13	창체	자율활동	◆정보통신윤리교육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14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6/12 씨름 대회를 해 보아요 (2/2)		54-55
	15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7/12 태권도 겨루기의 기술을 익혀요 (1/2)		56-57
	16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8/12 태권도 겨루기의 기술을 익혀요 (2/2)		56-57
	17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9/12 약속 겨루기를 해 보아요 (1/2)		58-59
	18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10/12 약속 겨루기를 해 보아요 (2/2)		58-59
	19	체육	도전	2. 힘과 기술을 겨루어요	11/12 태권도 겨루기 대회를 해 보아요		60-61
	20	창체	자율활동	성폭력 예방교육	1/1	성폭력 예방교육	-
영역	순	해당교과	대단원(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성폭력	1	창체	자율활동	◆학교안전주간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예방교육	2	창체	자율활동	◆학교안전주간	-	학교폭력 예방교육	-
	3	창체	자율활동	◆정보통신윤리교육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4	창체	자율활동	◆정보통신윤리교육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5	창체	자율활동	성폭력 예방교육	1/1	성폭력 예방교육	-

구분	대상학년	운영일시 및 방법	운영장소	교육내용
1학기	3학년	4.9(목)1~3교시 중 3~4개반씩 1차시 집합교육	시청각실 / 외부강사	올바른 성인지 및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또래성폭력 성인지감수성)
	4학년	4.21(화)1~3교시 중 4개반씩 집합교육		
	5학년	3.24(화)~3.26(목)1~5교시 중 학급별 1차시	각반교실 / 외부강사 *학년(급)별 시간표참고	
	6학년	4.13(월)~4.15(수)1~4교시 중 학급별 1차시		
2학기	3학년	8.27(목)1~3교시 중 3~4개반씩 1차시 집합교육	시청각실 / 외부강사	학교(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4학년	9.1(화)1~3교시 중 4개반씩 1차시 집합교육		
	5학년	10.13(화)~10.15(목)1~5교시 중 학급별 1차시	각반교실 / 외부강사 *학년(급)별 시간표참고	
	6학년	9.2(수)~9.4(금)1~4교시 중 학급별 1차시		

○ 성폭력 예방교육 **외부강사 집합교육 및 학급별교육** 실시(학기별 1차시, 총 2차시)

구분	학기별 교육일자		* 성폭력 예방교육(외부강사) 학년(급)별 시간표 - 5,6학년									
	1학기	2학기	1교시 (9:00~9:40)		2교시 (9:50~10:30)		3교시 (10:40~11:20)		4교시 (11:30~12:10)		5교시 (12:20~13:00)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5학년	3.24(화)	10.13(화)	5-7	5-7	5-8	5-8	5-11	5-11	5-5	5-5		
	3.25(수)	10.14(수)	5-12	5-12	5-9	5-9	5-3	5-3	5-1	5-1		
	3.26(목)	10.15(목)	5-10	5-10	5-4	5-4	5-2	5-2	5-6	5-6	5-13	5-13
6학년	4.13(월)	9.2(수)	6-1	6-8	6-2	6-9	6-3	6-12	6-4	6-11		
	4.14(화)	9.3(목)	6-6	6-1	6-5	6-2	6-7	6-3	6-10	6-4		
	4.15(수)	9.4(금)	6-8	6-10	6-9	6-5	6-12	6-7	6-11	6-6		

■ 교육만족도 조사 서식

교육만족도 조사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귀하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	①영유아 ②초등학생 ③중학생 ④고등학생 ⑤기타				
	만 19세 이상	⑥20대 ⑦ 30대 ⑧ 40대 ⑨ 50대 ⑩ 60대 ⑪ 7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 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해당시 답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 / 무응답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 귀하는 교육을 들으신 후에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의미와 범위(판단기준)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을 더 잘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어떤 말과 행동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나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일상생활에서 폭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⑤	④	③	②	①
내 주위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⑤	④	③	②	①

○ 귀하께서 받으신 폭력예방교육은 전반적으로 어떠했습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폭력예방을 학습(혹은 이해)하는데 교육내용이 적절했다.	⑤	④	③	②	①
폭력예방을 학습(혹은 이해)하는데 교육방법이 적합했다.	⑤	④	③	②	①
폭력예방을 학습(혹은 이해)하는데 교육자료(강사 PPT, 유인물 등)가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우리 기관의 상황(교육대상자 특성 등)에 맞는 교육이었다.	⑤	④	③	②	①
교육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⑤	④	③	②	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본 교육이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교육 효과 조사 (교육 전/후)

○ 귀하는 교육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에 관해 얼마나 알고(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대체로 알고 있었다	보통 이다	별로 알고 있지 못하였 다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 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점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통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⑤	④	③	②	①

○ 귀하는 교육을 받은 후에 아래 사항들을 얼마나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전혀 그렇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예방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을 더 잘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예방교육 개선의견 조사

-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폭력예방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폭력예방에 대한 직원들 간의 토론, 워크숍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기관 관리자급의 폭력예방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기관 일반직원들의 폭력예방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조직 내 폭력예방관련 규정, 지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또래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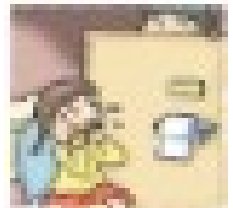
1. 성폭력이란?

- 1)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 2)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 3)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폭력(말, 행동, 시선, 기분 등등)
 - 성폭력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인 접촉이나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봅시다.



2. 또래 성폭력이란?

-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장난처럼 취급되는 성폭력을 말한다.
-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장난, 게임, 놀이를 할 때 친구의 상황을 생각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성폭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또래 성폭력이란 이런 것!!

- 1) 음란물(사진, 잡지, 동영상, 야설)을 보여주거나 성행동 흉내내기
- 2) 장난으로 하는 바지 내리기나 치마 들추기
- 3) 동의 없이 신체 만지기(엉덩이, 성기 등)
- 4)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기
- 5)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훑쳐보기
- 6)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기
- 7) 게임이나 별책으로 하는 스킨쉽 강요하기
- 8) 사이좋게 노는 친구들을 보며 사귀냐며 놀리는 경우
- 9) 뽕칠 하기 등



4. 또래 성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1)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2) 의사표현(느낌)을 분명히 한다.
- 3) 남자라서, 여자라서 등의 이유로 강요하지 않는다.
- 4) 싫다고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표정 등을 통해서 세심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5. 또래성폭력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1)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잘못했다면 사과는 반드시 한다.
- 2) 성적행동이나 말장난 등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지 않는다.
- 3) 가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즉시 중지하라고 말한다.
- 4) 가해자의 행위가 불쾌하다면 상대방에게 말한다.
직접대면하면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종이에 써서 의사를 전달한다.



- 5)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즉 선생님(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부모와 의논한다. 만일 첫 번째 어른이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며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 줄 수 있는 어른을 만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 6) 성폭력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절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경험하는 피해 상황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 7)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적어둔다. 차후에 성폭력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이러한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된다. 만일 가해자나 가해자의 친구가 이메일이나 편지, 쪽지를 보내 오면 잘 보관해 둔다.
- 8) 다른 사람이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노력하고 신뢰하는 어른에게 이야기를 한다.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수지초등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025.9.1. 개정 내용: 학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이관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예방지침 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지초등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수지초등학교장과 소속 구성원(수지초등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수지초등학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교직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학교장으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학교장의 책무)

- 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2차 피해 예방 포함)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 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조사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생활교육과-14086(2025.8.19.)에 의거하여 2025.9.1. 접수 사안부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이관 전		이관 후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지원청
-사안인지, 상담 및 초기 대응 -사실확인(조사)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관리자 사안, 학교 간 사안 등 복잡한 사안) -사안 발생 시 학교 컨설팅	-사안인지, 상담 및 초기 대응 -사실확인(조사) 협조 -재발방지대책 수립, 조치 이행	-사실확인(조사)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사안 발생 시 학교 컨설팅

제6조(고충상담창구)

-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 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학교 구성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중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여 구분없이 동일 성으로 2인 이상 지정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하다.
-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조사·처리 협조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피·가해자가 교직원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7.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8.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고충처리 절차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수지초등학교 성고충상담원

직책(급)	상담원활동기간(2026.3.1.~2027.2.28.)			비고
	성명	성별	담당업무	
교사	양재*	남	6-11 담임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예정 성고충상담창구 - 246보건실
보건교사	김선*	여	보건교육 및 보건실 운영	

제7조(사이버신고센터)

- 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을 학교 구성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① 학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포함) 예방교육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강의,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각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에게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업무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외부기관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상담 신청인이 조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을 통한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중도·종결 처리 동의서를 제출 받아 학교장에 보고하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사안 접수 이후 명시적으로 조정·중재를 요청하면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학교장에 보고하고 조정·중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정·중재 요청은 교육지원청의 피해조사위원이 사실확인(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통보의무)

- 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사건접수가 된 경우 지체없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보고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제12조(조사 등 결과 통지)

-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사실확인(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지원청에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교장과 고충상담원은 피해조사위원이 사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조사 과정에 협조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를 접수하면 심의 결과를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징계)

- ① 학교장은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자가 행위자로서,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③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안 날(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청,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이 지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가. 목적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방지조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을 정하기 위함.

나. 법적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다.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기관장 및 고위직 교육 참석 의무화
- 임시직/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 교육내용: 개별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며, 학교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
-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직원 홍보

2.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 마련 및 고충상담원 지정

가) 교직원, 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과 관련된 고충 상담

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 : 246 보건실**

다) **기관 고충상담원 신규 지정 시 3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의무)**

라) 고충상담 원칙 및 유의사항

- 피해자가 고충신청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고 상담을 받을 때는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
- 상담자는 고충상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상담신청자와 상호 연계하여 협력할 것
- 심리적인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며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

마)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 운영: **학교 홈페이지 ▶ ‘성폭력전담신고센터’ 배너 활용**

바) **우리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직책(급)	성명	성별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담당업무
교사 (6-11 담임)	양재*	남	한국양성평등교육 이수 예정	- 사실관계조사및고충상담에 관련되는당사자에 대한지도, 조언 등으로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해결하도록노력한다.
보건교사 (246보건실)	김선*	여	한국양성평등교육 이수 예정	- 고충상담 시 유의사항(성희롱 고충상담원 매뉴얼 참조)을 충분히숙지하고상담관련 연수를 통한 상담능력을배양한다. - 관련자의자존심이나명예, 인권 등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비밀을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 관련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고충신청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총 2인 이상(남·녀 각 1인 이상 포함)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고충상담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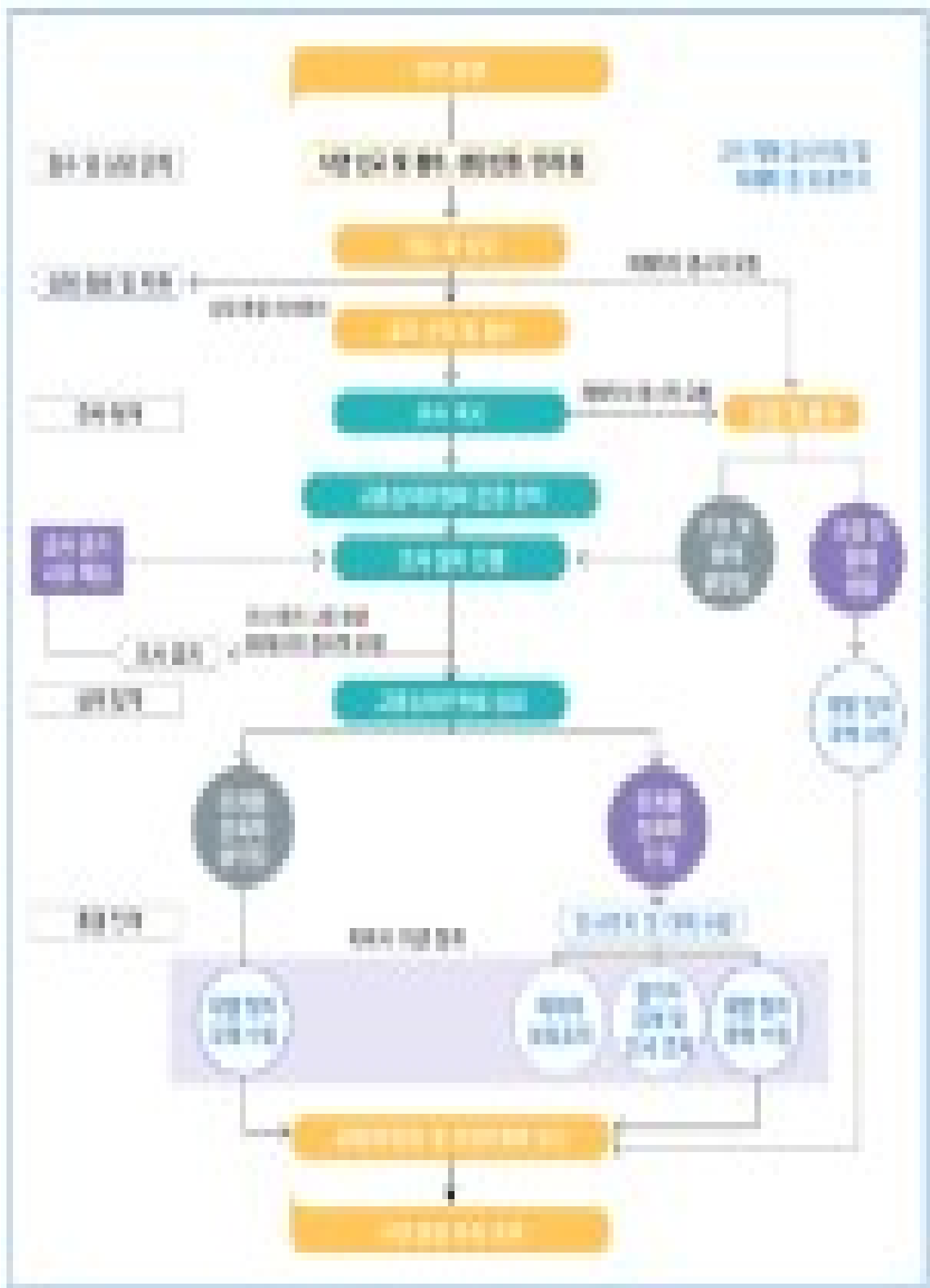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가.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괄

※ 출처: 2025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6.2.24기준 2026년 매뉴얼 업데이트 아직 안됨)

나. 학교 내 사안 처리 단계별 내용



주 관	단 계		세 부 내 용
학 교	① 접수 및 상담	상담·신고	· 생활기록부 고충상담 및 인지 ·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안 접수 - 신고 접수 미희망 시: 상담 후 종결 - 신고 접수 희망 시: 초기 사실확인 및 사안 접수 ※ 중대·긴급 사안인 경우 교육지원청에 우선 유선 보고 · 수사기관 신고(117 또는 112) -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안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신고 필수
		긴급 조치	· 피해자·피신고인 긴급 분리(보호) 조치 - 피해자·피신고인 분리조치(학교 내) 및 피해자 심리상담 연계 · 비밀유지, 접촉금지 등 2차 피해 예방 준수 고지
		발생 보고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작성 및 제출 - 교육지원청(업무담당부서), 교육청(생활교육과) 제출 -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없는 경우 제출
		사안 조사 및 심의 의뢰	·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등 첨부 -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교육 지원청	② 조사	접수 및 조사 계획 수립	·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공문 접수 · 사실확인(조사) 계획 수립
		사실확인 (조사)	· 피해조사위원을 통한 사실확인(조사) - 공문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완료 (필요시 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사실확인(조사) 결과 보고
	③ 심의	심의계획수립 및 안내	·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심의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보고 통보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서면통보(→당사자, 소속학교) · 감사 요청
학 교	④ 종결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후속 조치 이행 - 조정·중재 시 합의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여부 모니터링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하며 종결 이후에도 지속 시행 ·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 - 발생 사실을 안 날(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지원청(업무담당부서), 교육청(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 사건 발생 사실 미통보한 경우도 재발방지대책은 여성가족부 보고 필수

다. 피가해 유형별 사안 처리 절차(학교)

■ 학생[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처리 절차

상담/신고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인지 - 관리자에 사안 내용 보고 · 초기 사실확인 및 사안 접수 -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작성(학교폭력 전담기구 접수), 조정·중재 불가 - 사실확인(조사) 주체: 고충상담원(가해교직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피해학생) - 고충상담원은 학교폭력사안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 접수 ※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는 업무담당자가 작성 · 수사기관 신고(117 또는 112):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필수
긴급 조치	· 피해자·피신고인 긴급 분리(보호) 조치 - 피해자·피신고인 분리 조치(학교 내) · 비밀유지, 접촉금지 등 2차 피해 예방 준수 고지 - 사안 처리 업무담당자 및 관련자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발생 보고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작성 및 제출 - 교육지원청(업무담당부서), 교육청(생활교육과) 보고 -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제출
사안 조사 및 심의 의뢰	·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공문 발송 -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등 첨부(→교육지원청)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심의결과 포함) ·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 - 발생 사실을 안 날(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지원청(업무담당부서), 교육청(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로 제출

■교직원[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처리 절차

상담/신고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인지 - 사안 접수 미희망 시 상담 후 종결 - 관리자에 사안 내용 보고 · 초기 사실확인 및 사안 접수 - 신고 접수 희망 시: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 조정 및 중재 - 사안 접수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정·중재 요청 시 피해자 요구사항 확인하여 관리자 보고 후 진행 - 피해조사위원이 사실확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가능
긴급 조치	· 피해자·피신고인 긴급 분리(보호) 조치 - 피해자·피신고인 분리 조치(학교 내) 및 피해자 심리
발생 보고	상 동(학생-교직원 사안처리 절차)
사안 조사 및 심의 의뢰	상 동(학생-교직원 사안처리 절차)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상 동(학생-교직원 사안처리 절차)

■ 교원[피해]-학생[가해] 사안 처리 절차

상담/신고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인지 - 사안 접수 미희망 시 상담 후 종결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인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요청(교권업무담당자) - 성희롱·성폭력 사안 접수 시 고충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관리자에 사안 내용 보고 · 초기 사실확인 및 사안 접수 - 사안 접수 희망 시: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 사실확인(조사) 주체: 고충상담원(교원), 학생생활교육담당자(학생)
긴급 조치	· 피해자·피신고인 긴급 분리(보호) 조치, 보호자 연락 · 비밀유지, 접촉금지 등 2차 피해 예방 준수 고지
발생 보고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작성 및 제출 - 교권침해 신고 시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작성 및 제출 - 교육지원청(업무담당부서), 교육청(생활교육과) 보고 -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제출
사안 조사 및 심의 의뢰	상 동(학생-교직원 사안처리 절차)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상 동(학생-교직원 사안처리 절차)

■ 교직원[피해]-학생[가해] 사안 처리 절차

상담/신고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인지 - 사안 접수 미희망 시 상담 후 종결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닌 경우 - 관리자에 사안 내용 보고 • 초기 사실확인 및 사안 접수 - 사안 접수 희망 시: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 사실확인(조사) 주체: 고충상담원(교직원), 학생생활교육담당자(학생)
긴급 조치	• 피해자·피신고인 긴급 분리(보호) 조치, 보호자 연락 • 비밀유지, 접촉금지 등 2차 피해 예방 준수 고지
발생 보고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작성 및 제출 - 교육지원청(업무담당부서), 교육청(생활교육과) 보고 -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제출
사안 조사 및 심의 의뢰	상 동(학생-교직원 사안처리 절차)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상 동(학생-교직원 사안처리 절차)

■ 학생[피해]-학생[가해] 사안 처리 절차

-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의 기본절차 및 구체적 안내를 따라야 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이 관련 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라. 단계별 서식 목록

단계	내용	관련 서식	비고
접수 및 상담	상담 · 신고	01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일지	
		02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03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04 비밀유지 서약서	
		04-1 사안 접수 보고	
	발생 보고	05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05-1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보고	
	사안 조사 및 심의 의뢰	06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종결	재발방지대책 수립 · 제출	24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24-1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보고	

참고 서식 및 자료	25 조정·중재 요청서	
	25-1 조정·중재 요청서 접수 보고	
	26 조정·중재 합의서	
	26-1 조정·중재 합의서 접수 보고	
	27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	
	27-1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 접수 보고	

※ 출처: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상담 접수번호: 00학교 0호

상담일시		20 년 월 일 (요일) 00:00~00:00		상담장소	
신고인 (피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나이 년 월 일 (세)
	직위		연락처		
	신분	① 학생 ② 교원 ③ 직원 ④ 보호자 ⑤ 기타			
상담방법		① 대면 ② 전화 ③ 메일 ④ 기타			
상담회차		회	상담자 직위 / 성명	/	
상담 내용					
1. 관련자 정보 - 피신고인: 000(성별, 생년월일(나이), 직급, 신고인(피해자)와의 관계 등) - 참고인: 000(성별, 생년월일(나이), 직급, 신고인(피해자)와의 관계 등) 2. 피해자 주 호소 내용(육하원칙에 맞춰서) 3 피해자 요청 사항 등 4. 상담원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 ※ 상담 시작 전 상담내용 중 성희롱 · 성폭력 사안 관련 내용은 관리자에게 보고되며, 상담 중 피해 사실이 인지되면 관리자 보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보고가 이루어짐을 알려야 함					
상담 결과					
상담신청인 의사에 따라 표기, 관련 내용 추가 기재					
사안 미접수		다음 상담까지 신고 여부 숙고		사안 접수	
()		()		- 신고·조사 ()	
- 종결사유: - 후속조치:		차기 상담: 2000. 0. 0.00시		- 조정·중재 ()	
상담신청인 성명: (서명)					

※ 조사 거부 시 피해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그럼에도 거부 시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 제출 후 사안 종결

[02]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접수번호	20〇〇-〇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일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피해자 또는 업무담당자 작성 후 피해자가 기재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함

※ 이하 관련 서류는 본 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20○○-○호)를 동일하게 작성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민감정보 처리목적] 신고 사안 처리

[민감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 사안 내용 및 신상정보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사안 처리 관련 부서(사안 조사 포함)

위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비밀유지 서약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본인은 ()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안에 관하여
사안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 피해자, 참고인, 피신고인, 업무관련자
※ [교육지원청]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피해조사위원, 참고인(추가 시), 업무관련자

[04-1] 사안 접수 보고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호) 사안 접수 보고

1. 관련: ○○학교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2. (20○○-○호) 성희롱 · 성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불임 1. (20○○-○호) 성희롱 · 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1부.

2. 민감정보처리 동의서(피해자) 1부.

3. 비밀유지 서약서(피해자) 1부. 끝.

[05]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 엑셀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서식변경 금지)

※ 서식 탑재 위치: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생활교육과>성희롱으로 검색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제출기관명	(경기) ○○학교
담당자(직급)	○○○(부장교사)
연락처	000-000-0000

구분	내 용	응답값
시점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특정일 ☐ (날짜 2025-00-00) 특정기간 ☐ (2025-00-00 ~ 2025-00-00) 특정불가 ☐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25-00-00)
	●사건 통보일	날짜 기재 (2025-00-00)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 ☐ 미해당 ☐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1인 ☐ , 2인 이상 ☐) 피해자(1인 ☐ , 2인 이상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 ☐ 교사-학생 ☐ 학생-교사 ☐ 학생-학생 ☐ 기타 ☐ ()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신고 ☐ (신고일 날짜:) 신고 예정 ☐ 미신고 ☐ (미신고 사유 선택: 피해자 의사 ☐ 기타 ☐ 해당없음 ☐
보호 조치 사항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예 ☐ 아니요 ☐
	●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시) 행위자 업무 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등	예 ☐ 아니요 ☐ 조치예정 ☐ - 행위자 업무공간 이동 ☐ - 행위자 전보 ☐ 피해자 휴가 ☐ 기타 ☐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외부기관 연계	예 ☐ 아니요 ☐ 조치예정 ☐ - 심리상담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 외부기관 연계 ☐ 기타 ☐ ()
주요 내용 (사건 신고· 접수 개요 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위자· 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으로 기재한다(200자 미만으로 기재)	
기타	외부기관(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사건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2차 피해 관련 사항 등 100자 미만으로 기재하여 작성(인명처리 동의)	

[05-1]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보고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경유)

제목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보고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2의 제1항
2.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엑셀서식) 1부. 끝.

[06] 성희롱 · 성폭력 사안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학교

수신 경기도○○교육지원청(○○과)

(경유)

제목 (20○○-○호) 성희롱 · 성폭력 사안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1. 관련

가. ○○학교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나. ○○학교-○○(20○○.○○.○○) (20○○-○호) 사안 접수 보고

2. (20○○-○호) 성희롱 · 성폭력 사안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붙임 1. (20○○-○호) 성희롱 · 성폭력 신고 및 사실확인(조사) 신청서 1부.

2. 민감정보처리 동의서(피해자) 1부.

3. 비밀유지 서약서(피해자) 1부. 끝.

[24]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별도 엑셀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

※ 서식 탑재 위치: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생활교육과>성희롱으로 검색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관명	(경기) ○○학교
담당자(직급)	○○○(부장교사)
연락처	000-000-0000

☐ 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통보 여부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여부	통보 ☐ 미통보 ☐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	피해자 의사 ☐ 착오, 누락 ☐ 기타 ☐ (사유)
시점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특정일 ☐ (날짜 2025-00-00) 특정기간 ☐ (2025-00-00 ~ 2025-00-00) 특정불가 ☐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름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25-00-00)
	●재발방지대책 제출일 ※ 사건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날짜 기재 (2025-00-00)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경기)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 ☐ 미해당 ☐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1인 ☐ , 2인 이상 ☐) 피해자(1인 ☐ , 2인 이상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 ☐ 교사-학생 ☐ 학생-교사 ☐ 학생-학생 ☐ 기타 ☐ ()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여부	신고 ☐ (신고일 날짜:) 신고 예정 ☐ 미신고 ☐ (미신고 사유 선택: 피해자 의사 ☐ 기타 ☐) 해당없음 ☐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사항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유형상담, 신고 및 조사	●사건 조사 신청서 접수일	날짜 기재 (2025-00-00)
	●사건 조사 기간(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 30일 이내 ☐ 30일 초과 ☐ (일)
	●사건 조사 방식	기관(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등) ☐ 외부전문가 조사 ☐ , 인권위 조사 ☐ 상급기관 조사 ☐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고지 여부	고지 ☐ 미고지 ☐
	●사건 수사기관 수사 여부	해당 ☐ 미해당 ☐
사건 심의 ※ 학폭위· 교권위를 개최한 경우 해당내용으 로 작성요망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 학폭위 또는 교권위 개최 ☐ 미개최 ☐ (사유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참여 ☐ 불참 ☐ (사유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인정 ☐ 불인정 ☐ 타비위 행위로 판단 ☐ 기타 ☐ (구체적 사항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2차 피해 해당 여부	인정 ☐ 불인정 ☐ 해당없음 ☐
	●이외 의결 내용(복수 체크 가능)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 ☐ - 공간분리 ☐ , 유급휴가 ☐ , 배치전환 ☐ 기타 ☐ (기재), 해당없음 ☐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 - 징계 ☐ , 근무장소 변경 ☐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 , 기타 ☐ (기재) 해당없음 ☐ 2차 피해 예방 또는 중지 ☐ (구체적 사항 기재)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 사항 ☐ (구체적 사항 기재)
	●심의결과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통지 여부	통지 ☐ 미통지 ☐
후속 조치	●피해자 조치 사항 (복수 체크 가능)	행위자와 공간분리 ☐ , 유·무급휴가 ☐ 심리상담 ☐ 상담/의료/법률 지원기관 연계 ☐ 해당없음 ☐
	●행위자 조치사항 (복수 체크 가능)	징계 ☐ , 부서/근무장소 변경 ☐ 업무배제/대기발령/직위해제 ☐ 인식개선 교육 ☐ 상급기관에 행위자 인사조치 요청 ☐ 해당없음 ☐
	●2차 피해 방지 등 기타 조치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예) 전 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 방지 홍보 강화

□ 재발방지 강화 방안

구분	내 용	응답값 (최근 1년 기준 현황)	응답값 (사건 계기 개선 계획)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수립□ (날짜 기재) 미수립□	개선방안 있음□ (계획 별첨) 없음□ (세부 기재)
	●예방교육 실시/횟수	실시□ (몇 회) 미실시□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직원 참여율	90% 이상 □ 80~90% □ 70~80% □ 70% 미만 □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기관장 참여	참여□ (총 0회 중 0회) 불참□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고위직 참여율(%)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개정	있음 □ (수립시기 기재) 없음 □	개선방안 있음□ (지침 별첨) (세부 기재)
	●고충상담원 지정	지정□ (여 0명, 남 0명) 미지정□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이수□ 미이수□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고충상담창구 설치	설치□ 미설치□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종사자 30인 이상일 경우)	설치□ 미설치□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상설□ 비상설□ 미설치□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2025.9.교육청 이관으로 삭제)	(총 0명) (내부 0명, 외부 0명) (여성 0명, 남성 0명)	개선방안 있음□ 없음□ (세부 기재)
	●기타 개선 계획 (해당될 경우 기재)		자율 기재 예)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 실시, 징계 양정 강화 등

※ 최근 1년 기준 현황은 기관의 폭력 예방교육 실적 참고, 학생 간 사안의 경우 ‘기타 개선 계획’ 란 중심으로 작성 요망

※ 본 서식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 서식으로, 각급 학교 내 사안에 대해 학폭위·교권위 등을 개최한 경우 해당 내용으로 작성

[24-1]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보고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경유)

제목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보고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2.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엑셀서식, 관리대장 포함) 1부. 끝.

조정·중재 요청서

(피해자)

본인은 2000년00월00일 00학교 고충상담창구에 접수한 사안에 대해 조정·중재를 요청합니다.

☐ 조정·중재 요구사항

- 1.
- 2
- 3.

조정·중재 요청사항에 의거 조정·중재가 성립한 경우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00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고충상담창구) 제3항 5호에 의거 조정·중재를 통해 조사 처리를 중단합니다.

단,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및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정·중재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20 00년 0월 0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00학교장 귀중

[25-1] 조정·중재 요청서 접수 보고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호) 조정·중재 요청서 접수 보고

1. 관련: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학교- (20○○.○○.○○)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보고
2. (20○○-○호) 사안에 대해 조정·중재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조정·중재 요청서 1부. 끝.

조정·중재 합의서

본 합의서는 [20〇〇-〇호] 20〇〇년 〇월 〇일 〇〇학교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한 건입니다.

구분	이름	소속	연락처
피해자	〇〇〇		
피신고인	△△△		

[합의내용(예시)]

- ① 피신고인 △△△이 작성한 사과문 이행
- ② 피해자 〇〇〇에 대한 개인적인 연락 및 접촉 금지

(피신고인) △△△은 사안 처리에 관한 위의 내용에 동의하고 비밀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피해자) 〇〇〇은 위의 내용에 합의하며 사안 종결에 동의합니다.

20 〇〇년 〇월 〇일

피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학교장 귀중

[26-1] 조정·중재 합의서 접수 보고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호) 조정·중재 합의서 접수 보고

1. 관련: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학교- (20○○.○○.○○)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보고

2. (20○○-○호) 사안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정·중재 합의서가 접수되어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불임 조정·중재 합의서 1부. 끝.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0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00조(조사) 등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로 사안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중도 종결처리합니다.

본인은 사안번호 (2000-0호) 관련하여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중도 종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외부기관에 의한 사안 처리도 가능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 본 종결 처리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안 처리 재요청이 가능 합니다.
• 2차 피해 발생 시 새로운 사안으로 접수

2000년 0월 0일

신청인(피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중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표

< 실적 점검 기준표(A-1) - 성희롱 방지조치 >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 적용 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 고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 ○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3~'25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24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5년 상반기 교육이수, ('25년 상반기 신규지정) '25년 하반기 교육 이수, ('25년 하반기 신규지정), '26년 상반기 교육 이수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했다면 해당 항목을 '시행' 으로 인정 ○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 의무화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사항 모두 반영 시 인정 ○ 성희롱·성폭력 통합 예방지침도 인정

※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창구, 상담원, 지침)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기관

참고 1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개념

성폭력	(일반적 정의)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법적 정의) 성폭력의 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음향매개 및 음화 반포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다양한 성적 행동 유형을 포괄한다.
성추행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접촉하거나(집적거리기, 문지르기)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 시키는 등의 행위
유사강간 (2013년 개정)	(신설법)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성희롱	업무,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아동, 포로, 수용자)에 대한 성적 가혹 행위를 말한다.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힘을 말하며, 폭행,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
위계	사전적 의미로의 위계는 연장자가 상급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통상 조직에서 상급에 있는 자가 하급에 있는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를 활용한 성희롱은 처벌 받음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 아동·청소년대상 성희롱은 성범죄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참고 3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희롱 대표적 사례

㉠ 육체적 행위

- * 체육관, 운동장, 과학실, 숙직실 등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 필요이상 오래 손을 잡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 * 몸을 접촉하거나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 * 속옷을 입고 다니도록 지도하면서 특정의복의 일부를 만지거나 들추는 행위
- * 뽕틀 구르거나 철봉운동 또는 컴퓨터 시간에 과도한 신체접촉
- * 다정한 듯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면서 어깨 안쪽을 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 학생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 비유하여 말하는 행위
-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농담으로 특정 신체부위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 * 목 티를 들쳐서 특정 신체부위를 들여다보는 행위

㉣ 기타

참고 4

성희롱 예방을 위한 10계명

- ①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삼간다.
- ②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 ③ 성희롱 당한 불쾌감을 즉시 분명히 표현한다.
- ④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⑤ 회식 때 블루스나, 술시중, 술 마실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⑥ 직장동료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성적(性的)인 평가나 비유는 삼간다.
- ⑦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⑧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 ⑨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⑩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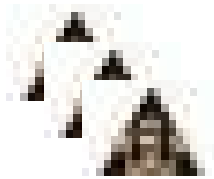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계획

담당 : 김선영

2026학년도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계획

수지초등학교

<https://suji-e.goeyi.kr/suji-e/main.do>



2026학년도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계획

1 기본 방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2 관련 근거

가. 학교보건법 제 9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나.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 학생 안전교육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학생 응급처치교육 2시간(학기당 1회) 실시

3 세부교육계획

- 가. 교육운영 : 정부의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에의해사회적거리두기가전면해제됨에따라교직원대상
- 응급처치교육정상시행
- -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
- · 모든 교직원 대상 연간 3~4시간(실습 2시간 이상) 교육
- · 자체 전문 강사(인력풀 또는 외부강사) 초빙 또는 위탁교육 가능
- 나. 교육대상 : 전 교직원(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포함)

대상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
교직원	이론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	외부업체 위탁 이론 및 실습교육 (3시간) 2026. 5. 13. (수) 14:00~17:00 (가급적 생존수영교육 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
	실습교육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 학교에 비치된 제세동기 사용법	
	기준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확보해야 하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하여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해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함	

다. 교육내용 및 시간

대상	구분	교육내용	교육일자	장소
5학년	이론 및 실습	1. 상황별 응급처치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3.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연중	각 반 교실
1~4학년 6학년	이론 및 실습	7대 안전교육 중 응급처치교육	연중	각 반 교실

라. 응급처치교육 이수 결과 관리

- 등록부에 교육을 받은 교직원, 전문강사 등을 표기하여 스캔본을 **내부결재하여 증빙.**
- NEIS 추기 기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학점화 대상 아님.**(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인사기록관리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 관련 사항이 삭제되어 해당 없음.)

마. 기타. 학교 자체교육 미참여 교직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반드시 이수(법정 의무교육)

1) 인근학교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등록부 서명·스캔 후 내부결재로 증빙**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병원, 공공기관, 교육감 소속 연수원, 대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 이수

이 경우에도 학교보건법 상 강사요건과 교육시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필요.

4 기대효과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 시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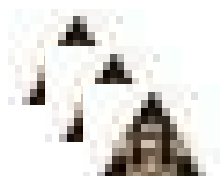
대기오염 대응 계획

담당 : 김선영

2026학년도 대기오염 대응 계획서 (미세먼지, 오존)

수 지 초 등 학 교

[https://suji-e.goeyi.kr/suji-e/
main.do](https://suji-e.goeyi.kr/suji-e/main.do)



2026학년도 대기오염(미세먼지,오존) 대응 계획

제1장 미세먼지 대응

1.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오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의 임부와 역할,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미세먼지·오존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건강상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2. 근거

- 가. 「학교보건법」 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취약계층의 보호)
-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취약계층의 범위) 등
- 라.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 개정안(교육부_2025.4월 개정)

3. 적용상황

- 가.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 나.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상)가 발생하거나 실제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의보, 경보가 발령되어 국가,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

4. 미세먼지 및 오존의 특성

가. 정의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한다.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 μm)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나. 유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 건강취약계층의 특성 >

- (영·유아 및 어린이)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대기오염 물질(SO₂, O₃, CO, PM10, PM2.5 등)에 민감하게 반응
-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 오염물질을 들이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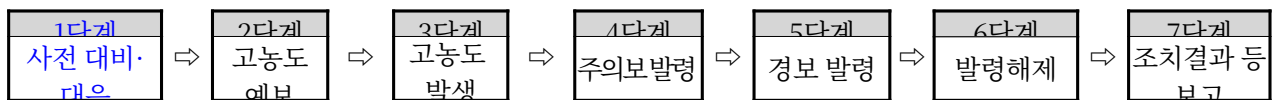
라. 위험 단계

구분		등급(ug/m³)						
대기질 기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조이보)		경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300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150 이상	
	초미세먼지 (PM2.5)	환경부 위기경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발령	3일이상	5일이상	7일이상

※ 환경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되며,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일수 등을 참고하여 발령되나, 탄력적으로 발령될 수 있음

마. 대응 단계

< 대응 단계 >



< 대응 요건 >

구분	요건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mu\text{g}/\text{m}^3$ 또는 PM2.5 $36\mu\text{g}/\text{m}^3$ 이상
고농도 발생	PM10 $81\mu\text{g}/\text{m}^3$ 또는 PM2.5 $36\mu\text{g}/\text{m}^3$ 이상 1시간 지속
주의보	PM10 $150\mu\text{g}/\text{m}^3$ 또는 PM2.5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300\mu\text{g}/\text{m}^3$ 또는 PM2.5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5. 일반적, 단계별 대응요령 및 부서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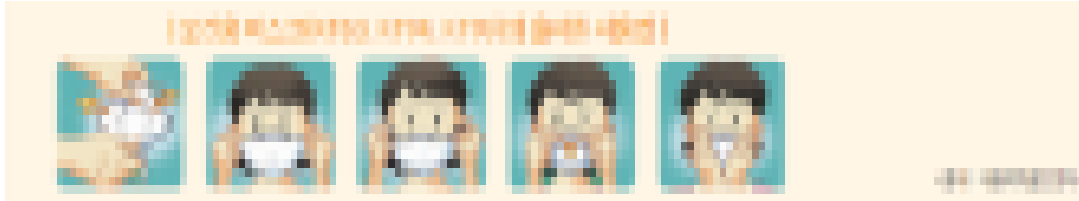
가. 일반적인 대응요령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나. 단계별 대응요령

단계 (단위, $\mu\text{g}/\text{m}^3$)	대응요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 제거용 바닥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 권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임시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학생(유·초·중·고등학교) 관리 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비치 및 점검						
미세먼지 “나쁨” 단계 예보 익일 예보 “나쁨” 이상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활동)에 대한 점검(수업대체 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 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 누리집(airkorea.or.kr) 및 모바일 앱 활용						
미세먼지 “나쁨” 단계 발생 미세먼지 1시간 농도 “나쁨” 이상인 경우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 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 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학생 관리 대책 이행 ◦ 실내 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비상 저감조치 PM2.5 주의보 수준과 유사	<table border="1"> <tr> <td>국·공립학</td><td>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학기초 차량 2부제 예외 차량 목록(통학버스, 학교장이 인정하는 통근차량 등) 작성 • 노후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 운행 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회(5등급 여부 확인) </td></tr> <tr> <td>사립학</td><td> • 노후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 운행 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회(5등급 여부 확인) </td></tr> <tr> <td>모든학</td><td> • 등교일 전날, 시·도지사 권고 또는 시·도교육감 휴업명령 등을 참고하여 휴업 또는 등하교(원) 시간 조정을 실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체 점검 실시 및 제출(→ 교육지원청) </td></tr> </table>	국·공립학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학기초 차량 2부제 예외 차량 목록(통학버스, 학교장이 인정하는 통근차량 등) 작성 • 노후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 운행 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회(5등급 여부 확인)	사립학	• 노후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 운행 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회(5등급 여부 확인)	모든학	• 등교일 전날, 시·도지사 권고 또는 시·도교육감 휴업명령 등을 참고하여 휴업 또는 등하교(원) 시간 조정을 실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체 점검 실시 및 제출(→ 교육지원청)
국·공립학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학기초 차량 2부제 예외 차량 목록(통학버스, 학교장이 인정하는 통근차량 등) 작성 • 노후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 운행 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회(5등급 여부 확인)						
사립학	• 노후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 운행 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회(5등급 여부 확인)						
모든학	• 등교일 전날, 시·도지사 권고 또는 시·도교육감 휴업명령 등을 참고하여 휴업 또는 등하교(원) 시간 조정을 실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체 점검 실시 및 제출(→ 교육지원청)						
주의보 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 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 이상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활동) 금지, 등·하교(원) 시간 조정 및 휴교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경보 발령일 다음날까지 경보 조치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학급 비치용 행동요령]

단계	대응요령	
<1단계> 평시 (사전준비사항)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mu\text{g}/\text{m}^3$, PM2.5 35$\mu\text{g}/\text{m}^3$)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관리대책 마련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천식 :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악화시 행동요령 숙지,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 마스크 사용 호흡기질환자 :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 마스크 사용 민감군 : 민감군은 선천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어린이·노인 등 생물학적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 고위험군 : 주거지나 업무 특성상 외부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직업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사람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	
<2단계> 미세먼지 “나쁨” 단계 예보 (익일 예보 “나쁨” 이상)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활용	
<3단계> 미세먼지 “나쁨” 단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 관리대책 이행 ※ 학교 공기질 관리(예, 공기정화장치/선풍기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4단계> 비상저감조치 (PM2.5 주의보 수준과 유사)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학기초 차량 2부제 예외 차량 목록(통학버스, 학교장이 인정하는 통근차량 등) 작성 · 노후차량 운행제한 협조 ※ 학기초 통학버스와 피스온 차량과 가스배출등급 2차(2등급 이하)
	모든 학교	· 등교일 전날, 시·도지사 권고 또는 시·도교육감 휴업명령 등을 참고하여 휴업 또는 등하교(원)시간 조정을 실시
<4단계>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각급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5단계>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경보조치결과보고(7일이내→해당교육지원청) ·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도 함께 결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공지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각급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다. 교내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체계

(1) 책임자들의 임무 【담당자: 보건교사 김OO 대리근무자: 보건교사 황OO】

- 1)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을 설치
- 2) 시·도에서 제공하는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교육청 담당자 지정 보고)
- 3) 미세먼지 예·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상황 파악
-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수업 제한 등 조치사항 이행
- 5) 조치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 6) 매뉴얼에 첨부된 자체 체크리스트에 따라 학교별로 미세먼지 대응상황 자체점검 실시(보건교사),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행정실)

- (점검 시기) 미세먼지 대응상황 자체점검 -고농도 빈발 시기 전(11월 마지막주) 및 1학기 초(3월 2주차),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점검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점검 - 매월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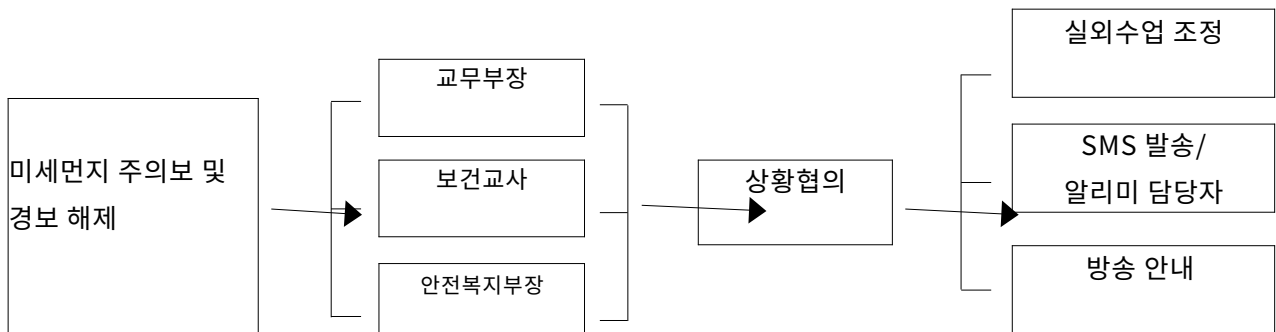
- (점검 방법) 총괄 체크리스트와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업무 체크리스트를 학교단위로 작성하여 보관

(2) 전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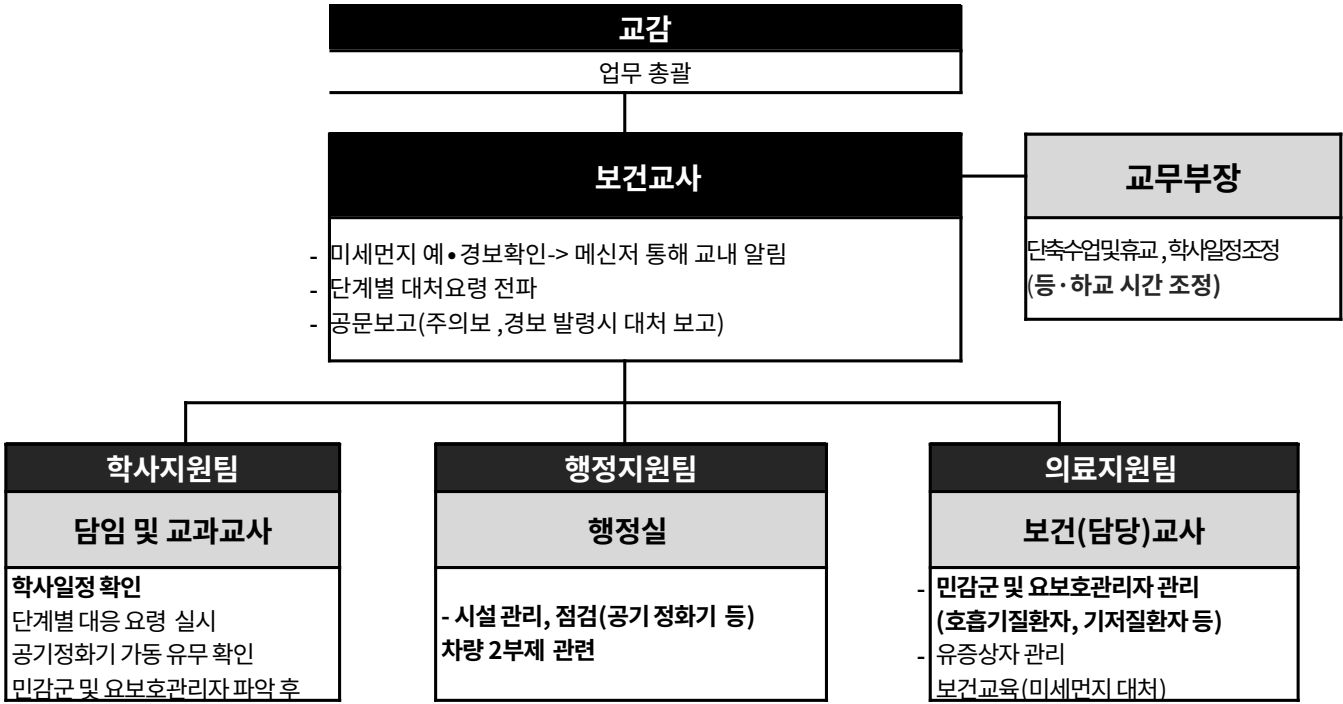
1) 발령시



2) 해제시



(3) 미세먼지 비상대책반 구성



(4) 주의보 (경보) 발령시 SMS 및 발송

1) SMS 발송

20□□년 △△월 ○○일 09:00 현재 도시대기측정소 미세먼지(PM10 또는 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시 ○○군 (PM10 또는 PM2.5) △△ $\mu\text{g}/\text{m}^3$ 으로 나타나 용인지역에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 노약자·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합니다.
- 공원·체육시설·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야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 금지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외출 시에는 꼭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내 메시지 전달 또는 방송

학생 및 교직원께 안내 드립니다.

용인시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의보(경보) 해지 시까지 각 학년 및 교직원께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대응조치에 따라 실외수업을 금지하여 주시고, 창문 닫기, 손 씻기 등 조치사항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 방송을 통해 안내합니다.

다. 부서별 역할

각부서	역 할
교무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대체수업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수업시간 조정, 휴업, 일정연기등) 마련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및 관련 공문,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에 근거
행정실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mu\text{g}/\text{m}^3$, PM2.5 35 $\mu\text{g}/\text{m}^3$) 준수 ▪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관련 행정사항 점검
보건교사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체,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학생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학기 초 미세먼지 조치·대응사항 관련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학년초 학교는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생 등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보건실에 상비약구비 및 교육(인공눈물, 소양감 감소를 위한 냉찜질등의 위생용품, 보건용 마스크,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소지 교육) ▪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의 마스크 사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주의 사항 안내
담임교사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학년 초 학교는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생 등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보건실에 상비약(인공눈물, 소양감 감소를 위한 냉찜질등의 위생용품, 보건용 마스크등) 구비하며 기저질환이 있다고 파악된 학생에게 의사의 처방된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 -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및 관련 공문,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에 근거 ▪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의 마스크 사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주의 사항 안내
공통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3. 홈페이지, 모바일 App으로 미세먼지 예, 경보상황 확인방법

<예보문자> “에어코리아” (airkorea.or.kr)홈페이지접속 →고객의 소리

→ 문자서비스 신청: 미세먼지 예보등급(나쁨) 이상 시 안내문자 발송

<예보문자>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설치

<경보문자> 안내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시도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 서비스신청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 근거 :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근거

◀발령문의 인정 범위 및 요건 : 학교▶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참고
- (장치) 미세먼지와 관련한 개선행위(대안)의 역사적 원천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가소에 제출함
 - ※ 미세먼지와 관련한 드러나는 역사 소견 또는 향후 지도의견 제시 필요
- (요건) 통고사건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일사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생활기록) 입학처는 학업기록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후 학가소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생활기록 기록을 입학처에 확인시켜 줄음

◀발령문의 인정 범위 및 요건 : 유치원▶

- 「유치원의 설립·운영」(교육부 지침) 참고
- (장치) 통고사건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일사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인정
- 해당 발령문의 발령 유권행위 지면은 상설 기준의 결정일수록 미비할유치원에 대한공적 불이익이 없음

나.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다.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 5.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2019.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차량 2부제 시행 : 국·공립학교

- 통학차량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 노후차량 운행제한 협조 : 공·사립 전체학교 시행

○

○ 6. 학교자체 점검

- 점검표에 따라 학교별 미세먼지 대응상황 자체 점검 실시
- (점검 유형) ① 빈발시기전사전점검②비상점검③공기정화장치정기점검

점검 유형	사전점검	비상점검	공기정화장치 정기점검
점검 시기	3월 2주차, 11월 2주차	비상저감조치발령시	매월 1회 (해당월에사전점검또는비상점검시같은)
점검 내용	고농도미세먼지빈발전 하교학자사자대비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 하교학자대우저거	공기정화장치 위생관리 및 저사기도어브드저거
점검 방법	점검표 활용(p.29~32.)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현황서시화요 (p.21~22)
보고 시기	1주일 이내	5월	-

- (점검 보고) 점검표 결과를 별도 엑셀서식에 맞추어 작성 제출

붙임1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 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App

○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http://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 문자서비스(예·경보 문자 신청자 대상)

< 예보 문자 >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 문자 발송

< 경보 문자 >

- **(신청방법)**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접속(www.air.gg.go.kr) → ② 메인페이지
우측 하단 문자서비스 신청
-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 문자 발송

붙임2

미세먼지 교육자료

우리 아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해지려면?

미세먼지를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 크기의 오염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중 여러가지 두께의 20분의 1 정도 지름인 먼지, 즉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유해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입니다. (여름과 가을에 비해 약 1.7μg/m³ 정도 높습니다.)

※ 미세먼지 농도는 기온(12~3월) 또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가을 2주제)에 따른 농도변동 및 국외입자도 포함함



미세먼지 나쁜 날,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에는 미세먼지 민감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학생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미세먼지 예방접수 절차 - 학교

1.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민감학생을 포함한 과에서 건강관리교는 이천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2. 통곡시간에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질서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결석접수가 인정됩니다. (비결석계 제출 시 결석하는 동안 사용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천서로 해당학기 결석일에 결원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 ※ 미세먼지 민감질환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이 결석해도, 결석접수 시 학교 기밀에 준하여 결석 사유를 학부모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시도 결석접수로 처리할 수 있음
- ※ 결, 결락의 각 학교장에게 수급에 필요한 결석접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로 3월31일 기준에 따라 함

미세먼지 예방접수 절차 - 유치원

1. 미세먼지 '나쁨'일 날(나쁨)과 전까지 학부모가 결석접수서에 연락접수 및 전락합니다.
2. 결석접수가 인정됩니다.
- ※ 미세먼지 또는 호흡기로 결석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에 지면금 산정 일수(비결락일)에 결락하여 지면금 수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미세먼지로부터 마음만큼 보호하는 방법

학원, 놀이장 등 밖으로 나가서 가는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환경부, 에어코리아 제공)

· 시도를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정보, 대기오염 등 다양한 대기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물청소를 통해 실내 공기를 개선합니다.

· 물청소를 이용한 청소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물청소로 청소를 하면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다시 날릴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를 켜두지 않습니다.

· 요리하는 동안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기름 입자가 공기청정기 필터를 막아 공기청정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요리를 마치고 청소를 한 후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에 돌아온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옷차림을 합니다.



· 외출 시 마스크 이외에도 모자나 보호 안경 등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마스크는 착용할 때와 벗을 때 직접หายใจ하여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학생생활실천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

1. 일회용품 줄이고,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2.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남겨지는 전기·가스·물 줄이기



3. 자동차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4. 운전하는 차에서는 창과 문에
시동을 걸지 않고 열매주세요



5. 공기청정기를 켜두고, 나무도 심고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실천

1. 집에 들어오면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과 미세먼지 예방하기



2.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표준한신사마스크 착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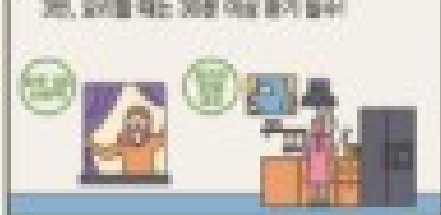
3. 물과 과일, 허브 식품의 섭취하기



4.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적절한 운동 및 활동을
회피하기



5.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2번, 운동을 하는 20명 이상 참가 필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1. 마스크 안쪽에 끈 손잡기
2. 양 손으로 마스크의 앞면을
잡고 앞면상을 오므리기



3. 고정성이 없는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턱부터 시작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다



4. 마스크를 귀에 걸어 위치를 고칠
대신 턱과 코를 머리 뒤쪽으로 넘겨
안장고리에 맞춰 고칠 것



5. 양 손의 손가락으로 고릴 부분을
고쳐 밀착되도록 손을 누른다



6. 양 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체크하면서 얼굴
에 밀착되도록 고정한다



※ 본 점검표는 시도교육청 별로 지역별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안내

☐ 학교명 :

☐ 점검일시: 26. . . (수) (☐ 사전점검(11월 2주차 또는 3월2주차) ☐ 비상저감조치발령)

점 검 내 용 [매뉴얼 페이지]	점 검 결 과	
	○,×	내용
▪ 공기정화장치 운용 등 실내공기질 관리		
① 공기정화장치가정상작동되고위생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② 공기정화장치유지관리를위한예산확보여부		
③ 주기적환기실시여부 * 주기적으로교실·복도창문개방하여이산화탄소농도조절 (미세먼지농도나쁨수준이상인경우복도창문만개방) * 공사등외부오염물질일시적과다유입시창문개폐주의		
④ 매주 실내 먼지 제거 조치(진공청소기, 물걸레 청소 등) 여부		
⑤ 학생 및 교직원 실내에서 실내화 착용 여부		
▪ 미세먼지 대응 학사운영 및 교육		
⑥ 미세먼지 대응 학사조정 계획 여부 -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수업단축 등		
⑦ 실외수업의 대체수업 전환 방안 계획 여부		
⑧ 모든 학생대상 미세먼지 계기교육 실시 또는 계획 여부		
▪ 민감군 학생 보호		
⑨ 학기초 학부모 안내 여부 - 민감군 학생 조사 및 질병결석 절차 안내		
⑩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보유학생 명단 관리 여부		
⑪ 보건실상비약비치및민감군학생보유의사처방약품확인여부		
⑫ 민감군 학생 질환 응급대처요령 확인 여부		
▪ 매뉴얼 관리 및 미세먼지 담당자		
⑬ 「대기오염 대응매뉴얼」 비치 여부		
⑭ 유치원·학교별 세부행동요령 작성 및 비치 여부		
⑮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여부		
▪ 비상저감조치 준비		
⑯ <국공립>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 예외차량 관리대장 작성 여부		
⑰ <모든학교> 통학차량등기관보유·임대차량이노후차량에해당하는지 여부확인및후속조치(교체, 저감장치신청등)		
<특이사항및기타점검사항>		

※ 상기 점검표 서식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정관리 가능

□ 점검자 직위 :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 점검자는 복수 가능

☐ 확인자 직위 : 성명 : (인)

※ 확인자는 학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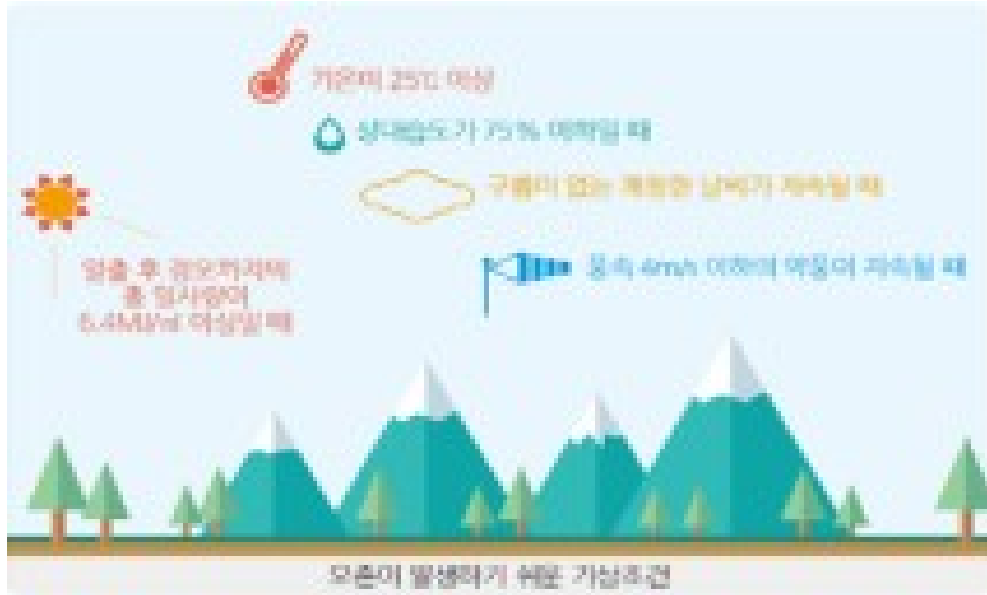
제2장 오존 대응

1. 목 적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오존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건강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대응단계별 요건]

구 분	요 건
고농도 발생 (“나쁨”)	오존 농도 0.09ppm 이상
주의보 또는 “매우 나쁨”	오존 농도 0.12ppm 이상
경보(중대경보)	오존 농도 0.3ppm 이상 (중대경보 : 0.5ppm 이상)



2. 오존 예·경보 기준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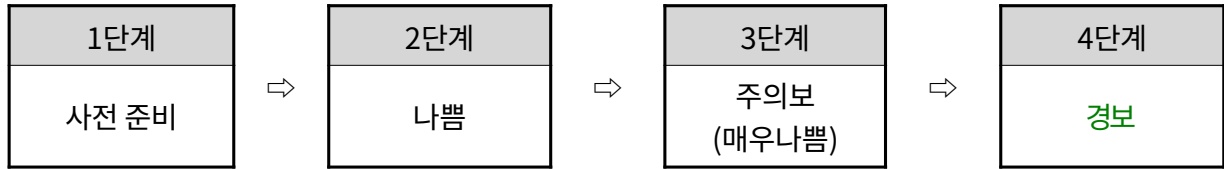
구 분		등 급($\mu\text{g}/\text{m}^3$)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ppm)		0.030 이하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시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유의	장시간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일반인	-	-	장시간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아픈 증상이있으면 실외활동 피해야함	실외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경보단계)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로 구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구 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조건 (농도)	0.12 ppm 이상	0.3 ppm 이상	0.5 ppm 이상

3. 대응 단계

< 대응 단계 >



4. 학교 대응요령

단계	대응요령
사전준비 고농도 오존발생 시기 (4.15~10.15)	· 민감군 사전확인 및 건강상태 확인 - 만성 폐질환자, 심장질환 학생 등 ※ 민감군은 “보통” 농도(0.031~0.09 ppm)에서도 건강상태에 따라 주의 필요 · 비상연락망 구축 · 교사·학생에게 오존 대응요령 교육 · 학교 내 휴식공간 확보 · 오존 예보 및 농도 수시 확인 - TV, 라디오, 인터넷(에어코리아), 모바일앱(우리동네대기질)
나쁨 0.09 ppm 초과	· 오존 대응요령 교육(당일 “나쁨” 이 예보된 경우 포함) · 민감군학생 건강상태 수시 확인 · 민감군학생이 있을 경우 실외 수업 자제 · 교육활동 공간에서 주유, 유기용제 사용 등 자제
주의보 (매우나쁨) 0.12 ppm 이상 * 매우나쁨 : 0.15 ppm 초과	· 주의보 발령 사실 알림 (방송 등) · 민감군학생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실외 수업 자제 또는 단축 · 교육활동 공간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사용 자제 ※ 이상 징후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경보 0.3 ppm 이상 * 중대경보 0.5 ppm 이상	· 경보 발령 사실 알림, 실외작업 중지 및 실내 대피 · 실외 수업 단축 및 실내수업으로 대체 · 교육활동 공간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사용 자제 • (중대)경보 발령시 등하교시간 조정·임시휴업 등을 검토 ※ 이상 징후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각 단계별 조치는 이전 단계의 필요한 조치를 포함

※ 폭염 등이 동반되는 경우 부가적인 조치 검토

참고

일반적인 고농도 오존 대응요령(6대 수칙)

구 분	행동요령
1 	○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2 	○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주의
3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실외수업 자제 또는 단축
4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 자동차는 시동 초기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5 	○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줄임 * 유성페인트 대신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거나, 도장시 스프레이 대신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감소
6 	○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시 대기 중으로 유실되는 양이 감소하여 연료비도 절감